

교회 헌법

THE BOOK OF CHURCH ORDER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Kosin)

2024

교회헌법

The Book of Church Order

한글판

2024년도

© 2024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KOSIN)

판권소유: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고신)

교회 헌법

THE BOOK OF CHURCH ORDER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고신)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Kosin)

2024

서 문

두 번째 개정헌법을 출간하면서...

1985년 본 교단이 설립된 후 40년 가까운 세월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 고신 교단을 모태로 하는 본 교단은 고신의 신앙 전통과 유산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민교회의 특성을 담은 헌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1997년 제13회 총회에서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5년 제31회 총회에서 1차 개정 헌법을 채택하였고, 2023년 제39회 총회에서는 재개정된 헌법을 채택하여 각 노회 수의를 거쳐 2024년 8월 6일 공포하게 되었다.

헌 개정헌법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담고 있다.

첫째, 헌법 전문은 우리가 믿는 신앙과 교리에 대해 더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기존의 구분에서 '예배'를 별도로 구성하였고 재미고신교회 사명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담았다.

둘째, 교리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교리 문답은 이전의 번역본을 그대로 두었다.

셋째, 관리표준으로 이전에 사용하던 '예배 지침' '교회 정치' '권징 조례'라는 명칭을 '교회 예배' '교회 정치' '교회 권징'으로 일관성 있게 변경하였다.

넷째, 관리표준인 교회 예배, 교회 정치, 교회 권징은 그동안의 교회 현장의 변화를 담아서 가급적 통일성, 일관성, 연속성을 고려하여 구조 변경과 항목 변경, 그리고 용어들을 새롭게 수정하여 반영하였다.

다섯째, 기존에 있던 '헌법적 규칙' 부분은 삭제하고 그 안에 있던 내용들은 관련 규정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총회 결정 사항과 관련 규정들을 개정된 헌법에 반영하였으며,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규정들은 법규로서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과 표현을 수정하여 보완하였다.

본 개정헌법이 출간됨으로써 주님의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말씀과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통일된 행정과 사역으로 교회를 더욱 평안하게 성장시켜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1년 넘게 헌법 개정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섬김의 기회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2024년 9월 10일

헌법개정위원 곽동호, 곽재규, 김민석, 김승현, 박일룡, 윤대식, 이신구,
전남진, 정인석

차례

| | |
|------|-----------------------|
| 서문 | 4 |
| 헌법전문 | 11 |
| 교리표준 | 17 |
| | 1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
| | 81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
| | 157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
| 관리표준 | 183 |
| | 185 교회 예배 |
| | 186 제1장 교회와 예배 |
| | 186 제2장 주일 성수 |
| | 187 제3장 주일 예배 |
| | 192 제4장 말씀의 선포 |
| | 193 제5장 성례 |
| | 198 제6장 입교 |
| | 199 제7장 절기, 감사일 및 금식일 |
| | 200 제8장 기도회 |
| | 202 제9장 교회학교 |
| | 204 제10장 혼례와 장례 |
| | 205 제11장 기타 예배 모범 |
| | 211 교회 정치 |
| | 212 제1장 교회 정치 원리 |

| | |
|-----|-------------------------|
| 214 | 제2장 교회 |
| 218 | 제3장 교인 |
| 221 | 제4장 교회 직원 |
| 224 | 제5장 목사 |
| 232 | 제6장 장로 |
| 236 | 제7장 집사 |
| 238 | 제8장 준직원과 임시직원 |
| 241 | 제9장 교회 직원 고시 |
| 244 | 제10장 교회 치리회 |
| 247 | 제11장 당회 |
| 251 | 제12장 노회 |
| 256 | 제13장 총회 |
| 258 | 제14장 교회 회의 및 소속기관 |
| 261 | 제15장 선교 및 대외(교단, 단체) 교류 |
| 263 | 제16장 재산 |

269 교회 권징

| | |
|-----|-----------------------------|
| 270 | 제1장 총칙 |
| 271 | 제2장 재판 규례 |
| 278 | 제3장 징계재판 |
| 303 | 제4장 행정재판 |
| 309 | 제5장 하회가 처리한 사건을 상회가 취급하는 규례 |
| 316 | 제6장 재심 청구 |
| 319 | 제7장 시벌, 해벌, 처분 |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교회 헌법

헌법전문

헌법전문

교리표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관리표준

교회예배

교회정치

교회권징

부칙

헌법 전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교회의 역사와 유산을 전수받아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잘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셨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재미 고신교회의 신앙고백적 입장을 헌법의 전문에서 밝힌다.

1. 신앙과 교리

(1)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성화주(聖化主) 성령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2) 첫 사람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불의한 자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불의한 인간에게 생명과 의의 길을 열어 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께서 행하신 은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셨다.

(3)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을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으로 계시하셨다. 초대교회의 삼대 공교회 신조인 사도신경과 니케아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신경은 이 신앙을 잘 요약하고 있다.

(4) 중세 로마교회가 이 초대 교회의 신앙에서 탈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개혁자들을 일으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를 개혁하게 하셨다.

(5) 우리는 특별히 역사적인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른다. 이 전통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소산들을 사상적으로 체계화하고, 그 가르침을 성경적으로 더 철저하게 발전시킨 칼빈의 신학적 입장을 의미하며,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수되었다. 이 신조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하여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이

며, 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밝혀주고 있다.

(6)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신사 참배 강요와 핍박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 개혁주의 신앙을 지켰다.

(7) 그런 신앙인들의 후예인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파수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를 갈망하며, 그런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한다.

2. 예배

(1)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제사와 성전에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만나셨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심으로 구약의 성전과 제사제도를 폐지하셨다. 이제 우리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으로 말씀(설교)과 성례(세례와 성찬)와 기도를 세우셨다. 우리는 이 방편들을 통해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자신의 기이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덕을 기리며 찬미한다.

3. 교회정치

우리는 교회 정치 역시 성경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들을 따라 장로회 정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교회를 봉사하는 직분자를 세우셨다.

(2) 개 교회의 치리기관인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며, 그들은 또한 노회, 그리고 총회 등 치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3) 어떤 교회나 직분자도 다른 교회나 직분자를 어떤 방식으로든 지배할 수 없다.

(4) 치리회가 내린 결정은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는 한 구속력이 있으며 그 결정에 순종해야 한다.

(5) 교회의 치리나 정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평을 목적으로 한다.

(6) 바른 교리의 수호와 함께 교회의 순결과 범죄자의 회개를 위하여 권징이 합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7) 이러한 내용은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교회정치 8개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회 예배, 교회 정치, 교회 권징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4. 재미 고신교회의 사명

1)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신앙을 보존하며, 이 신앙에 대한 모든 도전과 진리를 왜곡하는 사상을 철저히 경계하고 배격한다.

2)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핵심 원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 끝까지 증거하는 개혁교회를 미주뿐 아니라 세계 각처에 세우려고 한다.

3) 우리는 신사 참배를 항거한 선배들의 순교적 신앙을 따라 모든 종류의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실현되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

4)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소원하며, 교인들을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主)이심을 증거하는 충실한 일꾼으로 양육하여 세상에 파송하려고 한다.

5)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생명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기를 힘쓴다.

6)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인식하고 분열된 교회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참되게 고백하는 교회들과 연합하려고 한다.

7) 우리는 우리가 지향하는 개혁교회의 전통이라도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 발견된다면, 항상 정당하고 공개적인 토론과 연구를 통해 바로 잡는 지속적인 개혁에 충실할 것이다.

(8) 다음 세대 자녀들을 개혁주의 신학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정신으로 양육하며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앙인이 되게 한다.

교리표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교리표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장 성경

1.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지만,¹⁾ 이것들이 구원 얻기에 필요한 지식, 곧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베풀지는 않는다.²⁾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향한 자기의 뜻을 선포하셨다.³⁾ 그리고 그후에는 진리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 보급하며,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를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실 목적으로 그 동일한 내용을 전부 기록하게 하셨다.⁴⁾ 이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든다.⁵⁾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시는 이전 방식은 이제 중단되었다.⁶⁾

2. 성경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이 들어있으니, 다음과 같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 롬 2:14,15; 롬 1:19,20; 시 19:1-3; 롬 1:32, 2:1.

2) 고전 1:21; 2:13,14.

3) 히 1:1.

4) 잠 22:19-21; 눅 1:3,4; 롬 15:4; 마 4:4,7,10; 벧후 1:19.

5) 딤후 3:15; 벧후 1:19.

6) 히: 1:1,2.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서는 이 모든 책을 영감하시고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 되게 하셨다.⁷⁾

3. 보통 가경이라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 않았으니 정경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없으며, 인간의 다른 글들 이상으로 달리 인정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⁸⁾

4. 성경의 권위는, 그것 때문에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인데, 어떤 인간이나 교회의 증거가 아니라 저자이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⁹⁾

5. 우리가 교회의 증거로 감동과 인도를 받아 성경을 높게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다.¹⁰⁾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풍성하게 자증하는 논거로는, 내용의 천상적 성질,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의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의도, 구원의 유일한 길을 완전하게 전개하는 방식, 비할 바 없는 수많은 탁월성과 성경의 전적 완전성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오한 진리와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완전한 설복과 확신은 말씀을 수단으로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 마음에 증거를 베푸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온다.¹¹⁾

7) 눅16:29, 31; 엡2:20; 계22:18-19; 딤후3:16.

8) 눅24:27,44; 롬3:2; 벧후1:21.

9) 벧후1:19,21 ;딤후3:16 ;요일5:9 ;살전2:13.

10) 딤후 3:15.

11) 요일 2:20,27; 요 16:13,14; 고전 2:10-12; 사 59:21.

6. 하나님의 자기 영광과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협의 전부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합당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하여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이든 인간의 전통이든 어떤 것이라도 어느 때에라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¹²⁾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말씀에 계시된 바를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함을 인정한다.¹³⁾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교회의 치리, 인류의 행위와 공동체에 공통적인 사안 등은 항상 준수해야 하는 말씀의 일반 규칙들을 따라, 본성의 빛과 신자의 분별력으로 규정해야 한다.¹⁴⁾

7.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자체로서 똑같이 명백하지도 않으며 만인에게 똑같이 분명하지도 않다.¹⁵⁾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알고, 믿고 준수해야 할 바는 성경의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공표되었고 열려 있기 때문에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통상적인 방편을 합당하게 사용하여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¹⁶⁾

8. 히브리어(하나님의 옛 백성의 모국어)로 된 구약과 헬라어(신약 기록 당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언어)로 된 신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하셨고 비상한 보호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하셨기 때문에 진정하다.¹⁷⁾ 그래서 종교의 모든 논쟁에서 교회는 구약과 신약에 최종적으로 호소해야 한다.¹⁸⁾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흥미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12) 딤후 3:15-17; 갈 1:8,9; 살후 2:2.

13) 요 6:45; 고전 2:9-12.

14) 고전 11:13,14; 14:26,40.

15) 뵤후 3:16.

16) 시 119:105,130.

17) 마 5:18.

18) 사 8:20; 행 15:15; 요 5:39,46.

성경을 읽고 공부할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성경 원어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¹⁹⁾ 성경을 그들이 속한 각 민족의 대중어로 번역해야 한다.²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고,²¹⁾ 또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것이다.²²⁾

9.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무오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완전한 의미(여럿이 아니고 하나이다)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면, 보다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가지고 살펴보고 깨달아야 한다.²³⁾

10. 종교의 모든 논쟁들을 결정하고, 교회회의의 모든 결의, 고대 저자들의 견해, 사람의 교리와 사사로운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판결을 승복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뿐이다.²⁴⁾

2장 삼위일체 하나님

1.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²⁵⁾ 한 분만 계신다.²⁶⁾ 이 하나님께서는 존재와 완전함이 무한하시고,²⁷⁾ 가장 순수한 영이시며,²⁸⁾ 보이지 않으시고,²⁹⁾ 몸이나 지체가 없으시며,³⁰⁾ 정욕도 없으시고,³¹⁾ 불변하시며,³²⁾ 광대하시며,³³⁾ 영

19) 요 5:39.

20) 고전 14:6,9,11,12,24,27,28.

21) 골 3:16.

22) 롬 15:4.

23) 벧후 1:20,21; 행 15:15,16.

24) 마 22:29,31; 엡2:20; 행28:25.

25) 살전 1:9; 렘 10:10.

26) 신 6:4; 고전 8:4,6.

27) 욥 11:7-9; 26:14.

28) 요 4:24.

29) 딤후 1:17.

30) 신 4:15,16; 요 4:24; 눅 24:39.

31) 행 14:11,15.

원하시고,³⁴⁾ 불가해하시며,³⁵⁾ 전능하시고,³⁶⁾ 가장 지혜로우시며,³⁷⁾ 가장 거룩하시고,³⁸⁾ 가장 자유로우시며,³⁹⁾ 가장 절대적인 분이시다.⁴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⁴¹⁾ 스스로 가지신 불변하시고 가장 의로우신 뜻의 협의를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신다.⁴²⁾ 가장 사랑이 많으시며,⁴³⁾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⁴⁴⁾ 자기를 열심히 구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다.⁴⁵⁾ 그럼에도 심판에서 가장 공의롭고 두려우신 분이시며,⁴⁶⁾ 모든 죄를 미워하고⁴⁷⁾ 범죄자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⁴⁸⁾

2.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생명,⁴⁹⁾ 영광,⁵⁰⁾ 선하심과⁵¹⁾ 복을 자기 안에 가지고 계신다.⁵²⁾ 또한 홀로 자신에게 자족하시며, 자기가 만드신 어떤 피조물을 필요로 하시지 않으시며,⁵³⁾ 저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어내지 않고⁵⁴⁾ 자기

32) 약 1:17; 말 3:6.
 33) 왕상 8:27; 렘 23:23,24.
 34) 시 90:2; 딤편 1:17.
 35) 시 145:3.
 36) 창 17:1; 계 4:8.
 37) 롬 16:27.
 38) 사 6:3; 계 4:8.
 39) 시 115:3.
 40) 출 3:14.
 41) 잠 16:4; 롬 11:36.
 42) 엡 1:11.
 43) 요일 4:8,16.
 44) 출 34: 6,7.
 45) 히 11:6.
 46) 느 9:32,33.
 47) 시 5:5,6.
 48) 느 1:2,3; 출 34:7.
 49) 요 5:26.
 50) 행 7:2.
 51) 시 119:68.
 52) 딤편 6:15; 롬 9:5.
 53) 행 17:24,25.
 54) 욥 22:2,3.

영광을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을 통하여 피조물에게 나타내실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유일하신 근원이시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⁵⁵⁾ 만물 위에 주권적 지배권을 가지고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만물을 통하여,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행하신다.⁵⁶⁾ 그분 앞에는 만물이 열려있고 명백하다.⁵⁷⁾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며, 피조물에 의지하지 않으시니,⁵⁸⁾ 어떤 것도 우연적이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⁵⁹⁾ 그분은 모든 혐의, 모든 행사와 모든 명령에서 가장 거룩하시다.⁶⁰⁾ 천사와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은 그분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하한 예배, 경배와 순종이라도 돌려드려야 한다.⁶¹⁾

3. 신성의 일체로 한 본질과 능력과 영원을 소유한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⁶²⁾ 성부께서는 태어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며,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영원토록 태어나시고,⁶³⁾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⁶⁴⁾

3장 하나님의 영원 작정

1.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뜻의 혐의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고 불변하게 정하셨다.⁶⁵⁾ 그렇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죄의 조성

55) 롬 11:36.

56) 계 4:11; 딤편전 6:15; 단 4:25,35.

57) 히 4:13.

58) 롬 11:33,34; 시 147:5.

59) 행 15:18; 겔11:5.

60) 시 145: 17; 롬 7:12.

61) 계 5:12-14.

62) 요일 5:7; 마 3:16,17; 29:19; 고후 13:14.

63) 요 1:14,18.

64) 요 15:26; 갈 4:6.

65) 엡 1:11; 롬 11:33; 히 6:17; 롬 9:15,18.

자가 아니실 뿐만 아니라,⁶⁶⁾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한 것도 아니시며, 제 2 원인자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신다.⁶⁷⁾

2. 하나님께서는 예상되는 모든 형편에서 일어나겠거나 일어날 수 있는 바를 아시지만,⁶⁸⁾ 장래를 내다보시거나 그런 형편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시지는 않았다.⁶⁹⁾

3.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자기의 작정으로 어떤 사람과 천사는⁷⁰⁾ 영생으로 예정하셨고, 다른 이들은 영사(永死)로 정하셨다.⁷¹⁾

4. 이렇게 예정하셨고 미리 작정한 천사들과 인간들은 개별적이고 불변하게 지정 받았다. 그래서 그들의 수효는 고정되고 한정되었기 때문에 증감될 수 없다.⁷²⁾

5.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예정된 자들을 세계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자기의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과 자기 뜻의 숨겨진 협의와 선한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선택하셨으니,⁷³⁾ 그들에게서 믿음이나 선행이나 견인을 미리 보심이 없이, 혹은 피조물에게 있는 어떤 자질이나 조건도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원인으로 삼지 않으시고⁷⁴⁾ 너그러운 은혜와 사랑만으로 하시되 이들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셨다.⁷⁵⁾

66) 약 1: 13,17; 요일 1:5.

67) 행 2:23; 마 17:12; 행 4:27,28; 요 19:11; 잠 16:33.

68) 행 15:18; 삼상 23:11,12; 마 11:21,23.

69) 롬 9: 11,13,16,18

70) 딤후 5:21; 마 25:41.

71) 롬 9:22,23; 엡 1:5,6; 잠 16:4.

72) 딤후 2:19; 요 13:18.

73) 엡 1:4,9,11; 롬 8:30; 딤후 1:9; 살전 5:9.

74) 롬 9:11,13,16; 엡 1:4,9.

75) 엡 1:6,12.

6.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지명하심과 동시에, 그 영광에 이르는 모든 방편들도 자기 뜻의 영원하고 가장 너그러운 목적을 따라 미리 정하셨다.⁷⁶⁾ 그리하여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으며,⁷⁷⁾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도록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다. 이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⁷⁸⁾ 의롭다 함을 받고 자녀로 입양되어 거룩하여지고 보호받는다.⁷⁹⁾ 택자 외에는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거나, 효력 있는 부름을 받거나 의롭다 함을 받고 자녀로 입양 받아 거룩하게 되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⁸⁰⁾

7. 나머지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푸시거나 그 자비를 거두시는 자기 뜻의 측량할 수 없는 협의를 따라, 만물 위에 가지신 자기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스러운 공의가 찬양받도록, 그들을 지나쳐버리시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 부끄러움과 진노에 떨어지도록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⁸¹⁾

8. 이처럼 고귀한 신비를 담고 있는 예정 교리는 특별한 분별력과 신중함으로 다루어야 하며,⁸²⁾ 말씀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효력 있는 소명의 확실성으로부터 자신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다.⁸³⁾ 그리하여 이 교리는 하나님께는 찬양과 경외와 칭송의 재료가,⁸⁴⁾ 복음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겸손, 부지런함과 풍성한 위로의 재료가

76) 뱀전 1:2; 엡 1:4,5; 2:10; 살후 2:13.

77) 살전 5:9,10; 딤후 2:14.

78) 뱀전 1:5.

79) 롬 8:30; 엡 1:5; 살후 2:13.

80) 요 17:9; 롬 8:29-37; 요 6:64,65; 10:26; 8:47; 요일2:19.

81) 마 11:25,26; 롬 9:17,18,21,22; 딤후 2:19,20; 유 4; 뱀전 2:8.

82) 롬 9:20; 11:33; 신 29:29.

83) 뱀후 1:10.

84) 엡 1:6; 롬 11:33.

될 것이다.⁸⁵⁾

4장 창조

1.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⁸⁶⁾ 자기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⁸⁷⁾ 태초에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옛새 동안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혹은 무(無)로부터 지으시기를 기뻐하셨다.⁸⁸⁾

2. 하나님께서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⁸⁹⁾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을 구비하도록 창조하시고,⁹⁰⁾ 자기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 거룩함으로 입히시어⁹¹⁾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⁹²⁾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⁹³⁾ 그러나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의지가 자유를 허락 받음으로 범죄할 가능성 아래 있었다.⁹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법 외에도 그들은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⁹⁵⁾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 저들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복락을 누렸고, 만물을 다스렸다.⁹⁶⁾

85) 롬 11:5,6,20; 벵후 1:10; 롬 8:33; 눅 10:20.

86) 히 1:2; 요 1:2,3; 창 1:2; 욥 26:13; 33:4.

87) 롬 1:20; 렘 10:12; 시 104:24; 33:5,6.

88) 창 1; 히 11:3; 골 1:16; 행 17:24.

89) 창 1:27.

90) 창 2:7; 전 12:7; 눅 23:43; 마 10:28.

91) 창 1:26; 골 3:10; 엡 4:24.

92) 롬 2:14,15.

93) 전 7:29.

94) 창 3:6; 전 7:29.

95) 창 2:17; 3:8-11,23.

96) 창 1:26,28.

5장 섭리

1.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로서 자기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⁹⁷⁾ 자기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이 찬양을 받도록⁹⁸⁾ 자기의 무오한 예지와⁹⁹⁾ 자기 뜻의 너그럽고 불변하는 협의를 따라¹⁰⁰⁾ 모든 피조물과 행사들과 일들을¹⁰¹⁾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¹⁰²⁾ 보존하시고,¹⁰³⁾ 인도하시고, 조정(調整)하시고 다스리신다.

2. 제 1 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예지(豫智)와 작정의 관점에서 보자면, 만사가 불변하고 무오하게 일어나지만,¹⁰⁴⁾ 동일한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만사가 제 2 원인자들의 본성을 따라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나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조정하셨다.¹⁰⁵⁾

3. 하나님께서는 통상적 섭리에서 방편을 사용하시지만,¹⁰⁶⁾ 자기의 기쁘심을 따라 그 방편 없이,¹⁰⁷⁾ 또는 방편을 초월하시거나¹⁰⁸⁾ 상반되는 방식으로¹⁰⁹⁾ 자유로이 일하실 수 있다.

97) 잠 15:3; 시 104:24; 145:17.

98) 사 63:14; 엡 3:10; 롬 9:17; 창 45:7; 시 145:7.

99) 행 15:18; 시 94:8-11

100) 엡 1:11; 시 33:10,11.

101) 단 4:34,35; 시 135:6; 행 17: 25,26,28; 욥 38; 39; 40; 41.

102) 마 10:29-31.

103) 히 1:3.

104) 행 2:23.

105) 창 8:22; 렘 31:35; 출 21:13; 신 19:5; 왕상 22:28,32; 사 10:6,7.

106) 행 27:31,44; 사 55:10,11; 호 2:21,22.

107) 호 1:7; 마 4:4; 욥 34:10.

108) 롬 4:19-21.

109) 왕하 6:6; 단 3:27.

4.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은 최초의 타락과 천사 및 인간의 다른 모든 죄에까지 미치는¹¹⁰⁾ 섭리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난다. 즉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¹¹¹⁾ 다양한 처분으로 자기의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¹¹²⁾ 이 모든 일들을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고¹¹³⁾ 때로는 조정하고 통치한다. 그러함에도 모든 허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에게서 비롯된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나 승인자가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으시다.¹¹⁴⁾

5. 가장 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기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의 마음의 부패에 잠시 내버려두신다. 그리하여 그들의 이전 죄를 징계하거나 부패의 숨겨진 힘과 마음의 거짓됨을 발견하게 하시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며,¹¹⁵⁾ 또 그들이 도움을 바라며 더욱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장래의 모든 범죄의 기회를 대항하고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바라며 더욱 더 경성하게 하신다.¹¹⁶⁾

6.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완악하고 불경한 자들이 이전의 죄로 인하여 눈이 멀어지게 하시고 강박하게 만드시는데,¹¹⁷⁾ 이들에게는 지각이 밝아지게 하거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¹¹⁸⁾ 때로는 그들이 가진 재능까지 빼앗으시고¹¹⁹⁾ 그들의 부패성이 죄의 기회로 삼는 대상들에 내어버리시고¹²⁰⁾ 그들을 정욕과 세상의 시험과 사탄의 능력에 넘겨주

110) 롬 11:32-34; 삼하 24:1; 대상 21:1; 왕상 22:22,23; 대상 10:4,13,14; 삼하 16:10; 행 2:23; 4:27,28.

111) 행 14:16.

112) 창 50:20; 사 10: 6,7,12.

113) 시 76:10; 왕하 19:28.

114) 약 1:13,14,17; 요일 2:16; 시 50:21.

115) 대하 32:25,26,31; 삼하 24:1.

116) 고후 12:7-9; 시 73; 77:1,10,12; 막 14:66-72; 요 21:15-17.

117) 롬 1:24,26,28; 11:7,8.

118) 신 29:4.

119) 마 13:12; 25:29.

신다.¹²¹⁾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이들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편 아래 있으면서도, 스스로 강박하여진다.¹²²⁾

7.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만물에 미치듯이, 그것은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모든 것들이 교회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¹²³⁾

6장 인간의 타락, 죄와 그 징벌

1. 우리의 첫 조상은 사탄의 간계와 유혹에 넘어가 금지된 실과를 먹어 죄를 지었다.¹²⁴⁾ 그들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목적으로 조정(調整)하신 후, 자기의 지혜롭고 거룩한 작정을 따라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¹²⁵⁾

2. 이 죄로 그들은 원래의 의(原義)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타락하였고¹²⁶⁾ 죄로 인하여 죽었으며¹²⁷⁾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러워졌다.¹²⁸⁾

3. 그들은 온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죄의 죄책은 전가되었고,¹²⁹⁾ 죄 안에서 동일한 사망과 부패한 본성은 통상적 출산에 의해 그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 전수되었다.¹³⁰⁾

120) 신 2:30; 왕하 8:12,13.

121) 시 81:11,12; 살후 2:10-12.

122) 출 7:3; 8:15,32. 고후 2:15,16; 사 8:14; 벰전 2:7,8; 사 6:9,10; 행 28:26,27.

123) 딤펢전 4:10; 암 9:8,9; 롬 8:28; 사 43:3-5,14.

124) 창 3:13; 고후 11:3.

125) 롬 11:32.

126) 창 3:6-8; 전 7:29; 롬 3:23.

127) 창 2:17; 엡 2:1.

128) 딤펢 1:15; 창 6:5; 렘 17:9; 롬 3:10-18.

129) 창 1:27,28; 2:16,17; 행 17:26; 롬 5:12,15-19; 고전 15:21,22,49.

4. 인간은 원래의 부패로 말미암아 모든 선을 전적으로 꺼리고 그것을 행할 수 없으며 저항하고¹³¹⁾ 전적으로 모든 악에 이끌리며,¹³²⁾ 이 원래의 부패로부터 모든 자범죄가 나온다.¹³³⁾

5. 본성의 부패는 중생 받은 자들 안에도 현세 동안에는 남아있다.¹³⁴⁾ 이 부패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부패 자체와 그 모든 충동은 참으로 그리고 당연하게 죄이다.¹³⁵⁾

6.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율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¹³⁶⁾ 본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안겨준다.¹³⁷⁾ 이로써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¹³⁸⁾ 율법의 저주에¹³⁹⁾ 넘겨져 영적이고¹⁴⁰⁾ 현세적이고¹⁴¹⁾ 영원한¹⁴²⁾ 모든 비참을 동반하는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¹⁴³⁾

7장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

1.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은 창조주인 그분에게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발

130) 시 51:5; 창 5:3; 욥 14:4; 15:14.

131) 롬 5:6; 8:7; 7:18; 골 1:21.

132) 창 6:5; 8:21; 롬 3:10-12.

133) 약 1:14,15; 엡 2:2,3; 마 15:19.

134) 요일 1:8,10; 롬 7:14,17,18,23; 약 3:2; 잠 20:9; 전 7:20.

135) 롬 7:5,7,8,25; 갈 5:17.

136) 요일 3:4.

137) 롬 2:15; 3:9,19.

138) 엡 2:3.

139) 갈 3:10.

140) 엡 4:18.

141) 롬 8:20; 애 3:39.

142) 마 25:41; 살후 1:9.

143) 롬 6:23.

적으로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는 하나님을 그들의 복락과 상급으로 향유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기꺼이 표현하셨다.¹⁴⁴⁾

2.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첫 언약은 행위언약이었다.¹⁴⁵⁾ 이 언약에서는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¹⁴⁶⁾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¹⁴⁷⁾

3. 인간이 타락하여 그 언약으로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은혜언약이라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기꺼이 세우셨다.¹⁴⁸⁾ 이 언약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조건 없이 제시하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믿음을 요구하시고,¹⁴⁹⁾ 생명으로 예정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믿고자 하며 또 믿을 수 있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다.¹⁵⁰⁾

4. 은혜언약은 성경에서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나오는데, 이는 유언주(遺言主)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유산, 그리고 이 유산에 속하여 언약으로 상속 받는 모든 것들과 관련한다.¹⁵¹⁾

5. 이 언약은 율법시대와 복음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다.¹⁵²⁾ 율법 시대에서는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양, 그리고 유대 백성에게 주신 여타

144) 사 40:13-17; 욥 9:32,33; 삼상 2:25; 시 113:5,6; 100:2,3; 욥 22:2,3; 35:7,8; 눅 17:10; 행 17: 24,25.

145) 갈 3:12.

146) 창 2:17; 갈 3:10.

147) 롬 10:5; 5:12-20.

148) 갈 3:20~21; 롬 8:3; 3:20,21; 창 3:15; 사 42:6.

149) 막 16:15,16; 요 3:16; 롬 10:6,9; 갈 3:11.

150) 겔 36:26,27; 요 6:44,45.

151) 히 9:15-17; 7:22; 눅 22:10~20; 고전 11:25.

152) 고후 3:6-9.

모형과 규례로 시행되었다. 이것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였고¹⁵³⁾ 성령의 사역으로 그 시대에 택자들로 하여금 약속된 메시아를 믿도록 교훈하고 세우기에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¹⁵⁴⁾ 메시아로 인하여 택자들은 완전한 사죄와 영생을 받았으니, 이 언약은 구약이라 불린다.¹⁵⁵⁾

6.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복음 시대에는¹⁵⁶⁾ 말씀의 설교 그리고 세례와 성찬 성례 집행이 이 언약을 배포(配布)하는 규례이다.¹⁵⁷⁾ 이 규례들은 그 수효가 상대적으로 적고 보다 단순하고 외적 영광이 덜한 방식으로 시행되지만, 그 안에서 언약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민족에게¹⁵⁸⁾ 보다 풍성하며 증거가 분명하고 영적으로도 효과적으로 제시되니,¹⁵⁹⁾ 곧 신약이라 부른다.¹⁶⁰⁾ 그러므로 본체가 다른 두 은혜언약이 아니라 배포만 다른 동일한 하나의 언약만이 있다.¹⁶¹⁾

8장 증보자 그리스도

1.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으로 자기의 독생자 주 예수님을 자기와 사람 사이의 증보자로,¹⁶²⁾ 선지자와¹⁶³⁾ 제사장과¹⁶⁴⁾ 왕으로,¹⁶⁵⁾ 교회의 머리와 구

153) 히 8-10; 롬 4:11; 골 2:11,12; 고전 5:7.

154) 고전 10:1-4; 히 11:13; 요 8:56.

155) 갈 3:7-9,14.

156) 골 2:17.

157) 마 28:19,20; 고전 11:23-25.

158) 마 28:19; 엡 2:15-19.

159) 히 12:22-27; 렘 31:31-34.

160) 눅 22:20.

161) 갈 3:14,16; 행 15:11; 롬 3:21-23,30; 시 32:1; 롬 4:3,6,16,17,23,24; 히 13:8.

162) 사 42:1; 뱀전 1:19,20; 요 3:16; 답전 2:5.

163) 행 3:22.

164) 히 5:5,6.

165) 시 2:6; 눅 1:33.

주로,¹⁶⁶⁾ 만물의 상속자와¹⁶⁷⁾ 세상의 심판주로¹⁶⁸⁾ 선택하고 세우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씨가 되고,¹⁶⁹⁾ 정한 때에 이분으로 말미암아 구속과 소명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받게 하실 한 백성을 이분에게 영원 전에 주셨다.¹⁷⁰⁾

2.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아버지와 한 본성을 가지시고 동등하셨지만, 때가 차매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는데¹⁷¹⁾ 인성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인간에게 공통된 연약함까지 지니셨으나 죄는 없으시다.¹⁷²⁾ 이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마리아의 본체로부터 잉태되셨다.¹⁷³⁾ 그러므로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이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은 전환이나 합성이나 혼합이 아니라 한 위격 안에서 불가분리적으로 함께 결합하였다.¹⁷⁴⁾ 이 위격은 참 하나님이지요 참 인간이시지만, 그럼에도 한 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¹⁷⁵⁾

3. 주 예수님께서서는 이처럼 신성과 연합한 인성에서 성령으로 한량없이 거룩하여 지셨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¹⁷⁶⁾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셨으니¹⁷⁷⁾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으니,¹⁷⁸⁾ 이는

166) 엡 5:23.

167) 히 1:2.

168) 행 17:31.

169) 요 17:6; 시 22:30; 사 53:10.

170) 딤후 2:6; 사 55:4,5; 고전 1:30.

171) 요 1:1,14; 요일 5:20; 빌 2:6; 갈 4:4.

172) 히 2:14,16,17; 4:15.

173) 눅 1:27,31,35; 갈 4:4.

174) 눅 1:35; 골 2:9.

175) 롬 1:3,4; 딤후 2:5.

176) 시 45:7; 요 3:34.

177) 골 2:3.

178) 골 1:19.

예수님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어,¹⁷⁹⁾ 중보자와 보증의 직무를 수행하시기에 완전하게 구비되도록 하시려는 목적을 위함이었다.¹⁸⁰⁾ 예수님은 이 직무를 스스로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과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신¹⁸¹⁾ 아버지로부터 이 직무로 부르심을 받았다.¹⁸²⁾

4. 주 예수님께서서는 이 직무를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¹⁸³⁾ 그 직무를 실행하시려고 율법 아래 나서서¹⁸⁴⁾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¹⁸⁵⁾ 영혼으로는 직접 가장 극심한 고뇌를,¹⁸⁶⁾ 몸으로는 가장 괴로운 고난을 감내하고,¹⁸⁷⁾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¹⁸⁸⁾ 매장되셨고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으나 썩음을 보시지는 않았고,¹⁸⁹⁾ 제 삼일에는 고난 받으신 그 동일한 몸으로¹⁹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¹⁹¹⁾ 또한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우편에 좌정하시사¹⁹²⁾ 중보기도하고 계신다.¹⁹³⁾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사람과 천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¹⁹⁴⁾

5. 주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179) 히 7:26; 요 1:14.

180) 행 10:38; 히 12:24; 7:22.

181) 요 5:22,27; 마 28:18; 행 2:36.

182) 히 5:4,5.

183) 시 40:7,8; 히 5:5-10; 요 10:18; 빌 2:8.

184) 갈 4:4.

185) 마 3:15; 5:17.

186) 마 26:37,38; 눅 22:44; 마 27:46.

187) 마 26; 27~28

188) 빌 2:8

189) 행 2:23,24,27; 13:37; 롬 6:9.

190) 요 20:25,27.

191) 고전 15:3,4.

192) 막 16:19.

193) 롬 8:34; 히 9:24; 7:25.

194) 롬 14:9,10; 행 1:11; 10:42; 마 13:40-42; 유 6; 벧후 2:4.

자기의 완전한 순종과 자기 희생으로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속상(贖償)하셨고, 195)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이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까지 획득하셨다. 196)

6. 그리스도께서는 성육하신 이후에야 구속 사역을 실제로 이루셨지만, 구속의 힘, 효력과 은덕들은 택자들에게 태초부터 모든 시대에 걸쳐 연속적으로 약속, 예표와 희생 제사에 의해, 그것들 안에서 전달되었는데, 그것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인의 후손으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으로, 그리고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으로 계시되고 예시되었다. 197)

7.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사역에서 양성(兩性)을 따라 각 본성에 고유한 일을 그 본성으로 행하셨다. 198) 그러나 위격의 일체성의 연고로 한 본성에 고유한 바가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일컬어지는 위격에 돌려지기도 한다. 199)

8.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위하여 구속을 획득하신 모든 자들에게 그 구속을 확실하고 효력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 200) 곧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며 201)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며, 202) 자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설득하시어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203)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전능하신 권세와 지혜로, 자기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경륜에 가장 잘 상응하는

195) 롬 5:19; 히 9:14,16; 10:14; 엡 5:2; 롬 3:25,26.

196) 단 9:24,26; 골 1:19,20; 엡 1:11,14; 요 17:2; 히 9:12,15.

197) 갈 4:4,5; 창 3:15; 계 13:8; 히13:8.

198) 히 9:14; 뱀전 3:18.

199) 행 20:28; 요 3:13; 요일 3:16.

200) 요 6:37,39; 10:15,16.

201) 요일 2:1,2; 롬 8:34.

202) 요 15:13,15; 엡 1:7-9; 요 17:6.

203) 요 14:16; 히 12:2; 고후 4:13; 롬 8:9,14; 15:18,19; 요 17:17.

방식과 방도로 정복하신다.²⁰⁴⁾

9장 자유의지

1.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에다 본성적 자유를 부여하셨는데, 이 의지는 강제당하거나 본성의 어떤 절대적 필연성 때문에 선 혹은 악을 지향하도록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²⁰⁵⁾

2. 인간은 순전한 상태에서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의지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졌으나,²⁰⁶⁾ 가변적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타락할 수도 있었다.²⁰⁷⁾

3. 인간은 죄의 상태로 타락하여 구원을 수반하는 어떤 영적 선을 향한 의지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²⁰⁸⁾ 그래서 본성적 인간은 선을 철저하게 싫어하고²⁰⁹⁾ 죄로 죽었기 때문에²¹⁰⁾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돌이킬 수 없고 그것을 위해 자기를 준비시킬 수 없다.²¹¹⁾

4.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은혜의 상태로 옮기시면, 죄 아래 처한 본성적 속박에서 그를 해방시키시고²¹²⁾ 오직 자기의 은혜로 그에게 능력을 주사 그가 영적으로 선한 일에 의지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²¹³⁾ 그럼에도 여전히

204) 시 110:1; 고전 15:25,26; 말 4:2,3; 골 2:15.

205) 마 17:12; 약 1:14; 신 30:19.

206) 전 7:29; 창 1:26.

207) 창 2:16,17; 3:6.

208) 롬 5:6; 8:7; 요 15:5.

209) 롬 3:10,12.

210) 엡 2:1,5; 골 2:13.

211) 요 6:44,45; 엡 2:2-5; 고전 2:14; 딤후 3:3-5.

212) 골 1:13; 요 8:34,36.

213) 빌 2:13; 롬 6:18,22.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죄인은 온전히 혹은 오로지 선한 일만을 의지하지 않고 악한 일에도 또한 의지한다.²¹⁴⁾

5. 인간의 의지는 영광의 상태에서만 완전하고 변함없이 자유롭게 되어 선을 행할 수 있다.²¹⁵⁾

10장 효력 있는 소명

1.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예정하신 모든 이들, 그리고 이들만을 자기가 정하시고 용납하신 때에 이들이 본성적으로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²¹⁶⁾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²¹⁷⁾ 효력 있게 부르기를 기뻐하신다.²¹⁸⁾ 이들의 생각을 조명하시사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알게 하시고²¹⁹⁾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고,²²⁰⁾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을 향하도록 정하시고²²¹⁾ 효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²²²⁾ 그렇지만 그들은 은혜로 인하여 기꺼이 자원하게 되어 아주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²²³⁾

2. 이 효력 있는 소명은 결코 인간 속에 미리 보여진 어떤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다.²²⁴⁾ 인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

214) 갈 5:17; 롬 7:15,18,19,21,23.

215) 엡 4:13; 히 12:23; 요일 3:2; 유 24.

216) 롬 8:2; 엡 2:1-5; 딤후 1:9,10.

217) 살후 2:13,14; 고후 3:3,6.

218) 롬 8:30; 11:7; 엡 1:10,11.

219) 행 26:18; 고전 2:10,12; 엡 1:17,18.

220) 겔 36:26.

221) 겔 11:19; 빌 2:13; 신 30:6; 겔 36:27.

222) 엡 1:19; 요 4:44,45.

223) 아 1:4; 시 110:3; 요 6:37; 롬 6:16-18.

생되고 새롭게 될 때까지 이 선행에서 완전히 피동적이며²²⁵⁾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새롭게 되어야 이 소명에 응답할 수 있으며 소명에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포용할 수 있다.²²⁶⁾

3. 유아 때 죽은 택함 받은 아이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식을 따라 일하시는 성령으로²²⁷⁾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는다.²²⁸⁾ 이것은 말씀의 사역으로 외적 소명을 받기가 불가능한 택자들에게도 해당된다.²²⁹⁾

4. 말씀의 사역으로써 소명을 받고²³⁰⁾ 성령의 공통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받은 자들이라도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²³¹⁾ 결코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가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²³²⁾ 히물며 기독교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이들은 어떤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구원 받을 수 없다. 그들이 제아무리 자신의 삶을 본성의 빛과 자기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법을 따라 성실하게 꾸려나간다 하더라도 역시 그러하다.²³³⁾ 이들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공언하고 주장하는 일은 매우 해롭고 가증스럽다.²³⁴⁾

11장 칭의

224) 딤후 1:9; 딤후 3:4,5; 엡 2:4,5,8,9; 롬 9:11.

225) 고전 2:14; 롬 8:7; 엡 2:5.

226) 요 6:37; 겔 36:27; 요 5:25.

227) 요 3:8.

228) 눅 18:15,16; 행 2:38,39; 요 3:3,5; 요일 5:12; 롬 8:9.

229) 요일 5:12; 행 4:12.

230) 마 22:14.

231) 마 7:22; 13:20,21; 히 6:4,5.

232) 요 6:64-66; 8:24.

233) 행 4:12; 요 14:6; 엡 2:12; 요 4:22; 17:3.

234) 요이 9-11; 고전 16:22; 갈 1:6-8.

1. 하나님께서는 효력 있게 불러주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게 하는데,²³⁵⁾ 이들에게 의를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들을 의로운 자로 용납하심으로써 의롭게 하신다. 이는 이들 속에 행한 바나 이들이 이론 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덕분 때문이다. 또 믿음 자체, 믿는 행위나 혹은 어떤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여겨 그들에게 전가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이루신다.²³⁶⁾ 믿음으로 이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 의지한다. 이 믿음은 이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²³⁷⁾

2.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도구이다.²³⁸⁾ 그러나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 믿음만 있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다른 은혜들이 항상 이 믿음을 동반한다. 즉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한다.²³⁹⁾

3.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의롭게 하신 모든 이들의 죄의 빛을 다 갚아 주셨고, 이들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공의를 적절하고 실제로 완전히 속상하셨다.²⁴⁰⁾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분을 그들에게 주셨고,²⁴¹⁾ 그들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 대신에 값없이 그분의 순종과 속상을 용납하신 만큼,²⁴²⁾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에서 난 것이다.²⁴³⁾ 이는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를 통하여 영광 받게 하기 위함

235) 롬 8:30; 3:24.

236) 롬 4:5-8; 고후 5:19,21; 롬 3:22,24,25,27,28; 딤후 3:5,7; 엡 1:7; 롬 23:6; 고전 1:30,31; 롬 5: 17-19.

237) 행 10:44; 갈 2:16; 빌 3:9; 행 13:38,39; 엡 2:7,8.

238) 요 1:12; 롬 3:28; 5:1.

239) 약 2:17,22,26; 갈 5:6

240) 롬 5:8-10,19; 딤후 2:5,6; 히 10:10,14; 단 9:24,26; 사 53:4-6,10-12

241) 롬 8:32.

242) 고후 5:21; 마 3:17; 엡 5:2.

243) 롬 3:24; 엡 1:7.

이다.²⁴⁴⁾

4.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택자들을 의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²⁴⁵⁾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차매 그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²⁴⁶⁾ 그럼에도 성령께서 적정한 때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실제로 연합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²⁴⁷⁾

5.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의 죄를 계속 용서하신다.²⁴⁸⁾ 그들이 칭의 상태에서부터 타락할 수는 없지만,²⁴⁹⁾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불쾌함을 살 수는 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지고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구하며 믿음과 회개를 갱신하여야 아버지의 얼굴 광채가 그들에게 회복될 것이다.²⁵⁰⁾

6. 옛 언약 시대 신자들의 칭의는 이 모든 면에서 새 언약 시대 신자들의 칭의와 하나이며 동일하다.²⁵¹⁾

12장 양자됨

1.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된 모든 이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분 때문에 양자가 되는 은혜에 참여자가 되게 허락하신다.²⁵²⁾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며 자녀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며,²⁵³⁾ 하나님의 이

244) 롬 3:26; 엡 2:7.

245) 갈 3:8; 벰전 1:2,19,20; 롬 8:30.

246) 갈 4:4; 딤후전 2:6; 롬 4:25.

247) 골 1:21,22; 갈 2:16; 딤후 3:4-7.

248) 마 6:12; 요일 1:7,9; 2:1,2.

249) 눅 22: 32; 요 10:28; 히 10:14.

250) 시 89:31-33; 51:7-12; 32:5; 마 26:75; 고전 11:30,32; 눅1:20.

251) 갈 3:9,13,14; 롬 4:22-24; 히 13:8.

252) 엡 1:5; 갈 4:4,5.

253) 롬 8:17; 요 1:12.

름이 그들에게 붙여지며,²⁵⁴ 양자의 영을 받으며,²⁵⁵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²⁵⁶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²⁵⁷ 불쌍히 여김과²⁵⁸ 보호를 받으며,²⁵⁹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²⁶⁰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²⁶¹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²⁶² 오히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²⁶³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²⁶⁴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²⁶⁵

13장 성화

1.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거듭난 자들은 그들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성화된다.²⁶⁶ 그들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²⁶⁷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덕분에 죄의 몸이 주관치 못하며,²⁶⁸ 그 몸의 정욕들은 점점 약화되고 죽으며,²⁶⁹ 그들은 모든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²⁷⁰ 점점 더 소생하고 강건케 되어 참 거룩을 실천하게 되는데, 이 거룩함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뵈 수 없다.²⁷¹

254) 렘 14:9; 고후 6:18; 계 3:12.

255) 롬 8:15.

256) 엡 3:12; 롬 5:2.

257) 갈 4:6.

258) 시 103:13.

259) 잠 14:26.

260) 마 6:30,32; 벰전 5:7.

261) 히 12:6.

262) 애 3:31.

263) 엡 4:30.

264) 벰전 1:3,4 히 1:14.

265) 히 6:12.

266) 고전 6:11; 행 20:32; 빌 3:10; 롬 6:5,6.

267) 요 17:17; 엡 5:26; 살후 2:13.

268) 롬 6:6,14.

269) 갈 5:24; 롬 8:13.

270) 골 1:11; 엡 3:16-19.

271) 고후 7:1; 히 12:14.

2. 이 성화는 인격 전체에 걸쳐 일어나나,²⁷²⁾ 현세에서는 불완전하다. 모든 지체에 부패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어서²⁷³⁾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이 거기서 일어나니, 곧 육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을 거스른다.²⁷⁴⁾

3. 그 전쟁에서 부패의 잔재가 한동안 훨씬 우세할 수도 있지만,²⁷⁵⁾ 증생한 부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이긴다.²⁷⁶⁾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로 자라가며,²⁷⁷⁾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성해 간다.²⁷⁸⁾

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

1. 믿음의 은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택자들이 믿어 자기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데²⁷⁹⁾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행하시는 사역이다.²⁸⁰⁾ 이 은혜는 보통 말씀의 사역으로 일어난다.²⁸¹⁾ 또한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시행과 기도로 믿음은 커지며 강화된다.²⁸²⁾

2. 이 믿음으로 신자는 말씀에 계시된 것마다 참되다고 믿으니, 하나님 그분

272) 살전 5:23.

273) 요일 1:10; 롬 7:18,23; 빌 3:12.

274) 갈 5:17; 벰전 2:11.

275) 롬 7:23.

276) 롬 6:14; 요일 5:4; 엡 4:15,16.

277) 벰후 3:18; 고후 3:18.

278) 고후 7:1.

279) 히 10:39.

280) 고후 4:13; 엡 1:17-19; 2:8.

281) 롬 10:14,17.

282) 벰전 2:2; 행 20:32; 롬 4:11; 눅 17:5; 롬 1:16,17.

의 권위가 그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며,²⁸³⁾ 각 부분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 다르게 응답하는데, 즉 계명에는 순종하고,²⁸⁴⁾ 엄정한 경고에는 두려워 떨며,²⁸⁵⁾ 현세와 내세에 미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아들인다.²⁸⁶⁾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주된 행위들은 은혜언약의 덕분에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받으며 의지하는 것이다.²⁸⁷⁾

3. 이 믿음은 정도가 다르며 약하거나 강할 수 있고,²⁸⁸⁾ 자주 여러 형태로 공격을 받아 약해지기도 하지만, 최종 승리를 얻는다.²⁸⁹⁾ 이 믿음은 많은 이들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²⁹⁰⁾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한 확실성을 얻을 때까지 자라간다.²⁹¹⁾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1.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인데,²⁹²⁾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들은 이 교리를 전파하여야 한다.²⁹³⁾

2.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의로우신 율법에 배치되는 것을 보고 느끼며, 또한 누우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

283) 요 4:42; 살전 2:13; 요일 5:10; 행 24:14.

284) 롬 16:26.

285) 사 66:2.

286) 히 11:13; 딤페전 4:8.

287) 요 1:12; 행 16:31; 갈 2:20; 행 15:11.

288) 히 5:13,14; 롬 4:19,20; 마 6:30; 8:10.

289) 눅 22:31,32; 엡 6:16; 요일 5:4,5.

290) 히 12:2.

291) 히 6:11,12; 10:22; 골 2:2.

292) 스후 12:10; 행 11:18.

293) 눅 24:47; 막 1:15; 행 20:21.

다는 것을 깨달아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고 결국 그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²⁹⁴⁾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매진한다.²⁹⁵⁾

3. 회개는 죄에 대한 어떤 속상이나 사죄의 원인이라고 의지할 수 없고,²⁹⁶⁾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사이지만,²⁹⁷⁾ 모든 죄인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누구도 사죄를 기대할 수 없다.²⁹⁸⁾

4. 아무리 작아도 심판 받지 않는 죄가 없는 것과 같이,²⁹⁹⁾ 아무리 커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심판을 임하게 할 수 있는 죄는 없다.³⁰⁰⁾

5.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하지 말고 구체적인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려고 애쓰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³⁰¹⁾

6.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한 자신의 죄를 사적으로 고백하고 사죄를 간구하여야 하며,³⁰²⁾ 그 간구와 동시에 죄를 버림으로 자비를 얻을 것이다.³⁰³⁾ 이와 마찬가지로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걸림들을 놓은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사적이거나 공적인 고백과 애통함으로 피해자들에게 자기의 회개를 표시해야 하며,³⁰⁴⁾ 이로써 피해자들은 그와 화해하고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³⁰⁵⁾

294) 겔 18:30,31; 36:31; 사 30:22; 시 51:4; 렘 31:18,19; 욥 2:12,13; 암 5:15; 시 119:128; 고후 7:11

295) 시 119:6,59,106; 눅 1:6; 왕하 23:25.

296) 겔 36:31,32; 16:61-63.

297) 호 14:2,4; 롬 3:24; 엡 1:7.

298) 눅 13:3,5; 행 17:30,31.

299) 롬 6:23; 5:12; 마 12:36.

300) 사 55:7; 롬 8:1; 사 1:16,18.

301) 시 19:13; 눅 19:8; 딤편 1:13,15.

302) 시 51:4,5,7,9,14; 32:5,6.

303) 잠 28:13; 요일 1:9.

304) 약 5:16; 눅 17:3,4; 수 7:19; 시 51.

16장 선행

1.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말씀에 명령하신 것뿐이지³⁰⁶⁾ 사람이 말씀의 근거 없이 맹목적 열심이나 어떤 선한 동기를 구실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³⁰⁷⁾

2.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이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요 증거이다.³⁰⁸⁾ 그리고 신자들은 선행으로 자기들의 감사를 드러내고,³⁰⁹⁾ 확신을 굳게 하며,³¹⁰⁾ 형제의 덕을 세우고,³¹¹⁾ 복음의 고백을 단장하며,³¹²⁾ 대적들의 입을 막으며,³¹³⁾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³¹⁴⁾ 그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아,³¹⁵⁾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결국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³¹⁶⁾

3.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은 결코 그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에게서 나온다.³¹⁷⁾ 또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으려면 이미 받은 은혜 외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들 안에 의지하고 행하게 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영향이 있어야 한다.³¹⁸⁾ 그러나 성령이 특별하게 움직여 주시지

305) 고후 2:8.

306) 미 6:8; 롬 12:2; 히 13:21.

307) 마 15:9; 사 29:13; 벰전 1:18; 롬 10:2; 요 16:2; 삼상 15:21-23

308) 약 2:18,22.

309) 시 116:12,13, 벰전 2:9.

310) 요일 2:3,5; 벰후 1:5-10.

311) 고후 9:2; 마 5:16.

312) 딤후 2:5,9-12; 딤후전 6:1.

313) 벰전 2:15.

314) 벰전 2:12; 빌 1:11; 요 15:8.

315) 엡 2:10.

316) 롬 6:22.

317) 요 15:4-6; 겔 36:26,27.

않으면 어떤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나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불러일으켜야 한다.³¹⁹⁾

4. 현세에서 가능한 최고도의 순종에 도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해야 할 일들 이상을 행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상을 행할 수 없다. 이처럼 그들은 의무로 행하여야 하는 일들의 수준에도 많이 미달한다.³²⁰⁾

5. 우리는 최선의 행위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사죄나 영생을 받을 공로를 세울 수 없다. 곧 그 행위와 내세의 영광 사이에 큰 불균형이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엄청난 간격이 있기 때문이니, 우리는 그 행위으로써 하나님께 이득을 드리거나 이전에 범한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없다.³²¹⁾ 그러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였다면, 행해야 하는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중에 불과하며,³²²⁾ 그 행위가 선하다면 선행은 성령에게서 나온다.³²³⁾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위인 만큼 아주 많은 연약과 불완전으로 더럽혀지고 뒤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³²⁴⁾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각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또한 그분 안에서 용납 받을 것이다.³²⁵⁾ 이는 그들이 현세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적으로 무흠하다거나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³²⁶⁾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안에서 그들을 보시면서 연약과 불완전이 많아도 진실

318) 빌 2:13; 4:13; 고후 3:5.

319) 빌 2:12; 히 6:11,12; 벧후 1:3,5,10,11; 사 64:7; 딤후 1:6; 행 26:6,7; 유 20,21.

320) 눅 17:10; 느 13:22; 욥 9:2,3; 갈 5:17.

321) 롬 3:20; 4:2,4,6; 엡 2:8,9; 딛 3:5-7; 롬 8:18; 시 16:2; 욥 22:2,3; 35:7,8.

322) 눅 17:10.

323) 갈 5:22,23.

324) 사 64:6; 갈 5:17; 롬 7:15,18; 시 143:2; 130:3.

325) 엡 1:6; 벧전 2:5; 출 28:38; 창 4:4; 히 11:4.

326) 욥 9:20; 시 143:2.

한 마음으로 행한 선행을 기쁘게 용납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이다.³²⁷⁾

7. 중생받지 못한 자들의 행위가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일 수도 있고, 자신과 남에게 유익할 수도 있을 것이다.³²⁸⁾ 그렇지만 그 행위가 믿음으로 깨끗해진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며,³²⁹⁾ 말씀을 따라³³⁰⁾ 올바른 방식으로 행해지지도 않으며 올바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도 아니다.³³¹⁾ 그러므로 그 행위는 죄스러운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게 만들지도 못한다.³³²⁾ 그러함에도 그들이 선행을 소홀히 행하면 더 죄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을 더 불쾌하게 한다.³³³⁾

17장 성도의 견인

1.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용납하시고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불러 성화시킨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은혜의 상태 가운데서 세상 끝날까지 확실하게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³³⁴⁾

2. 성도의 견인은 그들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선택 작정의 불변성에 달려있다. 즉 이 불변성은 성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며³³⁵⁾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증보의 효력에 기초하고 있고,³³⁶⁾ 성령의

327) 히 13:20,21; 고후 8:12; 히 6:10; 마 25:21,23.

328) 왕하 10:30,31; 왕상 21:27,29; 빌 1:15,16,18.

329) 창 4:5; 히 11:4,6.

330) 고전 13:3; 사 1:12.

331) 마 6:2,5,16.

332) 학 2:14; 딤후 1:15; 암 5:21,22; 호 1:4; 롬 9:16; 딤후 3:5.

333) 시 14:4; 36:3; 욥 21:14,15; 마 25:41-43,45; 23:23.

334) 빌 1:6; 벧후 1:10; 요 10:28,29; 요일 3:9; 벧전 1:5,9.

335) 딤후 2:18,19; 렘 31:3

336) 히 10:10,14; 13:20,21; 9:12-15; 롬 8:33-39; 요 17:11,24; 눅 22:32; 히 7:25.

내주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의 내재,³³⁷⁾ 그리고 은혜언약의 본질에 의존한다.³³⁸⁾ 이 모두로부터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과 무오성이 비롯된다.³³⁹⁾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 있는 부패성의 우세와 자신들을 견인하게 하는 방편을 소홀히 함으로 비통한 죄에 빠지며,³⁴⁰⁾ 한동안 그 죄에 머물기도 한다.³⁴¹⁾ 그리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³⁴²⁾ 성령을 탄식하게 하여³⁴³⁾ 그분들의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빼앗기고,³⁴⁴⁾ 마음이 강박하여지고,³⁴⁵⁾ 자기 양심에 상처를 입고,³⁴⁶⁾ 남을 해치고 넘어지게 하며,³⁴⁷⁾ 일시적인 심판을 자기 위에 불러온다.³⁴⁸⁾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1. 위선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고 구원받았다는 거짓 소망과 육적인 자부심으로 스스로를 허탄하게 속이겠지만,³⁴⁹⁾ 그들의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³⁵⁰⁾ 그러나 주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며 그분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기를 애쓰는 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서있다는 사실을 현세에서 확신하며,³⁵¹⁾ 하나님의 영광을 소

337) 요 14:16,17; 요일 2:27; 3:9.

338) 렘 32:40.

339) 요 10:28; 살후 3:3; 요일 2:19.

340) 마 26:70,72,74.

341) 시 51:14.

342) 사 64:5,7,9; 삼하 11:27.

343) 엡 4:30.

344) 시 51:8,10,12; 계 2:4; 아 5:2-4,6.

345) 사 63:17; 막 6:52; 16:14.

346) 시 32: 3,4; 51:8.

347) 삼하 12:14.

348) 시 89:31,32; 고전 11:32.

349) 욥 8:13,14; 미 3:11; 신 29:19; 요8:41.

350) 마 7:22,23.

351) 요일 2:3; 3:14,18,19,21,24; 5:13.

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으니, 이 소망은 그들로 하여금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³⁵²⁾

2. 이 확신은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한갓 억측이나 그럴싸한 신념이 아니라,³⁵³⁾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으로서 구원의 약속들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와³⁵⁴⁾ 이 약속들이 겨냥하는 은혜의 내적 증거와³⁵⁵⁾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의 증거에 기초하였으니,³⁵⁶⁾ 이 성령은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게 하는 우리 유업의 보증이다.³⁵⁷⁾

3.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는 않으나, 참 신자는 오래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³⁵⁸⁾ 하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바를 성령께서 그에게 알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비상한 계시가 없어도 통상적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그 확신에 이를 수 있다.³⁵⁹⁾ 그러므로 신자 각자는 온갖 열심을 다하여 자신의 소명과 선택을 굳게 할 의무를 진다.³⁶⁰⁾ 이로써 그의 마음에는 성령 안에 있는 화평과 희락,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순종의 의무를 다하는 힘과 즐거움이 증대하리니,³⁶¹⁾ 곧 확신에 속한 적합한 열매들이다. 확신이 사람을 결코 해이하게 만들지 않는다.³⁶²⁾

4. 참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고, 약화시키고, 일시 중단

352) 롬 5:2,5.

353) 히 6:11,19.

354) 히 6:17,18.

355) 벰후 1:4,5,10,11; 요일 2:3; 3:14; 고후 1:12.

356) 롬 8:15,16.

357) 엡 1:13,14; 4:30; 고후 1:21,22.

358) 요일 5:13; 사 50:10; 막 9:24; 시 88; 77:1-12.

359) 고전 2:12; 요일 4:13; 히 6:11,12; 엡 3:17-19.

360) 벰후 1:10.

361) 롬 5:1,2,5; 14:17; 15:13; 엡 1:3,4; 시 4:6,7; 119:32.

362) 요일 2:1,2; 롬 6:1,2; 딤후 2:11,12,14; 고후 7:1; 롬 8:1,12; 요일 3:2,3; 시 130:4; 요일 1:6,7.

시킬 수도 있다. 이는 신자가 구원을 보존하는 일을 게을리 하거나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돌발적이고 격렬한 유혹에 의해서나,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의 빛을 거두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흑암 속에서 빛도 없이 행하는 지경에까지 갈 정도가 될 때 일어난다.³⁶³⁾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삶과 그리스도와 형제들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의 그 진정성과 의무에 대한 양심을 송두리째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성령의 활동으로 인하여 이 확신이 적절한 때에 되살아나고³⁶⁴⁾ 이 모든 것들에 의해 조만간 극한적 절망으로부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³⁶⁵⁾

19장 하나님의 법

1.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법을 행위언약으로 주심으로 그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인격적이며, 전적이고 엄밀하고 지속적인 순종의 의무를 지우셨고, 언약 성취에다가 생명을 약속하셨고 파기에다가는 사망을 경고하셨으며, 그에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여하셨다.³⁶⁶⁾

2. 이 율법은 그가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의(義)에 관한 완전한 표준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법과 같은 의의 표준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주시고 두 돌판에 새기셨다.³⁶⁷⁾ 첫 네 계명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여섯 계명들은 인간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³⁶⁸⁾

363) 아 5:2,3,6; 시 51:8,12,14; 엡 4:30,31; 시 77:1-10; 마 26:69-72; 시 31:22; 88; 사50:10.

364) 요일 3:9; 눅 22:32; 욥 13:15; 시 73:15; 51:8,12; 사 50:10.

365) 미 7:7-9; 렘 32:40; 사 54:7-10; 시 22:1; 88.

366) 창 1:26,27; 2:17; 롬 2:14,15; 10:5; 5:12,19; 갈 3:10,12; 전 7:29; 욥 28:28.

367) 약 1:25; 2:8,10-12; 롬 13:8,9; 신 5:32; 10:4; 출 34:1.

368) 마 22:37-40.

3. 보통 도덕법이라 불리는 이 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미성년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예표적인 규례들을 담고 있는 의식법을 기꺼이 주셨다. 이 의식법의 한 부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활동과 고난과 은덕들을 예표하는 예배에 관한 것이고,³⁶⁹⁾ 또 한 부분은 도덕적 의무에 관한 교훈을 제시한다.³⁷⁰⁾ 모든 의식법은 새 언약 아래에서는 이제 폐기되었다.³⁷¹⁾

4. 하나님께서는 정치 조직체이기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재판법도 주셨는데, 이것은 그 백성의 신분과 더불어 폐지되었다. 이제 이 법은 일반적인 공정성이 요구하는 것 말고는 누구에게도 더 이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³⁷²⁾

5. 도덕법은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 밖의 사람들까지도 순종하도록 정해져 있다.³⁷³⁾ 즉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의 견지에서뿐만 아니라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³⁷⁴⁾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에서 이 법의 구속력을 조금도 해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크게 강화하셨다.³⁷⁵⁾

6. 참 신자들은 행위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 법에 의해 의로워지거나 심판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³⁷⁶⁾ 이 법은 자기에게나 타인에게 크게 유익하다. 이는, 이 법이 삶의 표준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고,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더 발견하게

369) 히 4: 10:1; 갈 4:1-3; 골 2:17.

370) 고전 5:7; 고후 6:17; 유 23.

371) 골 2:14,16,17; 단 9:27; 엡 2:15,16.

372) 출 21; 22:1-29; 창 49:10; 벰전 2:13,14; 마 5:17,38,39; 고전 9:8-10.

373) 약 2:10,11.

374) 롬 13:8-10; 엡 6:2; 요일 2:3,4,7,8.

375) 마 5:17-19; 약 2:8; 롬 3:31.

376) 롬 6:14; 갈 2:16; 3:13; 4:4,5; 행 13:39; 롬 8:1.

하여,³⁷⁷⁾ 그들이 법대로 행하도록 지시하고 정하기 때문이다.³⁷⁸⁾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 법으로 자신을 살핌으로써 더욱 더 죄를 확신하게 되며 죄 때문에 겸손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³⁷⁹⁾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더욱 더 분명하게 직시하게 된다.³⁸⁰⁾ 마찬가지로 율법은 중생한 자들에게도 쓸모가 있는데, 이는 율법이 죄를 금함으로 그들의 부패성을 제어하기 때문이다.³⁸¹⁾ 그리고 율법의 위협들은, 비록 그들이 율법에서 경고한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죄 때문에 어떤 환난을 현세에서 당하게 될지를 보여 주는데 이바지한다.³⁸²⁾ 마찬가지로 그 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인정하신다는 사실과 (행위언약으로서 율법에 의하여 그들의 몫으로 이 복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³⁸³⁾ 그 법을 준행함으로 어떤 복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³⁸⁴⁾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금하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 하여도, 이것이 그가 율법 아래 있고, 복음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³⁸⁵⁾

7. 위에서 말한 율법의 여러 용도도 복음의 은혜에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복음과 순조롭게 부합한다.³⁸⁶⁾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인간의 의지를 복종하게 하시어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자유롭게 기꺼이 행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다.³⁸⁷⁾

377) 롬 7:7; 3:20.

378) 롬 7:12,22,25; 시 119:4-6; 고전 7:19; 갈 5:14,16,18-23.

379) 약 1:23-25; 롬 7:9,14,24.

380) 갈 3:24; 롬 7:24; 8:3,4.

381) 약 2:11; 시 119:101,104,128.

382) 스 9:13,14; 시 89:30-34.

383) 레 26:1-14; 고후 6:16; 엡 6:2,3; 시 37:11; 마 5:5; 시 19:11.

384) 갈 2:16; 눅 17:10.

385) 롬 6:12,14; 뱀전 3:8-12; 시 34:12-16; 히 12:28,29.

386) 갈 3:21.

387) 겔 36:27; 히 8:10; 렘 31:33.

20장 기독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1.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서 신자들을 위하여 값 주고 사신 자유에는, 죄책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진노와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³⁸⁸⁾ 악한 현세와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와³⁸⁹⁾ 환란의 불행과 사망의 쏘는 것과 음부의 승리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출 받는 것,³⁹⁰⁾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감,³⁹¹⁾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의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함 등이 있다.³⁹²⁾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있던 신자들에게도 동일하였다.³⁹³⁾ 그런데 새 언약 하에서 신자의 자유는 확장되어 그들은 유대교회가 복종했던 의식법의 굴레에서 자유로우며,³⁹⁴⁾ 율법 아래 있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참여한 것보다 은혜의 보좌에 더욱 더 담대하게 나아가며³⁹⁵⁾ 하나님의 너그러운 성령과 더욱 풍성하게 교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³⁹⁶⁾

2. 하나님께서는 홀로 양심의 주인이시며,³⁹⁷⁾ 믿음과 예배의 문제에서 자기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덧붙여진, 인간이 만든 교리와 계명으로부터 양심이 자유하게 하셨다.³⁹⁸⁾ 그래서 그런 교리를 믿거나 그런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한다.³⁹⁹⁾ 맹신과 절대적이며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

388) 딤후 2:14; 살전 1:10; 갈 3:13.

389) 갈 1:4; 골 1:13; 행 26:18; 롬 6:14.

390) 롬 8:28; 시 119:71; 고전 15:54-57; 롬 8:1.

391) 롬 5:1,2.

392) 롬 8:14,15; 요일 4:18.

393) 갈 3:9,14.

394) 갈 4:1-3,6,7; 5:1; 행 15: 10,11.

395) 히 4:14,16; 10:19-22.

396) 요 7:38,39; 고후 3:13,17,18.

397) 약 4:12; 롬 14:4.

398) 행 4:19; 5:29; 고전 7:23; 마 23:8-10; 고후 1:24; 마 15:9.

399) 골 2:20,22,23; 갈 1:10; 2:4,5; 5:1.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성을 파괴하고 말 것이다.⁴⁰⁰⁾

3. 기독교자의 자유를 빌미로 삼아 죄를 자행하거나 모종의 정욕을 품는 자들은 이로써 기독교자의 자유의 목적, 즉 우리가 대적의 손에서 해방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그분을 섬기게 하려는 목적을 파괴한다.⁴⁰¹⁾

4.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권세와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자유로써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서로 지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기독교자의 자유를 빌미로 삼아 시민적이든 교회적이든 어떤 합법적인 권세나 그 권세의 행사를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저항하는 셈이다.⁴⁰²⁾ 그런 의견들을 발표하거나 그런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본성의 빛, 믿음과 예배와 교제에 대하여 기독교가 밝힌 원리, 그리고 경건의 능력과도 배치된다. 또한 그런 그릇된 의견과 짓거리들은 그 자체로나 이것들을 발표하고 지속하는 방식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확립하신 외적 화평과 질서를 파괴한다. 그런 자들은 교회의 치리와⁴⁰³⁾ 국가기관의 권세에 의해⁴⁰⁴⁾ 합법적으로 문책 받고 피소되어야 마땅하다.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

1. 본성의 빛은 만물 위에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선하며 만물에 대해 선

400) 롬 10:17; 14:23; 사 8:20; 행 17:11; 요 4:22; 호 5:11; 계 13:12,16,17; 렘 8:9.

401) 갈 5:13; 벰전 2:16; 벰후 2:19; 요 8:34; 눅 1:74,75.

402) 마 12:25; 벰전 2:13,14,16; 롬 13:1-8; 히 13:17.

403) 롬 1:32; 고전 5:1,5,11,13; 요이 10,11; 살후 3:14; 딤후전 6:3-5; 딤후전 1:10,11,13; 3:10; 마 18:15-17; 딤후전 1:19,20; 계 2:2,14,15,20; 3:9.

404) 신 13:6-12; 롬 13:3,4; 요이 10,11; 스 7:23,25-28; 계 17:12,16,17; 느 13:15,17,21,22,25, 30; 왕하 23:5,6,9,20,21; 대하 34:33; 15:12,13,16; 단 3:29; 딤후전 2:2 사 49:23; 숙 13:2,3.

을 행하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심을 보여준다. 따라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며 의뢰하고 섬겨야 한다.⁴⁰⁵⁾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것에 관한 받음직한 방식을 직접 제정하시고 자기가 계시하신 뜻으로 제한하셨으니, 인간의 고안물이나 상상, 혹은 사탄의 제안을 따라, 혹은 보이는 형상 하에서, 혹은 성경에 지시되어 있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⁴⁰⁶⁾

2. 종교적 예배는 하나님, 곧 성부, 성자와 성령께 드려야 하며, 천사나 성인(聖人)이나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⁴⁰⁷⁾ 오직 그분에게만 드려야 한다.⁴⁰⁸⁾ 타락 이후에는 증보자가 계셨으니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증보로 예배해야 한다.⁴⁰⁹⁾

3.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더불어 종교적 예배의 특별한 순서인 기도를⁴¹⁰⁾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다.⁴¹¹⁾ 기도가 받아지려면, 성자의 이름으로⁴¹²⁾ 그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⁴¹³⁾ 그분의 뜻을 따라⁴¹⁴⁾ 총명과 공경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써 하되⁴¹⁵⁾ 목소리를 사용한다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드려야 한다.⁴¹⁶⁾

405) 롬 1:20; 행 17:24; 시 119:68; 렘 10:7; 시 31:23; 18:3; 롬 10:12; 시 62:8; 수 24:14; 막 12:33

406) 신 12:32; 마 15:9; 행 17:25; 마 4:9,10; 신 4:15-20; 출 20:4-6; 골 2:23.

407) 골 2:18; 계 19:10; 롬 1:25.

408) 마 4:10; 요 5:23; 고후 13:13.

409) 요 14:6; 딤펢전 2:5; 엡 2:18; 골 3:17.

410) 빌 4:6.

411) 시 65:2.

412) 요 14:13,14; 벰전 2:5.

413) 롬 8:26.

414) 요일 5:14.

415) 시 47:7; 전 5:1,2; 히 12:28; 창 18:27; 약 5:16; 1:6,7; 막 11:24; 마 6:12,14,15; 골 4:2; 엡 6:18.

416) 고전 14:14.

4. 기도는 합법적인 사안과⁴¹⁷⁾ 생존하거나 이후에 생존할 모든 종류의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으나,⁴¹⁸⁾ 죽은 자들이나⁴¹⁹⁾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음이 알려질 질 수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는 할 수 없다.⁴²⁰⁾

5.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순서로는, 경외함으로 행하는 성경 봉독,⁴²¹⁾ 건전한 설교,⁴²²⁾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총명과 믿음과 공경으로 말씀을 신실하게 경청함,⁴²³⁾ 마음의 감사가 담긴 시편 부르기,⁴²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시행함과 그에 상응하는 참여 등이 있다.⁴²⁵⁾ 이 외에도 종교적 맹세와⁴²⁶⁾ 그리고 서원,⁴²⁷⁾ 진지한 금식과⁴²⁸⁾ 특별한 기회에 드리는 감사⁴²⁹⁾ 등도 거룩한 종교적 방식으로 여러 기회와 시기에 행하여야 한다.⁴³⁰⁾

6. 현 복음 시대에 기도나 종교적 예배의 어떤 순서도 행하는 장소나 향하는 곳에 매여 있지 않으며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⁴³¹⁾ 그러나 매일⁴³²⁾ 가정에서나⁴³³⁾ 은밀하게 홀로⁴³⁴⁾ 그리고 어디서나⁴³⁵⁾ 신령과 진정으로⁴³⁶⁾ 하

417) 요일 5:14.

418) 딤후 2:1,2; 요 17:20; 삼하 7:29; 룻 4:12.

419) 삼하 12:21-23; 눅 16: 25,26; 계 14:13

420) 요일 5:16.

421) 행 15:21; 계1:3.

422) 딤후 4:2.

423) 약 1:22; 행 10:33; 마 13:19; 히 4:2; 사 66:2.

424) 골 3:16; 엡 5:19; 약 5:13.

425) 마 28:19; 고전 11:23-29; 행 2:42.

426) 신 6:13; 느 10:29.

427) 사 19:21; 전 5:4,5.

428) 율 2:12; 예 4:16; 마 9:15; 고전 7:5.

429) 시 107; 예 9:22.

430) 히 12:28.

431) 요 4:21.

432) 마 6:11.

433) 렘 10:25; 신 6:6,7; 욥 1:5; 삼하 6:18,20; 뱀전 3:7; 행 10:2.

434) 마 6:6; 엡 6:18.

나눔을 예배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섭리로 요청하실 때 공식 집회에서 더 엄숙하게 예배할 수 있으니, 이런 집회를 부주의나 임의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⁴³⁷⁾

7. 대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적정한 비율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자연적 법칙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에서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항구적인 계명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시사 특별히 칠일 가운데 하루를 안식일로 지정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다.⁴³⁸⁾ 이날은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주간의 첫날로 바뀌었으며,⁴³⁹⁾ 성경은 그날을 주일이라 부르며⁴⁴⁰⁾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계속될 것이다.⁴⁴¹⁾

8. 이 안식일은, 사람이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일상 용무를 미리 정돈한 후에, 일과 말, 세상의 사무와 휴식에 관한 생각을 떠나 하루 종일 거룩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⁴⁴²⁾ 종일토록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불가피한 일과 자비의 의무에 몰두함으로써,⁴⁴³⁾ 주님께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22장 합법적인 서약과 서원

1. 합법적 서약은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⁴⁴⁴⁾ 정당한 경우에 서약자가

435) 말 1:11; 딤후전 2:8.

436) 요 4:23,24.

437) 사 56:6,7; 히 10:25; 잠 1:20,21,24; 8:34; 행 13:42; 눅 4:16; 행 2:42.

438) 출 20:8,10,11; 사 56:2,4,6,7.

439) 창 2:2,3; 고전 16:1,2; 행 20:7.

440) 계 1:10.

441) 출 20:8,10; 마 5:17,18.

442) 출 20:8; 16:23,25,26,29,30; 31:15-17; 사 58:13; 느 13:15-19,21,22.

443) 사 58:13; 마 12:1-13.

444) 신 10:20.

하나님을 엄숙하게 불러 자기가 단언하거나 약속하는 바의 증거자로 세우며, 자기가 서약한 바의 진위(眞僞)를 따라 심판하여 주실 것을 청하는 것이다.⁴⁴⁵⁾

2.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서약해야 하며, 거룩한 두려움과 경의로써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⁴⁴⁶⁾ 그러므로 영화롭고 두려운 그 이름으로 망명되어 경솔하게 서약하거나 무엇을 서약하든 그 이름 외의 어떤 다른 이름으로 서약하는 것은 죄스러우며 혐오할 만한 일이다.⁴⁴⁷⁾ 그러나 중요한 사안이나 특별한 경우에 옛 언약 시대뿐만 아니라 새 언약 시대에도 서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정당성을 보장받는다.⁴⁴⁸⁾ 앞에서 말한 그런 경우에 합법적 권위가 부과한 합법적 서약은 행해야 한다.⁴⁴⁹⁾

3. 서약하는 자는 누구나 것처럼 엄숙한 서약의 무게를 제대로 주목해야 하며, 자기가 온전히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만을 공언해야 한다.⁴⁵⁰⁾ 누구든지 선하고 옳은 일, 옳다고 믿는 일, 자기가 실제로 행할 수 있고 그리고 행하려고 결심한 일 외에는 그 어떤 일에 관해서도 서약으로써 자신을 구속하지 않아도 된다.⁴⁵¹⁾ 그러나 합법적인 권위가 부과한 선하고 정당한 일에 연관된 서약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된다.⁴⁵²⁾

4. 서약은 평이하고 상식적인 말로 하되, 애매하거나 심중 유보가 없어야 한다.⁴⁵³⁾ 죄를 범하게 강요하는 서약은 안 되지만, 죄스럽지 않는 어떤 것을 서약하였다면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마땅히 이행하여야 한다.⁴⁵⁴⁾ 이단이나

445) 출 20:7; 레 19:12; 고후 1:23; 대하 6:22,23.

446) 신 6:13.

447) 출 20:7; 렘 5:7; 마 5:34,37; 약 5:12.

448) 히 6:16; 고후 1:23; 사 65:16.

449) 왕상 8:31; 느 13:25; 스 10:5.

450) 출 20:7; 렘 4:2.

451) 창 24:2,3,5,6,8,9.

452) 민 5:19,21; 느 5:12; 출 22:7-11.

453) 렘 4:2; 시 24:4.

불신자에게 서약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다.⁴⁵⁵⁾

5. 서원은 약속을 수반하는 서약과 같은 성질을 지니며, 동일한 종교적 신중함으로 서원해야 하고 동일한 신실성으로 이행하여야 한다.⁴⁵⁶⁾

6. 서원은 여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⁴⁵⁷⁾ 서원이 받아들여지면, 믿음과 의무의 양심으로 이미 받은 자비를 감사하거나 없던 것을 얻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서원하여야 한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들과 여타 다른 일들이 서원에 합당하게 이바지한다면, 그리고 이바지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러한 의무들과 일들에 우리 자신을 더 엄중하게 얽매어야 한다.⁴⁵⁸⁾

7.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시는 것, 말씀이 명하는 어떤 의무를 방해하는 것,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서원 이행을 위해 하나님께 받은 능력의 약속이 없는 것 등은 서원하지 말아야 한다.⁴⁵⁹⁾ 이 점에서 로마교회 수도원의 평생 독신 생활 맹세, 청빈과 순명 서원은 보다 높은 완전의 단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신자로서는 빠질 필요가 없는 미신이고 죄스러운 율무일 뿐이다.⁴⁶⁰⁾

23장 국가 공직자

1. 온 세계의 대주재시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국가 공직자를 자기 아래 그리고 백성들 위에 세우셨으며, 이를 위하여

454) 삼상 25:22,32-34; 시 15:4.

455) 겔 17:16,18,19; 수 9:18,19; 삼하 21:1.

456) 사 19:21; 전 5:4-6; 시 61:8; 66:13,14.

457) 시 76:11; 렘 44:25,26.

458) 신 23:21-23; 시 50:14; 창 28:20-22; 삼상 1:11; 시 66:13,14; 132:2-5.

459) 행 23:12,14; 막 6:26; 민 30:5,8,12,13.

460) 마 19:11,12; 고전 7:2,9; 엡 4:28; 벧전 4:2; 고전 7:23.

그리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인들을 징벌하실 목적으로 그들을 칼의 권세로 무장시키셨다.⁴⁶¹⁾

2. 기독교자가 공직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 직무를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⁴⁶²⁾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 특히 경건, 공의, 평화를 유지하여야 하며,⁴⁶³⁾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현 신약 시대에서도 정당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전쟁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⁴⁶⁴⁾

3. 국가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례나⁴⁶⁵⁾ 천국의 열쇠권을 전유(專有)하거나,⁴⁶⁶⁾ 민음의 사안에 조금이라도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⁴⁶⁷⁾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우리 공동의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되, 어떤 교파를 다른 교파보다 우대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교역자들이 폭력이나 위협에 처함이 없이 그들의 신성한 활동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하고 자유롭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야 한다.⁴⁶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정규적인 치리와 권징을 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법이라도 어떤 기독교자들의 교파의 자원 회원들이 그들의 고백과 신앙을 따라 치리와 권징을 적절히 이행하는 것을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⁴⁶⁹⁾ 국가 공직자의 책무는, 자기 백성의 인신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어떤 사람도 종교 혹은 불신앙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어느 누구에게 어떤 모욕, 폭행, 학대, 상해를 가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하는 것과, 모든 종교적 혹은 교회적 집회도 방해나 교란 당함이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⁴⁷⁰⁾

461) 롬 13:1-4; 벰전 2:13,14.

462) 잠 8:15,16; 롬 13:1,2,4.

463) 시 2:10-12; 딤펢전 2:2; 시 82:3,4; 삼하 23:3; 벰전 2:13.

464) 눅 3:14; 롬 13:4; 마 8:9,10; 행 10:1,2; 계 17:14,16.

465) 대하 2:18.

466) 마 16:19.

467) 요 18:36.

468) 사 19:23; 롬 12:1-6.

469) 시 105:15; 행 18:14-16.

4. 백성의 의무는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하며,⁴⁷¹⁾ 그들을 존경하고,⁴⁷²⁾ 세금과 여타 부과금을 바치고,⁴⁷³⁾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을 순종하며, 양심상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⁴⁷⁴⁾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가 공직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무효화할 수 없으며, 공직자들에 대한 정당한 순종에서 백성을 제외시킬 수 없으며,⁴⁷⁵⁾ 교역자 또한 예외는 아니다.⁴⁷⁶⁾ 더구나 교황은 통치 중에 있는 공직자나 그들의 백성 중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권세나 재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군다나 교황이 그들을 이단이라고 판결하거나 어떤 다른 구실로든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⁴⁷⁷⁾

24장 결혼과 이혼

1.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진다. 남자가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동시에 두거나 여자가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⁴⁷⁸⁾

2.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우며,⁴⁷⁹⁾ 적법한 자녀를 통하여 인류를 증가시키고, 거룩한 자손을 통하여 교회를 왕성하게 하기 위해,⁴⁸⁰⁾ 그리고 부정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⁴⁸¹⁾

470) 롬 13:4; 대하 19:8-11.

471) 딤후 2:1,2.

472) 벰전 2:17.

473) 롬 13:6,7.

474) 롬 13:5; 딤후 3:1.

475) 벰전 2:13,14,16.

476) 롬 13:1; 왕상 2:35; 행 25:9-11; 벰후 2:1,10,11; 유 8-11.

477) 살후 2:4; 계 13:15-17.

478) 창 2:24; 마 19:5,6; 잠 2:17.

479) 창 2:18.

480) 말 2:15.

481) 고전 7:2,9.

3.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를 표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⁴⁸²⁾ 그러나 기독교자는 의무적으로 오직 주님 안에서만 결혼하여야 한다.⁴⁸³⁾ 그러므로 참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 로마교신자나 여타 위상승배자와 혼인할 수 없다. 또한 경건한 자들은 삶이 현저하게 악하거나 저주받을 이단을 계속 추종하는 자들과 혼인하여 대등하지 않은 명예를 메지 말아야 한다.⁴⁸⁴⁾

4. 말씀에 금지된 가까운 촌수의 친인척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⁴⁸⁵⁾ 인간의 어떤 범으로나 당사자의 동의로도 근친결혼을 합법화하여 부부로 동거하게 할 수 없다.⁴⁸⁶⁾

5.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음행이 혼인 전에 발각되면, 순결한 편은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갖는다.⁴⁸⁷⁾ 혼인 후의 간음의 경우, 순결한 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⁴⁸⁸⁾ 이혼 후에는 간음을 범한 편이 죽은 것처럼 다른 이와 재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⁴⁸⁹⁾

6. 사람의 부패는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짝지어 준 사람들을 부당하게 나누려는 논거들을 연구해내곤 하지만, 간음 혹은 교회나 국가 공직자조차도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고의적인 유기 외에는 결혼 유대를 파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없다.⁴⁹⁰⁾ 그 경우 공적인 질서를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하며, 당사자들을

482) 히 13:4; 딤후전 4:3; 고전 7:36-38; 창 24:57,58.

483) 고전 7:39.

484) 창 34:14; 출 34:16; 단 7:3,4; 왕상 11:4; 느 13:25-27; 말 2:11,12; 고후 6:14.

485) 레 18; 고전 5:1; 암 2:7.

486) 막 6:18; 레 18:24-28.

487) 마 1:18-20.

488) 마 5:31,32.

489) 마 19:9; 롬 7:2,3.

490) 마 19:8,9; 고전 7:15; 마 19:6.

그들 각자의 의지와 분별력에만 내버려두지 말아야 한다.⁴⁹¹⁾

25장 교회

1.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는 볼 수 없는데, 머리인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였고, 모이고, 모일 모든 택자들로 이루어지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⁴⁹²⁾

2. 보이는 교회 역시 복음 하에서 공교회요 우주적 교회인데, 전 세계에서 참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⁴⁹³⁾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지며,⁴⁹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며⁴⁹⁵⁾ 하나님의 집이요 권속이며,⁴⁹⁶⁾ 이 교회를 떠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⁴⁹⁷⁾

3.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편적인 가시 교회에 교역과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주심으로 현세에서 세상 끝 날까지 성도들을 모으고 보호하려 하였고, 또 자기 약속을 따라 자기의 임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역과 말씀과 규례가 효력 있게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⁴⁹⁸⁾

4. 이 공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덜 보이기도 하였다.⁴⁹⁹⁾ 개체교회는 이 공교회의 일원으로서 더 또는 덜 순수하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

491) 신 24:1-4.

492) 엡 1:10,22,23; 5:23,27,32; 골 1:18.

493) 고전 1:2; 12:12,13; 시 2:8; 계 7:9; 롬 15:9-12.

494) 고전 7:14; 행 2:39; 겔 16:20,21; 롬 11:16; 창 3:15; 17:7.

495) 마 13:47; 사 9:7.

496) 엡 2:19; 3:15.

497) 행 2:47.

498) 고전 12:28; 엡 4:11-13; 마 28:19,20; 사 59:21.

499) 롬 11:3,4; 계 12:6,14.

치고 수용하고 규례를 집행하며 공예배를 드리는 정도에 따라, 더 또는 덜 순수하다.⁵⁰⁰⁾

5. 천하에서 가장 순수한 교회라 하더라도 혼합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⁵⁰¹⁾ 더러는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멈추고 사탄의 회가 될 정도로 타락하였다.⁵⁰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⁵⁰³⁾

6.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⁵⁰⁴⁾ 로마 교황은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대적하고 자신을 높이는 저 적그리스도, 저 죄의 사람이며 멸망의 자식이다.⁵⁰⁵⁾

26장 성도의 교제

1.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분과 교제한다.⁵⁰⁶⁾ 또한 사랑으로 서로 간에도 연합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은사와 은혜에도 참여함으로 서로 교제한다.⁵⁰⁷⁾ 이들은 공사(公私) 간에 속사람으로나 겉사람으로도 다른 지체들의 선에 서로 이바지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⁵⁰⁸⁾

500) 계 2: 3; 고전 5:6,7.

501) 고전 13:12; 계 2: 3; 마 13: 24-30,47.

502) 계 18:2; 롬 11:18-22.

503) 마 16:18; 시 72:17; 102:28; 마 28:19,20.

504) 골 1:18; 엡 1:22.

505) 마 23:8-10; 살후 2:3,4,8,9; 계 13:6.

506) 요일 1:3; 엡 3:16-19; 요 1:16; 엡 2:5,6; 빌 3:10; 롬 6:5,6; 딤후 2:12.

507) 엡 4:15,16; 고전 12:7; 3:21-23; 골 2:19.

508) 살전 5:11,14; 롬 1:11,12,14; 요일 3:16-18; 갈 6:10.

2. 성도들은, 고백으로 서약했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상호 덕을 세우기 위해 행하는 여타의 영적 봉사에서, 또한 필요에 따라 힘이 닿는 대로 외적인 짐들을 서로 덜어줌으로써 거룩한 친교와 교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⁵⁰⁹⁾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느 곳이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확장해야 한다.⁵¹⁰⁾

3.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누리는 이 교제가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의 신성의 본질에 참여하게 하거나, 또 어떤 측면에서든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긍정하는 것은 불경하고 망령된 일이다.⁵¹¹⁾ 또한 성도로서 서로 나누는 교제는, 성도 각자가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소유권을 빼앗거나 침해하지도 않는다.⁵¹²⁾

27장 성례

1. 성례는 은혜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이며,⁵¹³⁾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⁵¹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덕을 재현하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권리를 확인하며,⁵¹⁵⁾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이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며,⁵¹⁶⁾ 자기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엄숙히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⁵¹⁷⁾

509) 히 10:24,25; 행 2:42,46; 사 2:3; 고전 11:20.

510) 행 2:44,45; 요일 3:17; 고후 8:9; 행 11:29,30.

511) 골 1:18,19; 고전 8:6; 사 42:8; 딤후 6:15,16; 시 45:7; 히 1:8,9.

512) 출 20:15; 엡 4:28; 행 5:4.

513) 롬 4:11; 창 17:7,10.

514) 마 28:19; 고전 11:23.

515) 고전 10:16; 11:25,26; 갈 3:27.

516) 롬 15:8; 출 12:48; 창 34:14.

517) 롬 6:3,4; 고전 10:16,21.

2. 모든 성례에는 표와 표상된 내용 사이에 영적 관계 즉 성례전적 연합이 있다. 그 때문에 전자의 명칭과 효과가 후자에게 귀속된다.⁵¹⁸⁾

3. 올바르게 집행된 성례 안에서 혹은 그 성례로 인하여 드러난 은혜는, 성례 안에 있는 어떤 능력에 의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성례의 효력 역시 집행자의 경건이나 의도가 아니라⁵¹⁹⁾ 성령의 사역과⁵²⁰⁾ 제정의 말씀에 달려있다. 그 제정의 말씀은 성례 집행의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과 더불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이 누릴 은택에 대한 약속도 담고 있다.⁵²¹⁾

4.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제정하신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이 두 성례는 아무나 베풀 수 없으며, 합법적으로 임직 받은 말씀의 사역자만이 베풀 수 있다.⁵²²⁾

5. 구약의 성례도 그것이 표상하고 나타내는 영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신약의 성례와 본질상 동일하다.⁵²³⁾

28장 세례

1. 세례는 신약의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⁵²⁴⁾ 수세자를 가시적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킬 뿐만 아니라,⁵²⁵⁾ 그가 그리스도께 접붙혀짐과⁵²⁶⁾ 증생과⁵²⁷⁾ 사죄와⁵²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

518) 창 17:10; 마 26:27,28; 딤후 3:5.

519) 롬 2:28,29; 벰전 3:21.

520) 마 3:11; 고전 12:13.

521) 마 26:27,28; 28:19,20.

522) 마 28:19; 고전 11:20,23; 4:1; 히 5:4.

523) 고전 10:1-4.

524) 마 28:19.

525) 고전 12:13.

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⁵²⁹⁾ 은혜언약의 표와 인이다.⁵³⁰⁾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⁵³¹⁾

2. 이 성례에서 사용하는 외적 요소는 물이며, 합법적으로 소명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는 이 물로써 수세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⁵³²⁾

3. 수세자를 물에 잠기게 할 필요는 없다. 그 사람에게 물을 붓거나 부림으로 세례를 올바르게 시행할 수 있다.⁵³³⁾

4.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에게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자들뿐만 아니라⁵³⁴⁾ 한 편이나 양편이 믿는 부모를 둔 유아도 세례 받을 수 있다.⁵³⁵⁾

5. 이 성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하게 대하는 것은 큰 죄이다.⁵³⁶⁾ 하지만 세례 없이는 중생이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지,⁵³⁷⁾ 또는 세례만 받으면 누구나 확실하게 중생을 받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⁵³⁸⁾ 세례에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는 않다.

526) 갈 3:27; 롬 6:5.

527) 딤후 3:5.

528) 막 1:4.

529) 롬 6:3,4.

530) 롬 4:11; 골 2:11,12.

531) 마 28:19,20.

532) 마 3:11; 요 1:33; 마 28:19,20.

533) 히 9:10,19-22; 행 2:41; 16:33; 막 7:4.

534) 막 16:15,16; 행 8:37,38.

535) 창 17:7,9; 갈 3:9,14; 골 2:11,12; 행 2:38,39; 롬 4:11,12; 고전 7:14; 마 28:19; 막 10:13-16; 눅 18:15.

536) 눅 7:30; 출 4:24-26.

537) 롬 4:11; 행 10:2,4,22,31,45,47.

538) 행 8:13,23.

6. 세례의 효력은 집행하는 그 순간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⁵³⁹⁾ 그렇지만 이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면,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약속된 은혜가 속한 사람들에게(어른이나 아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뜻의 협의를 따라 그분이 정하신 때에,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은혜를 보여주시고 수여하신다.⁵⁴⁰⁾

7. 세례 성례는 누구에게든지 단 한번만 베풀어야 한다.⁵⁴¹⁾

29장 성찬

1.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배신당하시던 밤에 성찬이라 불리는 자기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시어 자기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준행하게 하셨다. 이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일을 항구적으로 기억하게 하며, 참신자에게 미치는 그 희생의 은덕들, 그분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영적 양식과 성장, 그들이 그분께 다하여야 할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을 인치려 함이다. 또한 성찬은 그들이 그분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와 그분의 신비적 몸의 지체으로서 서로 나누는 교제에 대한 보증이요 담보이다.⁵⁴²⁾

2. 이 성례로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제물로 바쳐지지 아니하며, 산자와 죽은 자들을 사죄하는 실제적 희생 제물이 되지도 아니 하신다.⁵⁴³⁾ 성찬은 다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바치신 일을 기억함이며, 이 일에 감사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보답을 하는 것이다.⁵⁴⁴⁾ 따라서 로마교회가 미사라 부르는 제사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 제사, 곧 택자들의 모

539) 요 3:5,8.

540) 갈 3:27; 딤후 3:5; 엡 5:25,26; 행 2:38,41.

541) 딤후 3:5.

542) 고전 11:23-26; 10:16,17,21; 12:13.

543) 히 9:22,25,26,28.

544) 고전 11:24-26; 마 26:26,27.

든 죄를 위한 유일한 화목제에 대한 가장 기증스런 모독이다.⁵⁴⁵⁾

3. 주 예수님께서서는 이 성례로 자기 사역자들이 자기가 제정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빵과 포도주를 축사하여 통상적 용도로부터 거룩한 용도로 구별하고, 떡을 취하여 떼며, 잔을 취하여 그들도 서로 나눌 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성찬 참여자에게 주게 하셨으나,⁵⁴⁶⁾ 회중 가운데 참석하지 않은 자에게는 주지 말 것을 명하셨다.⁵⁴⁷⁾

4. 다음과 같은 행동은 이 성례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제정과는 위배된다.⁵⁴⁸⁾ 즉 사직 미사 곧 이 성례를 신부(神父)나 다른 이로부터 홀로 받는 일이며,⁵⁴⁹⁾ 잔을 백성에게 주지 않는 일,⁵⁵⁰⁾ 떡과 포도주를 승배하는 일, 승배를 목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들어 올리거나 들고 다니는 일, 다른 유사 종교적 용도를 위하여 보관하는 일 등이다.

5.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용도를 위하여 바르게 구별된 이 성례의 외적 요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과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참으로 그리고 오직 성례전적으로만 그 요소들은 스스로 재현하는 것들의 이름,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도 종종 칭해진다.⁵⁵¹⁾ 그러나 이 요소들은 본체와 본질로는 전과 같이 실로 여전히 떡과 포도주로만 존재할 뿐이다.⁵⁵²⁾

6. 떡과 포도주의 본체가 신부(神父)의 봉헌이나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본체로 변한다는 소위 화체설은 성경뿐만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도

545) 히 7:23,24,27; 10:11,12,14,18.

546) 마 26:26-28; 막 14:22-24; 눅 22:19,20; 고전 11:23-26.

547) 행 20:7; 고전 11:20.

548) 마 15:9.

549) 고전 10:16.

550) 막 14:23; 고전 11:25-29.

551) 마 26:26-28.

552) 고전 11:26-28; 마 26:29.

모순되며, 성례의 본질을 뒤엎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갖가지 미신과 실로 끔찍한 우상숭배의 원인이다.⁵⁵³⁾

7. 이 성례의 가시적 요소에 외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합당하게 성찬을 받는 자들은⁵⁵⁴⁾ 믿음으로 인하여 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그냥 육적이거나 몸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그분 죽음이 주는 모든 은덕을 받고 먹는다. 이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빵과 포도주 안이나 그것들과 더불어 또는 그것들 아래에 몸으로나 육적으로 임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그 규례 안에서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신자들의 믿음에 임재한다. 이것은 마치 요소들이 외적 감각들에 감지되어 임재하는 것과 같다.⁵⁵⁵⁾

8. 무지하고 사악한 자들이 이 성례로 외적 요소들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요소들이 상징하는 바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당하게 접근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함으로 자신의 심판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불경한 자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즐기기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찬상에 앉을 자격도 없으며, 여전히 무지하고 불경한 채로 있으면서도 이 거룩한 신비에 스스로 참여하든지⁵⁵⁶⁾ 참여를 허락받는 것은⁵⁵⁷⁾ 그리스도께 큰 죄를 범하는 일이다.

30장 교회 권징

1. 주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교회의 임금이시요 머리로서 국가공직자와는 구별

553) 행 3:21; 고전 11:24-26; 눅 24:6,39.

554) 고전 11:28.

555) 고전 10:16.

556) 고전 11:27-29; 고후 6:14-16.

557) 고전 5:6,7,13; 살후 3:6,14,15; 마 7:6.

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치리를 맡기셨다.⁵⁵⁸⁾

2.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는데, 그들은 이 열쇠로써 정죄하기도 하고 사죄할 수도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을 닫고, 회개한 죄인에게는 필요에 따라 복음의 사역과, 권징의 해별로 천국을 열어 줄 권한을 가진다.⁵⁵⁹⁾

3. 교회의 권징은,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여 다시 얻기 위함이며, 다른 이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도록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며, 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印)들을 사약하고 완악한 범죄자들이 더럽히도록 교회가 방지할 때,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⁵⁶⁰⁾

4. 이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직원들은 범죄의 성격과 죄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권제, 일시적 수찬 정지, 출교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⁵⁶¹⁾

31장 대회와 공회의

1. 보다 나은 치리와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대회 또는 공회의가 있어야 한다. 개체 교회의 감독자와 다른 직분자들은 파괴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직무와 권세에 의해 이런 회의를 소집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마땅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회의에 참

558) 사 9:6,7; 딤편 5:17; 살전 5:12; 행 20:17,18; 히 13:7,17,24, 고전 12:28; 마 28:18-20.

559) 마 16:19; 18:17,18; 요 20:21-23; 고후 2:6-8.

560) 고전 5; 딤편 5:20; 마 7:6; 딤편 1:20; 고전 11:27-34; 유 23.

561) 살전 5:12; 살후 3:6,14,15; 고전 5:4,5,13; 마 18:17; 딤편 3:10.

석하여야 한다.⁵⁶²⁾

2. 대회와 공회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즉 믿음에 관한 논쟁을 판단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교회의 치리를 더 잘 정비하는 데에 필요한 규칙과 지침을 제정하고, 행정 오류에 대한 불평들을 접수하여 권위적으로 재판한다. 법령과 결정 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한, 존경과 복종하는 자세로 받아야 하는데, 이것들이 말씀과 합치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결정한 권세 연고로도 하나님의 규례 곧 말씀으로 그렇게 정한 규례로 받아야 한다.⁵⁶³⁾

3. 모든 대회나 공회회의는 사도시대 이후부터 총회이든 지방회이든 간에 오류를 범할 수 있었고 많은 회의들이 실로 오류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회의를 믿음과 생활의 법칙으로 삼지 말고, 믿음과 생활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⁵⁶⁴⁾

4. 대회와 공회회의는 교회적 사안만을 다루어야 한다. 비상사국에 접허한 청원이나 국가 공직자의 요청을 받아 양심상 행하는 조언 외에는 국기와 연관된 시민적 사안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⁵⁶⁵⁾

32장 인간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들의 부활

1. 사후에 사람의 몸은 티끌로 돌아가 썩지만,⁵⁶⁶⁾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즉각 돌아간다.⁵⁶⁷⁾ 의인들의 영혼은 거룩하여 완전하여졌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

562) 행 15:2,4,6.

563) 행 15:15,19,24,27-31; 16:4; 마 18:17-20.

564) 엡 2:20; 행 17:11; 고전 2:5; 고후 1:24.

565) 눅 12:13,14; 요 18:36.

566) 창 3:19; 행 13:36.

접함을 받아 그곳에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면서,⁵⁶⁸⁾ 빛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다.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짐을 받아, 거기서 고통과 극심한 암흑 중에 간혀 대심판의 날까지 대기하고 있다.⁵⁶⁹⁾ 이 두 장소 외에는 성경이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을 위해 인정하는 장소가 없다.

2. 세상 끝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된다.⁵⁷⁰⁾ 이미 죽은 자들은 모두, 몸이 비록 다른 성질을 갖게 되겠지만 다시 자기들의 영혼과 영원히 결합한 이전의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⁵⁷¹⁾

3.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살아 치욕을 당하며, 의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다시 살리셔서 존귀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아진다.⁵⁷²⁾

33장 마지막 심판

1.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⁵⁷³⁾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와 심판을 받으셨다.⁵⁷⁴⁾ 그날에 배도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⁵⁷⁵⁾ 땅 위에 생존했던 만민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직고하며, 선이든 악이든 그들이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⁵⁷⁶⁾

567) 눅 23:43; 전 12:7.

568) 히 12:23; 고후 5:1,6,8; 빌 1:23; 행 3:21; 엡 4:10.

569) 눅 16:23,24; 행 1:25; 유 6,7; 벘전 3:19.

570) 살전 4:17; 고전 15:51,52.

571) 롬 19:26,27; 고전 15:42-44.

572) 행 24:15; 요 5:28,29; 고전 15:43; 빌 3:21.

573) 행 17:31.

574) 요 5:22,27.

575) 고전 6:3; 유 6; 벘후 2:4.

576) 고후 5:10; 전 12:14; 롬 2:16; 14:10,12; 마 12:36,37.

2. 하나님께서 이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자들의 영원한 구원으로는 자기의 자비의 영광을, 악하고 불순종한 유기자들(버림받은 자)의 심판으로는 자기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그때 의인들은 영생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임할 희락과 위안을 충분하게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질 것이요,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세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형벌을 받는다.⁵⁷⁷⁾

3. 그리스도께서는, 만인을 죄에서 떠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역경에 처한 신자들을 더 크게 위로하실 목적으로도 심판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납득하게 하셨듯이,⁵⁷⁸⁾ 또한 그날을 만인에게 감추어 두시어 주님께서 오실 시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육신적 안심을 떨쳐버리고 항상 깨어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를 외칠 준비를 항상 하게 하신다.⁵⁷⁹⁾

34장 성령 하나님

1. 삼위일체 중 제 삼위이신 성령은⁵⁸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아오시며,⁵⁸¹⁾ 권세나 영광에서 한 본체시며 동등하시고,⁵⁸²⁾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⁵⁸³⁾ 모든 시대를 통하여 믿음과 사랑과 복종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⁵⁸⁴⁾

577) 마 25:31-46; 롬 2:5,6; 9:22,23; 마 25:21; 행 3:19; 살후 1:7-10.

578) 벵후 3:11,14; 고후 5:10,11; 살후 1:5-7; 눅 21:27,28; 롬 8:23-25.

579) 마 24:36,42-44; 막 13:35-37; 눅 12:35,36; 계22:20.

580) 마 3:16,17; 28:19; 고후 13:13.

581) 요 15:26; 16:7; 고전 2:12; 갈 4:6; 시104:30.

582) 마 12:31,32; 행 5:1-4; 고전 3:16; 6:19; 창 1:2; 시 139:7; 눅 11:33; 고전 2:10,11; 벵전 4: 14; 히 9:14.

583) 마 28:19; 고후 13:13.

584) 시 51:11; 요 16:8,9; 행 10:19-21.

2.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⁵⁸⁵⁾ 무소부재하시며,⁵⁸⁶⁾ 사람의 모든 좋은 생각과 순결한 욕망과 거룩한 협의의 근원이다.⁵⁸⁷⁾ 선지자들은 그분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⁵⁸⁸⁾ 모든 성경 기자들도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무오하게 기록하였다.⁵⁸⁹⁾ 그분은 특히 복음 전파를 위임 받았다.⁵⁹⁰⁾ 복음 전파의 길을 예비하시고,⁵⁹¹⁾ 설득력을 지니고 동행하시고, 사람의 이성과 양심에 메시지를 강권하니,⁵⁹²⁾ 이 때문에 복음의 자비로운 제시를 거부하는 자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으며 나아가 성령을 거역하는 허물을 범한다.⁵⁹³⁾

3. 성부께서는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항상 기꺼이 주시기를 원하시며,⁵⁹⁴⁾ 이 성령은 구속의 적용에서 유일하고 유력한 대행자이다.⁵⁹⁵⁾ 그분은 자기 은혜로써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며,⁵⁹⁶⁾ 그들에게 죄를 확신시키고, 감동 받아 회개하게 하시며,⁵⁹⁷⁾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설득하시고 영접할 힘을 주신다.⁵⁹⁸⁾ 또한 모든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그들 중에 보혜사와 성화주(聖化主)로 내주하시며,⁵⁹⁹⁾ 양자(養子)와 기도의 영을 주시고,⁶⁰⁰⁾ 모든 은혜의 직무를 수행하시사 그들을 구속의 날까지 거룩하게 하

585) 창 2:7; 욥 33:4; 롬 8:2; 딤후 3:6,7.

586) 창 1:2; 욥 26:13; 시 33:6; 104:30; 사 42:5.

587) 요 14:26; 16:13; 롬 8:5; 15:13; 행 16:7; 고전 12:11; 갈 5:16,17,22,23.

588) 엡 3:5.

589) 요 14:26; 행 1:16; 28:25; 딤후 3:16; 벧후 1:20,21.

590) 요 15:26; 16:7; 행 1:8; 4:31,33.

591) 행 13:2; 16:6-10.

592) 막 13:11; 눅 24:49; 행 1:8; 고전 2:4,5; 살전 1:5.

593) 히 2:2,3; 10:28,29; 마 11:20-24; 엡 4:3; 사 63:10.

594) 눅 11:13.

595) 요 3:5; 고전 12:3.

596) 요 3:3-7; 딤후 3:5,6.

597) 시 85:4; 요 16:8,9; 행 11:18.

598) 고전 12:3; 2:4,5.

599) 요 14:16; 행 7:55; 벧전 1:2; 4:14.

600) 롬 8:26,27.

시고 인치신다.⁶⁰¹⁾

4. 성령의 내주로 모든 신자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생명력 있게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몸인 교회에서 서로 연합한다.⁶⁰²⁾ 그분은 사역자들을 불러 거룩한 직무로 기름 부으시며, 교회의 다른 직원들에게 그들의 특별 사역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게 하시며,⁶⁰³⁾ 다양한 은사와 은혜를 그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신다.⁶⁰⁴⁾ 또 말씀과 복음의 규례가 효력을 갖게 하신다.⁶⁰⁵⁾ 성령 덕분에 교회는 보존 받으며, 왕성해 가고,⁶⁰⁶⁾ 정화되며,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하여질 것이다.⁶⁰⁷⁾

35장 복음

1.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고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서⁶⁰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과 희생을 통하여 은혜언약으로, 버림받은 온 인류에게 충분하고 다 적용되는 생명과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고,⁶⁰⁹⁾ 이 구원을 복음으로 만민에게 값 없이 주신다.⁶¹⁰⁾

2. 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자기의 사랑과 만민이 구원 받기를

601) 고전 6:11; 살후2:13.

602) 고전 12:13-27; 엡 4:3,4; 5:23; 골 1:18.

603) 출 28:3; 행 13:2; 20:28; 고전 12:28; 엡 4:11,12.

604) 고전 12:4-11.

605) 행 4:31-33.

606) 행 1:8; 9:31.

607) 엡 5:26,27.

608) 렘 31:3; 요일 4:8,16; 마 5:44,45; 요 3:16; 16:27; 롬 5:8.

609) 창 17:7,10; 3:15; 요 14:16; 딤펢전 2:5; 히 7:22,25; 8:6; 요일 2:1,2; 마 20:28; 26:28; 막 10:45; 요 1:29; 고전 5:7; 뱀전 2:24; 히 9:11-15; 10:11-14.

610) 롬 8:32; 10:13; 요 6:38,39; 17:2,6,9,10; 10:15; 행 2:39; 고후 5:14,15; 딤펢전 2:6; 요일 2:2.

열명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고,⁶¹¹⁾ 구원의 유일한 길을 완전하고 분명하게 계시하시고,⁶¹²⁾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만민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⁶¹³⁾ 제시한 자비를 만민이 영접하라고 초청하시고 명하시며,⁶¹⁴⁾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은혜로운 초청을 받아들이라고 강권하신다.⁶¹⁵⁾

3. 복음을 듣는 자마다 이 자비로운 양식을 즉각 받아들일 의무와 특권을 지닌다.⁶¹⁶⁾ 회개하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머무는 자는 허물을 더 악화시키고 스스로의 과오 때문에 멸망한다.⁶¹⁷⁾

4. 복음에 계시된 길 외에는 달리 구원의 길이 없으며,⁶¹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정상적인 방법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⁶¹⁹⁾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위임하셨다.⁶²⁰⁾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기독교의 규례들이 이미 정착된 곳에서 그 규례들을 지키며, 기도와 헌금과 직접 수고로 온 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바지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⁶²¹⁾

611) 요 3:16; 6:39,40.

612) 요 14:6; 히 10:20.

613) 요 3:15,16,36; 5:24; 20:31; 고전 15:22; 요일 5:13.

614) 겔 33:11; 막 1:15; 요 10:25,26; 고후 5:20; 벧후 3:9.

615) 요 15:26; 16:8,9,13; 고전 2:4.

616) 마 22:1-14; 눅 14:16-24.

617) 요 3:36; 8:24; 히 2:2,3; 마 10:14,15; 11:20-24.

618) 행 4:12; 딤펢전 2:5; 요 14:6.

619) 롬 10:17; 고전 1:21.

620) 마 28:19,20; 행 1:8; 막 16:15.

621) 롬 1:14; 행 4:23-31; 벧전 4:10; 갈 6:9; 마 28:19; 고전 9:16.

교리표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문1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1), 그 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2).

(1)롬11:36; 고전10:31 (2)시73:24-26; 요17:22,24

문2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빛과 그분이 하신 일들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1).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만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나타내 주십니다(2).

(1)롬1:19,20; 시19:1-3; 행17:28 (2)고전2:9,10; 딤후3:15-17; 사59:21

문3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답 구약과 신약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1),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입니다(2).

(1)딤후3:16; 벰후1:19-21 (2)사8:20; 눅16:29; 갈1:8,9; 엡2:20; 계22:18,19

문4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 성경은 그 자체의 존엄성(1)과 순결성(2), 모든 부분들의 일치(3)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성경 전체의 목적(4), 죄인들을 자각하게 하여 회개하게 만들고,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자체의 빛과 능력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타냅니다(5). 그러나 성경으로 말미암아, 또한 성경과 더불어 사람의 마음에 증거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완전히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6).

(1)호8:12; 고전2:6,7; 시119:18,129 (2)시12:6; 119:140 (3)행10:43; 26:22; 눅24:27 (4)고후3:6-11; 롬16:25-27; 3:19,27 (5)행18:28; 롬15:4; 행20:32; 히4:12; 약1:18; 시 19:7-9; (6)요16:13,14; 요일2:20,27; 요20:31

문5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칩니다(1).

(1)딤후1:13; 3:16; 시119:105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마땅히 믿어야 할 것들

문6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려줍니까?

답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1)과 하나님의 여러 위격들(2)과 하나님의 작정들(3)과 그 작정들을 수행하심(4)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1)요4:24; 출3:14; 34:6,7 (2)마3:16,17; 28:19; 요일5:7; 고후13:13 (3)엡1:11; 사46:9,10; 행15:18 (4)행4:27,28; 사42:9

문7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영(1)이시며, 존재하심(2)과 영광(3)과 복되심(4)과 완전하심(5)에 있어서 본래 스스로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족하시며(6), 영원하시며(7), 불변하시며(8), 불가해하시며(9), 어디든지 계시며(10), 전능하시며(11), 모든 것을 아십니다(12).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며(13), 지극히 거룩하시며(14), 지극히 의로우시며(15), 지극히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십니다(16).

(1)요4:24 (2)왕상8:27; 사40:20; 출3:14 (3)행7:2 (4)딤후6:15; 행17:24,25 (5)마5:48 (6)롬11:35,36 (7)시90:2 (8)말3:6; 약1:17 (9)시145:3; 롬11:33 (10)시139:1-13 (11)창 17:1; 계4:8 (12)히4:13; 시147:5 (13)롬16:27 (14)사6:3; 계15:4 (15)신32:4 (16)출34:6

문8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답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1).

(1)신6:4; 고전8:4,6; 램10:10

문9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이며, 각 위의 고유성은 서로 구별될지라도 그 본질은 같으며, 그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하십니다(1).

(1)마3:16,17; 28:19; 고후13:13; 요10:30

문10 하나님의 신격에 있는 삼위의 고유성은 무엇입니까?

답 성부의 고유성은 성자를 낳으심이며(1), 성자의 고유성은 성부에게서 나심이며(2), 성령의 고유성은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심입니다(3).

(1)히1:5,6,8; 시2:6,7 (2)요1:14,18 (3)요15:26; 갈4:6

문11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신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 성경이, 하나님께만 고유한 이름들(1)과 속성들(2)과 일들(3)과 예배(4)를 성자와 성령에게도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1)사6:3,5,8; 렘23:6; 요일5:20 (2)요1:1; 사9:6; 요2:24,25; 고전2:10,11 (3)골1:16; 창1:2; 욥26:13; 시104:30; 요1:3 (4)마28:19; 고후13:13

문12 하나님의 작정들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작정들은 지혜와 자유와 거룩함으로 자기 협의를 결정하시는 행위인데(1), 그것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히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한 것들을 불변하게 예정하셨습니다(2).

(1)엡1:11; 롬9:15,18,22,23; 11:33 (2)엡1:4; 행4:27,28; 시33:11; 사45:6,7

문13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해 특별히 작정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나타날 자신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순전한 사랑에서 비롯된 영원불변하신 작정으로 어떤 천사들

을 택하여 영광을 얻도록 하셨습니다(1).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되 그 방법까지 택하셨습니다(2). 또한 자기의 주권적 권능과 측량할 수 없는 뜻(곧 자기의 기뻐하시는 대로 호의를 베풀 수도 있고 아니 할 수도 있는 뜻)을 따라 나머지 천사들과 사람들을 간과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수치와 진노를 받도록 미리 정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공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3).

(1)딤후5:21 (2)엡1:4,5; 2:10; 살후2:13,14 (3)롬9:17,18,21,22; 마11:25,26; 딤후2:20; 유4; 벧전2:8

문14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걱정들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자기의 걱정들을 수행하시되, 자기의 틀림없는 예지와 자기 의지의 자유롭고 변함없는 협의를 따라 그렇게 하십니다(1).

(1)엡1:11; 단4:35; 사40:12-31

문15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답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옛세 동안에 매우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1).

(1) 창1장; 히11:3; 잠16:4; 계4:11; 시33:5,6

문16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1)을 영들로(2), 죽지 않게(3), 거룩하게(4), 지식이 탁월하게(5), 권능이 강하게(6)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집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7). 그러나 그들은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8).

(1)골1:16 (2)시104:4 (3)마22:30; 눅20:36 (4)마25:31 (5)삼하14:17; 마24:36; (6)시91:11,12; 살후1:7 (7)시103:20,21; 사6:1-3 (8)벧후2:4

문17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 하시되(1), 땅의 흙으로 남자의 몸을(2), 그리고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여자의 몸을 만드시고(3), 그들에게 살아 있고, 이성이 있으며, 죽지 않는 영을 부여하셨습니다(4). 또한 그들을 이 지식(5)과 의와 거룩함(6)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7),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8), 그것을 성취할 능력(9)과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10). 그러나 그들을 타락할 수도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11).

(1)창1:27 (2)창2:7 (3)창2:22 (4)창2:7; 전12:7; 욥35:11; 마10:28; 눅23:43
(5)골3:10 (6)엡4:24 (7)창1:26,27 (8)롬2:14,15 (9)전7:29 (10)창1:28,29 (11) 창3:6; 전7:29; 창2:16,17

문18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사역들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지극히 거룩하고(1), 지혜롭고(2),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3) 통치하시는 것이며(4),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5)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행위들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6).

(1)시145:17; 레21:8 (2)시104:24; 사28:29 (3)히1:3; 느9:6 (4)시103:19 (5) 롬11:36; 사63:14
(6)마10:29,30; 시135:6

문19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에 의해 어떤 천사들은 고의적이고도 돌이킬 수 없이 죄를 범하여 정죄를 당하게 허용하시면서도(1), 그 과정과 그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루도록 규제하고 통제하셨습니다(2). 또한 나머지 천사들은 거룩하고 행복하게 세우심으로써(3) 자신의 권능과 자비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일에(4) 이 모든 것을 기쁘게 사용하셨습니다(5).

(1)유6; 뱀후2:4; 히2:16; 요8:44 (2)욥1:12; 눅10:17; 마8:31 (3)딤후5:21; 막

8:38; 히12:22 (4)왕하19:35; 히1:14 (5)시104:4

문20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있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답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있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낙원에 두시고, 그것을 돌보도록 그를 임명하시고,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그에게 주신 것(1)과 모든 피조물을 그의 통치 아래 두시고(2), 그를 돕기 위해 결혼을 제정하시고(3),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게 하신 것(4)과 또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5)과 인격적이고 완전하며 항구적인 복종을 조건으로(6) 생명나무를 보증으로 삼아(7)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것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고통에 의거하여 금하신 것입니다(8).

(1)창2:8,15,16 (2)창1:28 (3)창2:18 (4)창1:27,28(중) (5)창2:3 (6)롬5:14; 고전15:22,47; 호6:7; 눅10:25-28; 갈3:12; 롬10:5; 갈3:10,12 (7)창2:9,16,17 (8)창 2:17

문21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를 창조하신 본래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였습니까?

답 우리의 시조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지녔으나, 사탄의 유혹으로 금하신 열매를 먹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 처음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무죄한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1).

(1)창3:6,7,8,13; 전7:29; 고후11:3

문22 모든 인류는 그 첫 범죄로 타락하였습니까?

답 공인인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보통 생육법으로(1)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는 그 첫 범죄로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2).

(1)행17:26 (2)창2:17; 롬5:12-20; 고전15:12-20

문23 그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답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1).

(1)롬5:12; 갈3:10; 엡2:1

문24 죄는 무엇입니까?

답 죄는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규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것을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1).

(1)롬3:23; 요일3:4; 갈3:10-12

문25 사람이 타락하여 빠지게 된 상태의 죄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답 사람이 타락하여 빠지게 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1)과 창조 시에 받은 그 의의 결핍과, 그의 본성의 부패로 나타납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은 모든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행하지 못하고, 거역하게 되며, 모든 악으로 완전히,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2).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죄라 하며, 거기에서 모든 실제적 자범죄들이 나오게 됩니다(3).

(1)롬5:12,19; 고전15:22 (2)롬3:10-19; 5:6-8; 창6:5; 시51:5; 58:3 (3)약 1:14,15; 마15:19

문26 원죄가 어떻게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었습니까?

답 원죄는 자연 생육법으로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그들에게서 나는 사람은 다 죄 중에 잉태되고 태어납니다(1).

(1)시51:5; 율15:14; 요3:6

문27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임한 비참은 무엇입니까?

답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임한 비참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1)과 그분의 노여움과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2)

사탄에게 매인 종이며(3), 이 세상에서와 오는 세상에서 모든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존재입니다(4).

(1)창3:8,24 (2)엡2:2,3 (3)딤후2:26; 눅11:21,22; 히2:14 (4)롬6:23; 5:14; 창2:17; 애3:39; 마25:41,46; 유7

문28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답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어두운 마음(1), 타락한 지각(2), 강력한 미혹(3), 강박한 마음(4), 양심의 공포(5), 비열한 욕망(6)과 같은 내적인 것들과, 우리 때문에 피조물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7), 죽음 그 자체(8)와 더불어 우리 육신과 명예와 재산과 관계와 직업에 미친 모든 다른 해악들(9)과 같은 외적인 것입니다.

(1)엡4:18 (2)롬1:28 (3)살후2:11 (4)롬2:5 (5)사33:14; 창4:13,14; 마27:4; 히10:27 (6)롬1:26 (7)창3:17 (8)롬6:21,23 (9)신28:15-18

문29 오는 세상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답 오는 세상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고통 없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끊어지는 것과, 영육이 지옥불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최악의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는 것입니다(1).

(1)살후1:9; 막9:43,48; 눅16:24,26; 마25:41,46; 계14:11; 요3:36

문30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첫 언약의 위반으로 인해(1) 빠져버린 죄와 비참의 상태 속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2), 자신의 순수한 사랑과 자비로써 그의 택한 자들을 거기에서 이끌어 내시고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둘째 언약을 통해 구원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십니다(3).

(1)창3:10,12; 갈3:10,21 (2)살전5:9 (3)딤후1:2; 3:4-7; 롬3:20-22

문31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은 것입니까?

답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안에서 그의 후손인 모든 택한 자들과 맺은 것입니다(1).

(1)갈3:16; 눅22:29; 삼하23:5; 롬5:15-21; 사53:10,11; 59:21; 히 2:10,11,14; 고전15:22,45; 엡1:4; 딤후1:9

문32 둘째 언약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까?

답 둘째 언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한 중보자를(1) 값없이 예비하여 죄인들에게 제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2). 그리고 그들이 그 중보자와 관계를 맺게 할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 하시고(3), 그의 모든 택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심으로써(4),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과 함께(5) 그 믿음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고(6), 그들로 모든 일에 거룩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7). 이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8)과 감사(9)가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정해 놓으신 길입니다(10).

(1)창3:15; 사42:6; 요6:27 (2)요일5:11,12 (3)요3:16; 1:12; 3:36 (4)잠1:23 (5)갈 5:22,23 (6)고후4:13 (7)겔36:27 (8)약2:18,22 (9)고후5:14,15 (10)엡2:8

문33 은혜 언약은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되었습니까?

답 은혜 언약이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신약 시대와 다르게 집행되었습니다(1).

(1)고후3:6-9; 히1:1,2; 8:7,8

문34 구약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답 구약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약속들(1), 예언들(2), 희생제사들(3), 할례(4), 유월절(5), 그리고 다른 예표들과 의식들로 집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그 시대의 택자들이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갖도록 하였고(6),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의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7).

(1)롬15:8 (2)행3:20,24 (3)히10:1 (4)롬4:11 (5)고전5:7 (6)히8-10장; 11:13
(7)갈3:7, 8,9,14

문35 신약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답 신약시대에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동일한 은혜 언약이 말씀의 선포(1)로, 성례인 세례(2)와 성찬(3)의 집례로 집행되었으며 지금도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들 가운데서 은혜와 구원이 모든 나라에 더 완전하고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제시됩니다(4).

(1)막16:15; 눅24:47,48 (2)마28:19,20 (3)고전11:23-26 (4)롬1:16; 고후3:6; 히8:6,7

문36 은혜 언약의 증보자는 누구입니까?

답 은혜 언약의 유일하신 증보자는 성부 하나님과 한 실체이시고 동등하신(1)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2). 그는 때가 차매 사람이 되셨고(3),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하여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지신 한 인격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이십니다.

(1)요1:1,14; 10:30; 14:6; 빌2:6 (2)딤후2:5 (3)갈4:4 (4)눅1:35; 롬9:5; 골2:9; 빌2:5-11; 히13:8

문37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실제 사람의 몸과 이성을 지닌 영혼을 스스로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는데(1),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그녀의 본질을 가지고 그녀에게서 나셨으나(2), 죄는 없으십니다(3).

(1)요1:14; 마26:38; 눅2:40,52; 요11:33 (2)눅1:31,35,42; 갈4:4 (3)히4:15; 7:26; 요일3:5

문38 증보자는 왜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습니까?

답 증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던 것은 자신의 인성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와 사망의 권세 아래 빠지는 것을 막아서 지키시고(1), 자신의 고난과 순종과 증보를 가치 있고 효력 있게 하시고(2),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3),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시고(4), 특별한 백성을 사시고(5),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6),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시고(7),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8).

(1)행2:24; 롬1:4 (2)행20:28; 히9:14; 7:25-28; 요17장 (3)롬3:24-26 (4)엡1:6 (5)딤후2:13,14 (6)요15:26; 갈4:6; 요14:26; 16:7 (7)눅1:68,69,71,74 (8)히5:9; 9:11-15

문39 증보자는 왜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습니까?

답 증보자가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던 것은 그분이 우리의 본성을 향상시키시고(1), 율법에 순종하시고(2),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증보하시며(3),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4). 그리하여 우리가 양자됨을 얻게 하시고(5) 위로를 받으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6).

(1)벧후1:4; 롬8:34; 히2:16 (2)갈4:4; 롬5:19; 마5:17 (3)히2:14; 7:24,25 (4)히4:15 (5)갈4:5 (6)히4:16

문40 증보자는 왜 반드시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었으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 했습니까?

답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할 증보자는 그 자신이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이어야 하며, 한 인격 안에서 그러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증보자의 신성과 인성의 각기 고유한 사역들이, 전 인격의 사역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받으신 바가 되어야 하고(1), 또한 우리가 의지하는 바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2).

(1)마1:21,23; 3:17 (2)벧전2:6

문41 우리의 증보자를 왜 예수라 했습니까?

답 우리의 증보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라 했습니다(1).

(1)마1:21

문42 우리의 증보자를 왜 그리스도라 했습니까?

답 우리의 증보자를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그 분이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쁨 부음을 받으심으로(1) 성별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충만히 부여받으심으로(2) 자신의 낮아지심과 높이 들리심의 상태에서 자신의 교회를 위한 선지자(3)와 제사장(4)과 왕(5)의 직무를 수행하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요3:34; 시45:7 (2)요6:27; 마28:18-20 (3)행3:21,22; 눅4:18,21 (4)히 5:5,6,7; 4:14,15 (5)계19:16; 시2:6; 마21:5; 사9:6,7

문43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건덕과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한(1)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2)을,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3) 여러 가지 시행 방식으로(4), 모든 세대의 교회에 계시하심으로(5)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

(1)엡4:11-13; 요20:31; 행20:22 (2)요15:15 (3)고후2:9, 1:10-12; 뱀후1:21 (4)히1:1,2 (5)요1:1,4,18

문44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려고(1) 자신을 흠 없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심으로(2),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증보하심으로(3) 자기의 제사장직을 수행하십니다.

(1)히2:7 (2)히9:14,28 (3)히7:25

문45 그리스도께서는 왕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왕직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니다. 세상에서 한 백성을 자

기에게로 불러내시고(1), 그들에게 직분들(2)과 율법(3)과 권징을 부여하십시오. 그들이 가견적(可見的)으로 통치하십시오(4). 자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여하시되(5), 그들의 순종에 대하여는 상을 주시고(6),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징계하시며(7), 그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 그들을 보존하시고 도우시며(8),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정복하시되(9), 자기 자신의 영광(10)과 백성들의 유익(11)을 위하여 모든 것을 능력으로 주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원수를 갚으십시오(12).

(1)요10:16,17; 사55:5; 창49:10 (2)고전12:28; 엡4:11,12 (3)사33:22; 요15:14; 마28:19,20 (4)마18:17,18; 고전5:4,5 (5)행5:31; 시68:18 (6)계22:12; 마25:34-36; 롬2:7 (7)계3:19; 히12:6,7 (8)사63:9 (9)고전15:25; 행12:17; 18:9,10 (10)롬14:10,11 (11)롬8:28 (12)살후1:8; 시2:8,9

문46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그분이 잉태되시고 탄생하시고 사시다가 죽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비천한 형편에 처하신 것입니다(1)

(1)빌2:6-8; 눅1:31; 고후8:9; 행2:24; 갈4:4

문47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태어나실 때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태어나실 때 자신을 다음과 같이 낮추셨습니다. 곧 그분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때가 차매 기꺼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신분이 낮은 여자에게 잉태되어 출생하셨으며, 보통 이상으로 여러 가지 비천한 상태에 처하셨습니다(1).

(1)요1:14,18; 눅1:48; 2:7; 갈4:4

문48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애에서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애에서 자신을 다음과 같이 낮추셨습니다. 곧 그분은

스스로 율법에 복종하셨고(1)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2). 그리고 인성에 공통된 것들이나, 특별히 그의 비천한 상태에 수반하는 세상의 멸시(3)와 사탄의 시험(4)과 자기 육신의 연약(5)과 싸우셨습니다.

- (1)갈4:4 (2)마5:17; 롬5:19; 마3:15; 요19:30 (3)시22:6; 히12:2,3 (4)마4:1-12; 눅4:1-14
(5)히2:17-18; 4:15; 사52:13-14

문49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자신을 다음과 같이 낮추셨습니다. 곧 그분은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1), 자기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2),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배척을 당하셨으며(3),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시고 핍박자들에게 고문을 당하셨습니다(4). 또한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느끼시고 그것을 참으셨으며(5), 자기 생명을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셨고(6),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7).

- (1)마27:4 (2)마26:56 (3)사53:3; 눅18:32,33 (4)마27:26-50; 눅22:63,64; 요19:34 (5)눅22:44; 마27:46; 롬8:32 (6)사53:10; 롬4:25; 고전15:3 (7)빌2:8; 히12:2; 갈3:13

문50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후에 문헌바 되어(1) 제 삼일까지 죽은 자의 상태로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습니다(2). 이를 다른 말로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 (1)고전15:3,4 (2)마12:40; 시16:10; 행2:24,27,31; 롬6:9

문51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상태는 그의 부활(1)과 승천(2)과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심(3)과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것(4)을 포함합니다.

(1)고전15:4 (2)눅24:51; 막16:19; 행1:9-11 (3)엡1:20 (4)행1:11; 17:31; 마 25:31,46

문52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에서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곧 그분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사망 중에 썩음을 보지 않으셨고(1), 고난당하실 때의 바로 그 몸을 그대로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몸이었으나 이생에 속한 죽어야 할 성질과 기타 어떤 공통적 연약성은 없었습니다. 그 몸이 실제로 그의 영혼과 연합하여(2)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3).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고(4),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셨으며(5),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정복하셨습니다(6). 그리하여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7).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8)라는 공인(9)으로 행하신 것으로, 곧 신자들을 의롭다 하시고(10), 은혜로 살리시고(11), 원수들을 대항하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12),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시키기 위함입니다(13).

(1)행2:24; 시16:10 (2)눅24:39; 롬6:9 (3)요10:18; 2:19 (4)롬1:4 (5)롬8:34 (6)히 2:14 (7)롬14:9 (8)엡1:20,22,23; 골1:18 (9)고전15:21,22 (10)롬4:25 (11)엡 2:5,6; 골2:12 (12)고전15:25-27 (13)살전4:13-18; 고전15:20,25,26; 행12:17; 18:8,10

문53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승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천에서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 자기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을 말씀하셨고(1),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2). 그리고 부활하신지 사십일 후에 우리의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머리로서(3) 원수들을 이기시고(4),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

으시고(5), 우리로 그곳을 사모하게 하시고(6),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십니다(7). 그분 자신은 지금 그곳에 계시고, 세상 끝 날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그곳에 계시실 것입니다(8).

(1)행1:2,3 (2)마28:19,20; 행1:8; 막16:15 (3)히6:20 (4)엡4:8,10 (5)행1:9-11; 시68:18 (6)골3:1,2 (7)요14:2,3 (8)행3:21

문54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 다음과 같이 높아지십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으로서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을 받으시고(1), 모든 찬만한 기쁨(2)과 영광(3)과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십니다. 또한 자신의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며, 그들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자신의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며(5),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6).

(1)빌2:9 (2)행2:28; 시16:11 (3)요17:5 (4)엡1:22; 벰전3:22 (5)엡4:11,12; 시110:1 (6)롬8:34

문55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구하십니다. 곧 그분은 지상에서 행하신 자신의 순종과 희생 제사의 공로로(1) 하늘에 계신 성부 앞에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나타나시며(2), 그 공로가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도록 자신의 뜻을 선포하십니다(3).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송사들에 답변하시며(4), 날마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양심의 평안을 주시며(5),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며(6), 그들 자신(7)과 그들의 봉사(8)를 열납 받게 하십니다.

(1)히1:3 (2)히9:12,24 (3)요17:9,20,24 (4)롬8:33-35 (5)요일2:1,2 (6)히4:15,16 (7)엡1:6 (8)벰전2:5

문56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다음과 같이 높아지십니다. 곧 악한 사람들에게 불의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당하신 그분은(1) 마지막 날에 큰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인데(2), 자기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면서 자신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3), 큰 외침과 천 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4) 다시 오셔서 세상을 의로 심판 하실 것입니다(5).

(1)행3:14,15 (2)마24:30 (3)눅9:26; 마25:31 (4)살전4:16 (5)행17:31

문57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증보를 통하여 무슨 은덕들을 획득하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증보를 통해 은혜 언약에 속한 다른 모든 은덕들 (1)과 함께 구속(2)을 획득하셨습니다.

(1)고후1:20; 롬8:32; 고전1:30 (2)히9:12

문58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은덕들에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답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은덕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1) 성령 하나님 특별 하신 사역을 통해(2) 그 유익들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1)요1:12 (2)딤후3:5,6; 요3:5,6; 16:7,8,14,15

문59 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답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사셔서 주시려 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히 적용되고 효력 있게 전달됩니다(1). 그들은 때가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2).

(1)요6:37,39; 10:15,16; 엡1:13,14; 롬8:29,30 (2)엡2:8; 뱀전1:2; 요3:36; 살후2:13

문60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성의 빛을 따라 사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까?

답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서(1)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2)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성의 빛을 따라(3), 또는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법을 따라(4)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5). 자기 몸인 교회의 유일한 구주이신(6)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7).

(1)롬10:14 (2)살후1:8,9; 엡2:12 (3)고전1:20-25 (4)요4:22; 롬9:31; 빌 3:4-10 (5)요8:24; 막16:16 (6)엡5:23 (7)행4:12; 요6:44; 14:6; 17:9

문61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까?

답 말씀을 듣고 유형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다만 무형 교회의 참된 회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1).

(1)롬9:6; 마7:21; 22:14; 요12:38-40; 마13:41,42; 롬11:7

문62 유형 교회란 무엇입니까?

답 유형 교회는 세상의 모든 시대들과 세계 모든 곳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1)과 그들의 자녀들(2)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1)고전1:1,2; 12:13; 롬15:9-13; 마28:19,20; 계7:9; 시2:8; 22:27-31; 45:17; 사59:21 (2)행2:39; 고전7:14; 롬11:16; 창17:7; 막10:13-16

문63 유형 교회의 특권들은 무엇입니까?

답 유형 교회가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것(1), 모든 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보호를 받고 보전되는 것(2), 성도의 교제와 구원의 통상적인 방편들을 누리는 것(3),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하시며(4), 자기에게 오는 자는 아무도 배척하지 않으십니다(5).

(1)사4:5,6; 딤후4:10; 고전12:28; 행13:1; 사49:14-46 (2)마16:18; 사31:4,5;

속12:2,3,4,8,9; 출3:2,3; 시115편 (3)행2:39,42 (4)시147:19,20; 롬9:4; 막
16:15,16; 행16:31; 사45:22; 계22:17 (5)요6:37

문64 무형 교회란 무엇입니까?

답 무형 교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
는 택함 받은 사람들의 전체입니다(1).

(1)요11:52; 10:16; 엡1:10,22,23

문65 무형 교회의 회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특별한 은덕들을 누립 니까?

답 무형 교회의 회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중에 그분과의 연
합과 교제를 누립니다(1).

(1)요17:21; 엡2:5,6; 요일1:3

문66 택함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갖는 연합은 무엇입니까?

답 택함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갖는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데(1),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머리이자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영적
이고 신비하게, 그러면서도 실제적이고 나눌 수 없게 결합됩니다(2). 이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이루어집니다(3).

(1)엡2:6-8 (2)고전6:17; 요10:28; 엡5:23,30 (3)고전1:9; 벧전5:10

문67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은혜의 사역입니다(1). 이것
은 택함 받은 자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
라, 오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
다(2). 이 사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받으실만한 때에 자기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여 이끄시고(3), 구원을 얻도
록 그들의 마음을 밝히시고(4),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능력으로 결단

하게 하십니다(5). 그리하여 비록 죄로 죽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게 되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6).

(1)엡1:18-20; 요5:25; 딤후1:8,9 (2)딤후3:4,5; 엡2:4-10; 롬9:11 (3)고후5:20; 6:1,2; 요6:44; 살후2:13,14 (4)행26:18; 고전2:10,12 (5)겔11:19; 36:26,27 (6)요6:45; 빌2:13; 신30:6; 엡2:5

문68 택함 받은 자들만이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습니까?

답 모든 택함 받은 자들, 오직 그들만이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습니다(1). 비록 다른 사람들이 말씀의 사역과(2)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종종 부름을 받을지라도(3), 그들은 자기들에게 제공된 은혜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불신앙에 버려둠을 당하며,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오지 못합니다(4).

(1)행13:48; 요6:39,44; 17:9 (2)마22:14 (3)마7:22; 13:20,21; 히6:4-6 (4)시81:11,12; 요12:38-40; 행28:25-27; 요6:64,65; 잠1:24-32; 시95:9-11

문69 무형 교회의 회원들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답 무형 교회의 회원들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그들의 칭의(1), 양자됨(2), 성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그 밖의 다른 모든 것에서 그들이 그분의 중보의 공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3).

(1)롬8:30 (2)엡1:5 (3)고전1:30

문70 칭의는 무엇입니까?

답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1).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자기 목전에서 그들을 의롭다고 간주하십니다(2). 칭의는 그들 안에서 이

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3),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하시고(4),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5),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대속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 (1)롬3:22,24,25; 4:5 (2)고후5:19,21; 롬3:22,24,25,27,28 (3)딤후3:5,7; 엡1:6,7
 (4)롬 3:24,25; 5:17-19; 4:6-8 (5)롬5:1; 갈2:16; 빌3:9; 롬3:25,26; 행10:43

문71 칭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고 참되고 충분하게 만족시키셨습니다(1).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셨을 만족을 한 보증인에게서 받으시되, 자기의 독생자를 그 보증인으로 예비하시고(2), 그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3). 또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그들에게 믿음 외에는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4),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5) 까닭에 그들의 칭의는 그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입니다(6).

- (1)마20:28; 벰전 1:18,19; 롬5:8-10 (2)딤후2:6; 단9:24, 롬8:32; 사 53:6,10,11,12; 히7:22 (3)고후5:21; 롬4:11; 고전1:30 (4)엡2:8; 롬3:24,25; 행16:31 (5)엡2:8 (6)엡 1:7

문72 의롭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답 의롭게 하는 믿음(1)은 성령(2)과 하나님의 말씀(3)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죄인은 자기 죄와 비참을, 그리고 자신의 상실된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과 다른 피조물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4), 복음에 약속된 진리에(5) 동의할 뿐 아니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6), 그리고 구원 얻는 길로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의롭다고 간주되고 용납되기 위해서(7)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 (1)히10:39 (2)고후4:13; 고전12:3 (3)롬10:14,17; 살후2:13 (4)요16:8,9; 행 2:37; 16:30; 엡2:1; 행4:12 (5)롬10:8-10; 엡1:13 (6)행10:43; 엡1:7 (7)갈

2:15,16; 빌3:9

문73 믿음이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 목전에서 의롭게 합니까?

답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목전에서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에 항상 수반하는 다른 은혜들이나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1). 믿음의 은혜나 믿음에서 난 그 어떤 행위가 칭의를 위해서 죄인에게 전가되기 때문도 아닙니다(2). 다만 믿음은 죄인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方便이기 때문입니다(3).

(1)롬3:5,28 (2)딤후3:5-7; 롬3:5-8 (3)빌3:9; 갈2:16; 요1:12

문74 양자 됨이란 무엇입니까?

답 양자 됨이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 때문에(1)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2).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자녀로 받으시며(3), 자기 이름을 그들에게 두시고(4), 자기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주십니다(5). 또한 그들로 자기의 부성적 돌보심과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6),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자유와 특권들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약속들을 받을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7).

(1)엡1:5; 갈4:4,5 (2)요일 3:1 (3)요1:12 (4)고후6:18; 계3:12 (5)갈4:4,6 (6)시103:13; 잠14:26; 마6:32 (7)히6:12; 롬8:17

문75 성화란 무엇입니까?

답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거룩하게 되도록 택하신 사람들은,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적용하시는(1) 성령의 강력한 활동을 통해서(2) 그 전인(全人)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됩니다(3).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들과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고(4), 그 모든 은혜를 고무시키시고 증가시키시고 강화하심으로(5), 그들이 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죽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는 살게 하십니다
(6).

(1)롬6:4-6 (2)엡1:4; 고전6:11; 살후2:13 (3)엡4:23,24 (4)행11:18; 요일3:9
(5)유20; 히6:11-12; 엡3:16-19; 골1:10-11 (6)롬6:4,6,14; 갈5:24

문76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하나님의 성령(1)과 말씀(2)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3). 이로써 죄인은 자기 죄의 위험(4)과 추함과 가증함(5)을 보고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회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참회하게 됩니다(6). 그리하여 자기 죄를 슬퍼하고 (7) 미워하여(8) 그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며(9), 새로운 순종의 모든 길에서 부단히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10).

(1)속12:10 (2)행11:18,20,21; 2:37 (3)딤후2:25; 눅24:47 (4)겔18:30,32; 눅15:17,18; 호2:6,7 (5)겔36:31; 사30:22 (6)눅22:61; 속12:10; 마26:75 (7)렘31:18,19 (8)고후7:11; 행2:37; 시130:3-7; 욕2:12,13 (9)행26:18; 겔14:6; 왕상8:47-48 (10)시119:6,59,128; 눅1:6; 롬6:17,18; 눅19:8; 왕하23:25

문77 칭의와 성화는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답 성화는 칭의와 분리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지만(1), 그 둘은 서로 다릅니다. 칭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지만(2), 성화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은혜를 주입하시고 그 은혜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십니다(3). 전자에서는 죄가 용서되는 데 비하여(4), 후자에서는 죄가 억제됩니다(5). 그리고 칭의는 모든 신자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진노에서 자유하게 하되, 이생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정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6). 하지만 성화는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7). 이생에서는 아무도 완전하지 않고(8), 다만 완전을 향해서 자라 갈 뿐입니다(9).

(1)고전6:11; 1:30; 롬8:30 (2)롬4:6,8; 빌3:8-9; 고후5:21 (3)겔36:27 (4)롬 3:24,25 (5)롬6:6,14 (6)롬8:1,33,34 (7)고전3:1,2; 막4:8,28 요일2:12-14; 히 5:12-14 (8)요일 1:8,10 (9)고후7:1; 빌3:12-14; 엡4:11-15

문78 신자들의 성화의 불완전함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답 신자들의 성화의 불완전함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머물러 있는 죄의 잔재들과 영을 거스리는 욕의 끊임없는 정욕에서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신자들은 자주 시험에 들어 좌절하고, 많은 죄에 빠지며(1), 그들의 모든 영적인 봉사에 방해를 받습니다(2). 그래서 신자들이 행한 가장 좋은 일들도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불완전하고 불결합니다(3).

(1)롬7:18,23; 갈2:11-12 (2)갈5:17; 히12:1 (3)출28:38; 사64:6

문79 참 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함과 그들을 사로잡는 많은 유혹들과 죄로 인해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있습니까?

답 참 신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타락하거나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고(1),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2). 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3), 신자들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4), 그리스도와의 분리될 수 없는 연합(5),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중보기도(6),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하나님의 씨(7) 때문입니다.

(1)렘32:40; 요10:28 (2)벧전1:5; 빌1:6 (3)렘31:3; 요13:1 (4)딤후2:19-21; 히 6:15; 13:20,21; 삼하23:5 (5)고전1:8,9 (6)히7:25; 눅22:32 (7)요일3:9; 2:27

문80 참 신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보존되리라는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답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하는 (1) 사람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 상태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보존되리라는 것을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2).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함에 근거한 믿음, 생명의 약속들을 주신 은혜들을 자신들 안에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3),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신들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성령 때문입니다(4).

(1)요일2:3 (2)요일5:13; 딤후1:12 (3)고전2:12; 요일3:14,18,19,21,24; 4:13,16 (4)롬8:16

문81 모든 참 신자들은 현재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는 것과 장차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항상 확신합니까?

답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1) 참 신자들도 그것을 얻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고(2), 확신을 얻은 후에도 여러 가지 질병, 죄, 시험, 탈선으로 인하여 약해지고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3).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참 신자들은 결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4).

(1)엡1:13 (2)사1:10; 시88편 (3)시77:1-12; 시51:8,12; 31:22; 22:1 (4)요일 3:9; 롬13:15; 시73:15,23; 사54:7-10

문82 무형 교회의 회원들이 영광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답 무형 교회의 회원들이 영광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이생(1)과 죽음 직후에 누리는 것이지만(2), 마침내 부활과 심판의 날에(3) 완성되는 것입니다.

(1)고후 3:18 (2)눅 23:43 (3)요일 3:2; 살전 4:17; 계 22:3-5

문83 무형 교회의 회원들이 이생에서 영광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답 무형 교회의 회원들은 이생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의 첫 열매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충만히 소유하고 계시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1). 그리고 그 보증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2),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영광의 소망을 누립니다(3). 반면에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진노에 대한 의식, 양심의 공포, 심판에 대한 두려운 기대가 사후에 그들이 당할 고통의 시작입니다(4).

(1)엡2:5,6 (2)롬5:5; 고후1:22 (3)롬5:1; 14:7 (4)창4:13; 마27:3-5; 히10:27; 롬2:9; 막9:44

문84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까?

답 죽음은 죄의 삯으로 오는 것입니다(1).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 데(2),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3).

(1)롬6:23 (2)히9:27 (3)롬5:12

문85 죽음이 죄의 삯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들은 왜 실제적인 죽음에서 구출을 받지 못합니까?

답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 자체에서 구출될 것이며, 죽을 때에도 죽음의 쏘는 것과 저주에서 구출됩니다(1). 그러므로 그들이 죽더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2).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며(3), 그들이 그 후에 들어가는 영광중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층 더 깊은 교제를 갖게 하십니다(4).

(1)고전15:26,55,56,57; 히2:15 (2)사57:1,2; 왕하22:20 (3)눅16:25; 계14:13; 고후 5:1-8; 엡5:27 (4)눅23:43; 빌1:23

문86 무형 교회의 회원들이 죽음 직후에 영광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답 무형 교회의 회원들이 죽음 직후에 영광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때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1), 가장 높은 하늘 안으로 받아들여집니다(2).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3), 자신들의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립니다(4). 그들의

몸은 죽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계속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며(5),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결합할 때까지 침상에 있는 것처럼 무덤 속에서 쉽니다(6). 그러나 악인의 영혼들은 죽을 때에 지옥에 던져지고, 거기서 고통과 깊은 흑암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7). 그들의 몸은 부활과 심판의 큰 날까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덤에 갇혀 있게 됩니다(8).

(1)히12:23 (2)고후5:1,6,8; 행3:21; 엡4:10 (3)요일3:2; 고전13:12 (4)롬8:23; 시16:9 (5)살전4:14 (6)사57:2 (7)눅16:23,24 (8)눅16:23,24; 행1:25; 유6,7

문87 부활에 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는 마지막 날, 이미 죽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일반적 부활이 있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1). 그때에 살아 남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 죽은 자들의 바로 그 몸이 그때에는 그들의 영혼들과 영원히 다시 합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입니다(2).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덕택으로 능력 중에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3). 그러나 악인의 몸은 진노하시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치욕 중에 일으킴을 받게 될 것입니다(4).

(1)행24:15 (2)고전15:51-53; 살전4:15-17; 요5:28,29 (3)고전15:21-23, 42-44; 빌3:21 (4)요5:28,29; 단12:2; 마25:33

문88 부활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답 부활 직후에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대한 전체적인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1).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깨어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2).

(1)벧후2:4; 유6,7,14,15; 마25:46 (2)마24:36,42,44; 눅21:35,36

문89 심판 날에 악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답 심판 날에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세워질 것이고(1), 확실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의 충분한 확증에 근거하여(2) 두려우면서도 공평한 정의의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3). 그리고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로부터 쫓겨나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거기서 몸과 영혼이 모두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4).

(1)마25:33 (2)롬2:15,16; 마22:12; 눅19:22 (3)마25:41-43 (4)마25:46; 눅16:26; 막9:43,44; 14:21; 살후1:8,9

문90 심판 날에 의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답 심판 날에 의인들은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 그분의 오른편에 세워 질 것이고(1), 거기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선언을 받으며(2),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것입니다(3). 의인들은 하늘로 영접되어(4) 거기서 모든 죄와 비참에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방될 것입니다(5).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서(6), 특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영원토록 대면하고 누리면서(7),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찬탄하게 될 것이며(8), 몸과 영혼이 모두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형 교회의 회원들이 부활과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누릴 완전하고 찬만한 교제입니다.

(1)살전4:17 (2)마25:33; 10:32 (3)고전6:2,3 (4)마25:34,46 (5)엡5:27; 계7:17; 14:13 (6)히12:22,23 (7)요일3:2; 고전13:12; 살전4:17; 계22:3-5 (8)시16:11; 고전2:9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바가 무엇인지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제 다음으로 성경이 요구하는바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문91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1).

(1)롬12:1,2; 미6:8; 삼상15:22

문92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무죄의 상태에 있는 아담과 그의 안에 있는 전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법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과 도덕법이었습니다(1).

(1)창1:26,27; 롬2:14,15; 10:5; 창2:17

문93 도덕법이란 무엇입니까?

답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지시하고 요구되, 영혼과 몸을 가진 전인의 형태와 성향으로(1)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거룩함과 의의 모든 의무들을 수행하도록(2) 요구합니다. 이 도덕법은 그것을 지키면 생명을 약속하지만, 위반하면 죽음으로 위협합니다(3).

(1)신5:1-3,31,33; 눅10:26,27; 갈3:10; 살전5:23 (2)눅1:75; 행24:16 (3)롬10:5; 갈3:10,12

문94 타락한 후에도 도덕법은 사람에게 유용합니까?

답 타락한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으로 의와 생명이 이를 수는 없지만(1),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중생한 사람이거나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2).

(1)롬8:3; 갈2:16 (2)딤후1:8; 갈3:19,24

문95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

답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유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1),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 행해야 할 의무(2)를 알려주며,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음과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며(3), 자신들의 죄와 비참을 알아 겸손하게 하며(4), 이로써 그리스도(5)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6)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명백히 보도록 도와줍니다.

(1)레11:44,45; 20:7,8; 롬7:12 (2)미6:8; 약2:10,11 (3)시19:11,12; 롬3:20:7;7,9,13 (4)롬3:9,23 (5)갈3:21,22 (6)롬10:4

문96 도덕법은 특별히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

답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고(1)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에(2) 그들에게 유용합니다. 또한 그들이 계속 죄의 상태와 죄의 길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그들로 핑계할 수 없게 하며(3), 죄의 저주 아래 있게 합니다(4).

(1)딤후1:9,10 (2)갈3:24 (3)롬1:20; 2:15 (4)갈3:10

문97 도덕법은 특별히 중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

답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 언약인 도덕법에서 해방이 되었기에(1) 그것으로 의롭다 함을 받거나(2) 정죄 받지 않습니다(3). 그러나 모든 사람들과 그들에게 공통된 일반적인 유용함들 외에도, 도덕법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그들에게 특별히 유용합니다. 도덕법은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법의 저주를 당하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4). 그래서 도덕법은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이 감사하도록 자극할 뿐 아니라(5), 자신들의 순종의 법칙인 도덕법을 매우 신중하게 따르는 것을 통해 동일한 감사를 표현하도록 합니다(6).

(1)롬6:14; 7:4,6; 갈4:4,5 (2)롬3:20 (3)갈5:23; 롬8:1 (4)롬7:24,25; 갈3:13,14; 롬8:3,4 (5)눅1:68,69,74,75; 골1:12,14 (6)롬7:22; 12:2; 딤후2:11-14

문98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답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두 돌판에 친히 써 주신 것으로(1),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여섯 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2).

(1)마19:17-19; 신10:4; 출34:1-4 (2)마22:37-40

문99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칙들을 유념해야 합니까?

답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법칙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1. 율법은 완전한 것으로 누구나 다 전인적으로 그 의를 온전히 따르고, 영원토록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율법은 모든 의무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요구하며, 모든 죄의 극히 작은 것도 금한다(1).
2. 율법은 신령하며, 말과 행위와 태도뿐만 아니라 이해력과 의지와 감정, 그리고 영혼의 모든 다른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2).
3. 여러 가지 점에서 동일한 것이 몇 계명들 중에 요구되거나 금지된다(3).
4. 어떤 의무를 명하는 곳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하며(4), 어떤 죄를 금하는 곳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한다(5). 이와 같이 어떤 약속이 덧붙여진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고(6), 어떤 경고가 덧붙여진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7).
5.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언제라도 해서는 안 되며(8),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항상 우리의 의무이다(9). 그러나 모든 특정한 의무를 언제나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10).
6. 한 가지 죄나 의무 아래 같은 종류의 죄를 모두 금하거나 같은 종류의 의무를 모두 명한다. 거기에는 그 모든 원인, 방편, 기회, 모양, 그리고 그것에 이르는 자극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11).
7. 우리의 지위를 따라 우리에게 금하거나 명령된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그 지위와 의무에 따라 이를 피하거나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위를 따라 노

력할 의무가 있다(12).

8. 다른 사람들에게 명해진 것에는 우리의 지위와 소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13), 다른 사람들에게 금한 것에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가 있다(14).

(1)시19:7; 약2:10; 마5:21-48 (2)롬7:14; 신6:5; 참조. 마22:37-39 (3)골3:5; 암8:5; 잠1:19; 딤펢전6:10 (4)사 58:13; 신 6:13; 참조. 마4:9-10; 15:4-6 (5)마:21-14; 엡4:28 (6)출20:12; 참조. 잠30:17 (7)렘18:7- (8)8; 출20:7; 참조. 시15:1,4,5; 24:4-5 (8)욥13:7-8; 롬3:8; 욥36:21; 히11:25 (9)신4:8-9 (10)마 12:7 (11)마5:21,22,27,28; 15:4-6; 히10:24-25; 살전5:22; 유23; 갈5:26; 골 3:21 (12)출20:10; 레19:17; 창18:19; 수24:15; 신6:6-7 (13)고후1:24 (14)딤펢전 5:22; 엡5:11

문100 십계명에서 우리가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는 십계명에서 서문, 계명들 자체의 내용, 계명들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그 중 어떤 것들에 첨부된 몇 가지 이유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101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서문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1).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즉 영원하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2).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소유하시며(3), 자기의 모든 말씀(4)과 하시는 일들(5)에서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옛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고(6),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속박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7).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 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8).

(1)출20:2 (2)사44:6 (3)출3:14 (4)출6:3 (5)행17:24,28 (6)창17:7; 롬3:29 (7)

눅1:74,75 (8)벧전1:15-18; 레18:30; 19:37

문102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네 계명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네 계명의 요점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1).

(1)신6:5; 마22:37; 막12:30; 눅10:27

문103 제일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일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하신 것입니다(1).

(1)출20:3

문104 제일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일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1), 따라서 그분만을 생각하고(2), 목상하고(3), 기억하고(4), 지극히 높이고(5), 존경하고(6), 찬양하고(7), 택하고(8), 사랑하고(9), 갈망하고(10), 경외함으로(11) 그분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12). 또한 하나님을 믿고(13), 신뢰하고(14), 바라고(15), 기뻐하고(16), 즐거워하고(17), 그분을 위해 열심을 품고(18), 그분을 부르고,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19), 전인적으로 그분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20), 모든 일에 조심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21), 무슨 일든지 그분을 노엽게 하였을 때는 슬퍼하며(22),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23).

(1)대상28:9; 신26:17; 사43:10; 렘14:22 (2)말3:16 (3)시63:6 (4)전12:1 (5)시71:19 (6)말1:6 (7)사45:23 (8)수24:15,22 (9)신6:5 (10)시73:25 (11)사8:13 (12)시95:6,7; 마4:10; 시29:2 (13)출14:31 (14)사26:4 (15)시130:7 (16)시

37:4 (17)시32:11 (18)롬12:11 (19)빌4:6 (20)렘7:23: 약4:7 (21)요일3:22
(22)렘31:18: 시119:136 (23)미6:8

문105 제일 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일 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1), 참 하나님과 함께, 혹은 그분 대신에, 하나 혹은 여러 신들을 두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2),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것(3), 이 계명이 요구하는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4), 하나님에 대한 무지(5), 망각(6), 오해(7), 그릇된 견해(8), 그분에 대한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9), 그분의 비밀들을 불손한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것(10), 모든 신성 모독(11),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12), 자기 사랑(13), 자아 추구(14), 우리 마음과 의지, 혹은 정서를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다른 것들에 두고,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15), 헛된 맹신(16), 불신앙(17), 이단(18), 그릇된 신앙(19), 신뢰하지 않는 것(20), 절망(21), 완강함(22), 심판에 대한 무감각(23), 완악한 마음(24), 교만(25), 뻔뻔스러움(26), 육적 안전(27),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28),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29), 인간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30), 육적 즐거움과 기쁨(31),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32), 미지근함(33),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무감각(34),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35), 성자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 경배를 드리는 것(36), 마귀와 계약을 맺고 의논하는 것(37), 그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38),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主)로 삼는 것(39),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40),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41), 하나님의 경륜들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참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임하는 재난들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42), 우리의 선함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할 수 있는 선행에 대한 찬사를 요행(43)이나 우상들(44)이나 우리 자신(45)이나, 혹은 다

른 어떤 피조물(46)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1)시14:1; 엡2:12 (2)렘2:27-28; 참조. 살전1:9 (3)시81:11 (4)사43:22-24
(5)렘4:22; 호 4:1,6 (6)시50:22; 렘2:32 (7)행17:23,29 (8)사40:18 (9)시50:21
(10)신29:29 (11)딤후1:16; 히12:16 (12)롬1:30 (13)딤후3:2 (14)빌2:21 (15)요
일2:15,16; 삼상2:29; 골3:2,5 (16)요일4:1 (17)히3:12 (18)갈5:20; 딤후3:10
(19)행26:9 (20)시78:22 (21)창4:13; 37:11 (22)렘5:3 (23)사42:25 (24)롬2:5
(25)렘13:15 (26)시19:13 (27)슌1:12 (28)마4:7 (29)롬3:8 (30)렘17:5 (31)딤후
후3:4; (32)갈4:17; 요16:2; 롬10:2; 눅9:54,55 (33)계3:16 (34)계3:1 (35)겔
14:5; 사1:4,5 (36)롬10:13,14; 호4:12; 행10:25,26; 계19:10; 마4:10; 골
2:18; 롬1:25 (37)레20:6; 삼상28:7,11; 대상10:13,14 (38)행5:3 (39)고후
1:24; 마23:9 (40)신32:15; 삼하12:9; 잠13:13 (41)행7:51; 엡4:30 (42)시
73:2,3,13-15,22; 욥1:22 (43)삼상6:7-9 (44)단5:23 (45)신8:17; 단4:30 (46)
합1:16

문106 제일 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 제일 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또는 "내 앞에"라는 말은, 만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신을 두는 죄를 특별히 유의하시고,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이라는 말은 그러한 죄를 범하지 못 하게 하며, 다른 신을 두는 것을 가장 뻔뻔스러운 도발행위가 되게 하고(1),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목전에서 하도록 설득하는(2) 논증이 됩니다.

(1)겔8:5,6-18; 시44:20,21 (2)대상28:9

문107 제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

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1)는 것입니다.

(1)출20:4-6

문108 제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으로 제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수용하고, 준수하며, 순전하고 흠없이 지키는 것입니다(1). 이런 예배와 규례들의 구체적인 예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2), 말씀을 읽고 전파하고 듣는 것(3), 성례들을 거행하고 받는 것(4), 교회 정치와 권징(5), 직무와 그것의 유지(6), 종교적 금식(7),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8),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등입니다(9). 또 다른 의무는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것(10), 각자의 지위와 소명을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숭배의 기념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11).

(1)신32:46-47; 마28:20; 행2:42; 딤후6:13,14 (2)빌4:6; 엡5:20 (3)신17:18-19; 딤후 4:2; 약1:21-22; 행10:33 (4)마28:19; 고전11:23-30 (5)마18:15-17; 16:19; 고전5장; 12:28 (6)엡4:11,12; 딤후5:17,18; 고전9:1-15 (7)율2:12,13; 고전7:5 (8)신6:13 (9)사 19:21; 시76:11 (10)행17:16,17; 시16:4 (11)신7:5; 사30:22

문109 제이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이 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1), 논의하고(2), 명하고(3), 사용하고(4),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5)과,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6)것과, 우리 마음 내적으로 혹은 외적으로 삼위 하나님 모두가 삼위 중의 한 분을,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것의 형상이나 모양을 따라 만드는 것(7)과, 형상 자체를 예배하거나 형상 안에서 혹은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8)과, 거짓 신들의 형상을 만들고(9), 그들을 숭배하거나 그들

에게 속한 것을 섬기는 것(10)과, 고대의 제도(11)나 풍습(12)이나 경건(13)이나 좋은 의도라는 미명하에, 혹은 어떤 다른 구실로라도(14)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 취한 것이든지(15), 혹은 다른 사람들의 전통으로부터 받은 것이든지 간에(16), 하나님의 예배에 무엇인가를 추가하고 제하여(17) 그 예배를 오염시키는(18) 모든 미신적 고안들(19)과, 성직 매매(20)와, 신성 모독(21) 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한 모든 태만(22), 경멸(23), 방해(24) 반대(25) 등입니다.

(1)민15:39 (2)신13:6-8 (3)호5:11: 미6:16 (4)왕상11:33 (5)신12:30-32 (6)신13:6-12: 속13:2,3; 계2:2,14,15,20; 17:12,16,17 (7)신4:15-19; 행17:29; 롬1:21,22,23,25 (8)단3:18; 갈4:8 (9)출32:4 (10)왕상18:26,28; 사65:11 (11)벧전1:18 (12)렘44:17 (13)사65:3-5; 갈1:13,14 (14)삼상13:11,12; 15:21 (15)시106:19 (16)마15:9 (17)신4:2 (18)말1:7,8,14 (19)행17:22; 골2:21-23 (20)행8:18 (21)롬2:22; 말 3:8 (22)출4:24-26 (23)마22:5; 말1:7,13 (24)마23:13 (25)행13:44,45; 살전2:15,16

문110 제이 계명을 더 강화하려고 그것에 첨가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이 계명을 더 강화하려고 그것에 첨가한 이유들은 다음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1). 이 이유들로 제시된 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합당한 태도 외에도(2), 자신께 드러지는 예배에 대한 그분의 뜨거운 열심(3)과 영적인 간음(4)인 모든 거짓된 예배에 대한 그분의 보복적인 분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로 간주하셔서 여러 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위협하시면서도(5), 그것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로 여기셔서 수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 하십니다(6).

(1)출20:5,6 (2)시45:11; 계15:3,4 (3)출34:13,14 (4)고전10:20-22; 렘 7:18-20; 겔16:26,27; 신32:16-20 (5)호2:2-4 (6)신5:29

문111 제삼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삼 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1)는 것입니다.

(1)출20:7; 신 5:11

문112 제삼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삼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1), 규례(2), 말씀(3), 성례(4), 기도(5), 맹세(6), 서약(7), 제비(8), 그의 사역(9)과, 그 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어떤 방편들이라도, 생각(10)과 묵상(11)과 말(12)과 글(13)에서나 거룩한 고백(14)과 책임 있는 대화(15)로 하나님의 영광(16)과 우리 자신(17)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18),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마6:9; 신28:58; 시29:2; 68:4; 계15:3,4 (2)말1:14; 전5:1 (3)시138:2 (4)고전11:24, 25,28,29 (5)딤후2:8 (6)렘4:2 (7)시76:11; 전5:2,4-6 (8)행 1:24,26 (9)욥36:24 (10)말3:16 (11)시8:1,3,4,9 (12)골3:17; 시105:2,5 (13)시 102:18 (14)벧전3:15; 미4:5 (15)빌1:27 (16)고전10:31 (17)렘32:39 (18)벧전 2:12

문113 제삼 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삼 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명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1), 그 이름을 무지하게(2), 헛되이(3), 불경건하게, 속되게(4), 미신적으로(5), 혹은 악하게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하나님의 칭호, 속성(6), 규례(7), 사역(8)을 모독(9)과 위증(10)에 사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죄악 된 저주(11), 맹세(12), 서원(13), 제비(14)에

사용하는 것,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위반하고(15),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들을 지키는 것(16),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17) 항변하며(18),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19),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것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20) 잘못 적용하고(21), 혹은 어떤 방식으로 왜곡하여(22) 모독적인 농담(23)이나 별나고 무익한 질문들이나 헛된 말다툼이나 거짓 교리를 지지하는 일에 악용하는 것(24),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내포되어 있는 무엇이나 마술(25), 혹은 죄악 된 정욕과 행동에 남용하는 것(26),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들을 훼방하고(27) 경멸하고(28) 욕하거나(29) 교활하게 반대하는 것(30), 외식과 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31),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32), 적합하지 않고(33), 지혜롭지 못하고(34), 열매가 없고(35), 무례한 행동을 하여(36) 그 이름에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하는 것(37)입니다.

(1)말2:2 (2)행17:23 (3)잠30:9 (4)말1:6,7,12; 3:14 (5)삼상4:3-5; 렘7:4,9,10,14,31; 골2:20-22 (6)왕하18:30,35; 출5:2; 시139:20 (7)시50:16,17 (8)사5:12 (9)왕하18:30,35; 출5:2 (10)속5:4; 8:17 (11)삼상17:43; 삼하16:5 (12)렘5:7; 23:10 (13)신23:18; 행23:12,14 (14)에3:7; 9:24; 시22:18 (15)시24:4; 겔17:16,18,19 (16)막6:26; 삼상25:22,32,33,34 (17)전8:11; 9:3; 시39편 (18)롬9:14,19,20 (19)롬3:5,7; 6:1-2 (20)마5:21-48 (21)겔13:22 (22)벧3:16; 마22:23-33 (23)사22:13; 렘23:34,36,38 (24)딤후1:4,6,7; 6:4,5,20; 딤후2:14; 딤후3:9 (25)신18:10-14; 행19:13 (26)딤후4:3,4; 롬13:13,14; 왕상21:9,10; 유4 (27)행 13:45; 요일3:12 (28)시1:1; 벧후3:3 (29)벧전4:4 (30)행 13:45,46,50; 4:18; 19:9; 살전2:16; 히10:29 (31)딤후3:5; 마23:14; 6:1,2,5,16 (32)막8:38 (33)시73:14,15 (34)고전6:5,6; 엡 5:15-17 (35)사5:4; 벧후1:8,9 (36)롬2:23,24 (37)갈3:1,3; 히6:6

문114 제삼 계명에 어떤 이유들이 첨가되어 있습니까?

답 제삼 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1)는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2). 특히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이, 사람들의 비난과 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3),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사면하거나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이 자신의 의로운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4).

(1)출20:7 (2)레19:12 (3)삼상2:12,17,22,24; 참조. 삼상3:3 (4)렘36:21-23; 신28:58,59; 스후5:2-4

문115 제사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사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1)하신 것입니다.

(1)출20:8-11=신5:13-15

문116 제사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사 계명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으로 정하신 날, 특별히 이레 중 온 하루를 하나님께 성결하게 하거나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곱째 날이었으나, 그 후부터는 매주 첫 날이 되어 세상 끝 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안식일이요(1), 신약에서는 주일(the Lord's day)이라고 합니다(2).

(1)신5:12-14; 창2:2,3; 고전16:1,2; 행20:7; 마5:17,18; 사56:2,4,6,7 (2)계 1:10

문117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까?

답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하려면 언제나 죄악된 일들 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들과 오락을 그만두고(1) 온 종일 거룩하게 휴식을 취하되(2),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3), 공사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하루를 보내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4).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하고, 세상일을 미리 부지런하고 절제 있게 정리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들을 더 자유롭고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5).

(1)출16:25-28; 느13:15-22; 렘17:21,22 (2)출20:8,10 (3)마12:1-13 (4)사 58:13; 눅4:16; 행20:7; 고전16:1,2; 시92편; 사66:23; 레23:3 (5)출20:8; 눅 23:54,56; 출16:22,25,26,29; 느13:19

문118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특별히 가정의 가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주어 집니까?

답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특별히 가정의 가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 자신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통솔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게 해야 하기 때문이며, 그들은 자신의 일로 아랫사람들이 안식일이 지키지 못하게 종종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

(1)출20:10; 수24:15; 느13:15,17; 렘17:20-22; 출23:12

문119 제사 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사 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요구된 의무들을 누락시키는 모든 것(1), 그 의무들을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이행하는 것과 그 의무들에 대해 싫증을 느끼는 것(2), 게으름과 죄악된 일을 행함으로(3), 또 세속적인 일이나 오락들에 대한 불필요한 일과 말과 생각들로 그 날을 모독하는 것입니다(4).

(1)겔22:26 (2)행20:7,9; 겔33:30-32; 암8:5; 말1:13 (3)겔23:38 (4)렘

문120 제사 계명을 더욱 강화하려고 그것에 첨가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 사 계명을 더욱 강화하려고 그것에 첨가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1)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레 중 옛새를 우리 자신의 일들을 위하여 허락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는 하루만을 남겨 두신 이 계명의 공평성입니다. 둘째,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2)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날에 대해서 특별한 예의를 갖출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셋째, "옛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신" 하나님의 모범입니다. 넷째,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셔서 이 날을 자기를 예배하는 날로 성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의 방편이 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3).

(1)출20:9 (2)출20:10 (3)출20:11

문121 왜 제사 계명은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합니까?

답 제 사 계명이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1) 한편으로는 안식일을 기억함에서 오는 큰 유익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날을 잘 지키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2), 그 날을 지킴으로써 다른 모든 계명들을 더 잘 지키게 되며(3), 종교의 요약을 담고 있는 창조와 구원이라는 두 가지 큰 은덕들을 계속 감사히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4).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날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5). 이는 우리 안에 그 날에 대한 본성의 빛이 더 약한 반면에(6), 그 계명은 우리가 다른 때에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본성의 자유를 제한하고(7), 안식일이 이레 중에 단 한번만 오고 그 사이에 많은 세상적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나 자주 우리의 마음을 그 날을 준비하거나 거룩하

게 하려는 생각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8). 더불어 사단은 그의 도구들을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그 날의 영광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기억조차 박멸하여 온갖 불신과 불경을 조장하려 하기 때문입니다(9).

(1)출20:8 (2)출16:23; 눅23:54,56; 막15:42; 느13:19 (3)겔20:12,19,20 (4)창2:2,3; 계1:10 (5)겔22:26 (6)느9:14 (7)출34:21 (8)신5:14,15; 암8:5 (9)렘17:21-23; 느13:15-23

문122 사람에게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여섯 계명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에게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여섯 계명의 요약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며(1), 남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2).

(1)마22:39 (2)마7:12

문123 제오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오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것입니다(1).

(1)출20:12

문124 제오 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답 제 오 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1) 연령과(2)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3) 국가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1)잠23:22,25; 엡6:1,2 (2)딤후5:1,2 (3)왕하2:12; 13:14; 갈4:19

문125 왜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칭합니까?

답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칭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행할 때에, 어떤 종류의 관계에 있든지 부모처럼 그들에

게 사랑과 부드러움을 나타내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1).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들을 수행할 때, 자기 부모에게 하듯이 더 큰 자발성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2).

(1)엡6:4; 고후12:14; 살전2:7,8 민11:11,12 (2)고전4:14-16.

문126 제오 계명의 일반적인 범위는 무엇입니까?

답 제오 계명의 일반적인 범위는 우리가 여러 인간관계들에서 아랫사람, 윗사람, 또는 동등한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지고 있는 의무들을 행하는 것입니다(1).

(1)엡5:21; 벨전2:17; 롬12:10.

문127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어떻게 존경해야 합니까?

답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마음과(1) 말과(2) 행동에(3) 있어서 마땅한 경의로 존경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로(4), 그들의 덕과 은혜를 본받음으로(5), 그들의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즐거이 순종하고(6), 그들의 교정에 기꺼이 순복함으로(7), 그들의 다양한 계급과 지위의 성격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며(8), 그것들을 변호하고(9) 지지하며(10),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랑으로 덮어줌으로(11)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을 존경해야 합니다(12).

(1)말1:6; 레19:3 (2)벨전3:6 (3)레19:32; 왕상2:19 (4)딤후1:1,2 (5)히13:7; 빌3:17 (6)엡6:1,2,5-7; 벨전2:13,14; 롬13:1-5; 히13:17; 잠4:4; 23:22; 출18:19,24 (7)히12:9 (8)딤후 2:9,10 (9)삼상26:15,16; 삼하18:3 (10)마22:21; 롬13:6,7; 딤후5:17,18; 갈6:6; 창45:11; 47:12 (11)벨전2:18; 잠23:22; 창9:23 (12)시127:3-5; 잠31:23

문128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답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는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함과(1), 그들의 정당한 권고와(2) 명령과 교정도 불구하고(3) 그들의 인격

과(4) 지위를(5) 시기하고 경멸하며(6) 거스르는 것입니다(7). 또한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과(8),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에 치욕과 불명예가 되는 모든 완고하고 불미스러운 태도들입니다(9).

(1)마15:4-6 (2)삼상2:25 (3)신21:18-21 (4)출21:15 (5)삼상10:27 (6)삼상8:7; 사3:5 (7)삼하15:1-12 (8)잠30:11,17 (9)잠19:26

문129 아랫사람들에 대한 윗사람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윗사람들의 의무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와 그들이 서 있는 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1)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2) 축복할 뿐만 아니라(3), 그들을 가르치고(4) 권고하며 훈계하는 것입니다(5). 또한 잘하는 자들에게는 격려하고 칭찬하며(6) 상주는 것과(7), 잘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하고 책망하며 징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8)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위해 영육 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9). 그리고 신중하며 지혜롭고 거룩하며 모범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를 영예롭게 함으로써(10),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11).

(1)골3:19, 딤후2:4 (2)삼상12:23; 욥1:5 (3)왕상8:55,56; 히7:7; 창49:28 (4)신 6:6,7 (5)엡6:4 (6)롬13:3 (7)벧전2:14 (8)롬13:3,4; 잠29:15; 벧전2:14 (9)엡 6:4; 딤후5:8; 욥29:12-17; 사1:10,17 (10)딤후4:12; 딤후2:3-5; 왕상3:28 (11) 딤후2:15.

문130 윗사람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답 윗사람들의 죄는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1), 그들 자신과(2) 그들의 영광(3), 안일, 이익, 또는 기쁨을(4)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일이나(5) 아랫사람의 힘에 부치는 일을 하라고 명하며 (6), 악한 일을 권하고(7) 격려하며(8) 좋아하게 하고(9), 선한 일을 만류하고 저지하며 부끄러워하게 하는 것입니다(10).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하며 (11), 그들을 오류와 유혹과 위협에 부주의하게 노출시키고 방치하며(12), 그들을 노하도록 격동시키는 것입니다(13). 또는 어떤 형태로든 그들을 욕

되게 하거나(14), 부당하고 경솔하며 가혹하고 부주의한 행위로 그들의 권위를 깎아 내리는 일입니다(15).

(1)겔34:2-4 (2)빌2:21 (3)요5:44, 7:18 (4)사56:10,11; 신17:17 (5)단3:4-6; 행4:17,18 (6)출5:10-18; 마23:2,4 (7)마14:8; 막6:24 (8)삼하13:28 (9)삼상3:13 (10)요7:46-49; 출5:17 (11)벧전2:19-20; 신25:3 (12)레19:29; 창38:11,26; 행18:17 (13)엡6:4 (14)창9:21 (15)왕상1:6; 12:13-16; 삼상2:29-31

문131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의무는 서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1) 서로를 먼저 존중하며(2) 서로에게 있는 은사와 진보를 자신의 것인 양 기뻐하는 것입니다(3).

(1)벧전2:17 (2)롬12:10 (3)롬12:15,16; 빌2:3,4

문132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죄는 무엇입니까?

답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1), 서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며(2) 서로의 은사를 시기하고(3), 피차 진보와 번영을 속상해 하며(4), 서로 남보다 우월함을 찬탈하려는 것입니다(5).

(1)롬13:8 (2)딤후3:3 (3)행7:9; 갈5:26 (4)민12:2; 예6:12,13 (5)눅22:24; 요삼1:9.

문133 제오 계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제오 계명에 추가된 이유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1) 말씀에 들어 있는데, 이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장수와 번영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해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2).

(1)출20:12 (2)신5:16; 엡6:2,3

문134 제육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육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1).

(1)출20:13.

문135 제육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육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과(1)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세심한 연구와 올바른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2). 그것은 누구의 생명이든 부당하게 앗아 가려는 모든 생각과 의도를 대적하고(3), 그런 모든 걱정을 억누르고(4), 그런 모든 기회와(5) 유희과(6) 행위를(7) 피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폭력에 대항하여 정당하게 방어하며,(8)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내로 견디며(9),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10), 영혼을 즐겁게 하며(11), 식사와 음료와(12), 약과(13), 수면과 노동과 오락(14)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생각(15), 사랑(16), 긍휼(17), 온유, 부드러움, 친절과(18), 온순하고(19) 부드럽고 예의바른 말과 행동(20), 관용과 화해하려는 자세, 해를 입힌 것에 대한 관용과 용서(21), 악을 선으로 갚음과(22),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도우며 무고한 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23).

(1)엡5:28,29 (2)왕상18:4 (3)렘26:15,16; 행23:12,16,17,21,27 (4)엡4:26,27 (5)삼하2:22;신22:8 (6)삼상25:32,33; 잠1:10,11,15,16 (7)삼상24:12; 26:9-11 (8)창37:21,22; 시82:4; 잠24:11,12; 렘38:7-13; 삼상14:45 (9)약5:7-11; 삼하16:10-12 (10)살전4:11; 시37:8-11 (11)잠17:22 (12)잠25:16,27; 전10:17 (13)사 38:21 (14)전3:4 (15)삼상19:4,5; 22:13,14 (16)롬13:10 (17)눅10:33,34 (18)골3:12,13 (19)약3:17 (20)벧전3:8-11; 잠15:1; 삿8:1-3 (21)마5:24; 엡4:2,32 (22)롬12:17-21 (23)살전5:14; 욥31:19,20; 마25:35,36; 잠31:8,9

문136 제육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육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공적인 정의의 시행이나(1) 정당한 전쟁(2), 또는 정당방위 등의 경우를(3) 제외하고 우리 자신이나(4) 다른 사람들의 생

명을 앗아가는 모든 행동입니다(5). 또 생명을 보존하는 합법적이고도 필수적인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입니다(6). 악한 분노(7), 증오심(8), 시기(9), 복수심과(10), 모든 과도한 격정과(11)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모든 염려와(12), 식사와 음료의 사용과(13) 노동과(14) 오락의(15) 무절제함입니다. 격동하게 하는 말(16), 억압(17), 다툼(18), 구타, 상해와(19)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20).

(1)민35:31,33 (2)렘48:10; 신20:5-20 (3)출22:2,3 (4)행16:28 (5)창9:6 (6)마25:42,43; 약2:15,16 (7)마5:22 (8)요일3:15; 레19:17 (9)잠14:30 (10)롬12:19 (11)엡4:31; 약4:1 (12)마6:31,32 (13)눅21:34; 롬13:13 (14)전4:8; 12:12 (15)사5:12 (16)잠15:1; 12:18 (17)겔18:18; 출1:14 (18)갈5:15; 잠23:29 (19)민35:16-18,21 (20)출21:18-36

문137 제칠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칠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1).

(1)출20:14

제138 제칠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칠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몸, 생각, 감정(1), 말(2), 행동에 있어서의 순결함이며(3),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4). 눈을 비롯하여 모든 감각들을 조심하고(5) 절제하며(6), 순결한 교제를 유지하고(7), 복장을 단정하게 하는 것입니다(8). 금욕의 은사가 없는 이들은 결혼하고(9), 부부는 사랑으로(10) 동거하며(11), 우리의 소명을 부지런히 수행하고(12), 부정의 모든 경우를 피하며 그 유혹들을 저항하는 것입니다(13).

(1)살전4:4 (2)골4:6 (3)벧전3:2 (4)고전7:2,35,36 (5)욥31:1 (6)행24:25 (7)잠2:16-20 (8)딤후2:9 (9)고전7:2,9 (10)잠5:19,20 (11)벧전3:7 (12)잠31:27 (13)잠5:8; 창39:8-10

제139 제칠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칠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1), 간통,

음행(2), 강간, 근친상간(3), 남색과, 모든 비정상적인 색욕들입니다(4). 모든 부정한 상상, 생각, 의도와 감정이며(5), 모든 부패하고 추잡한 대화, 또는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과(6), 음탕한 눈길(7), 뻔뻔스럽고 경박한 행동, 단정하지 못한 복장입니다(8). 합법적 결혼을 금하고(9) 불법적 결혼을 시행하는 것이며(10), 매춘가를 허락하고, 용납하며, 보존하고, 방문하는 것입니다(11). 독신에 얽매이게 하는 서약과(12), 결혼을 지나치게 미루는 것이며(13), 한 사람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동시에 취하는 것입니다(14). 부당한 이혼이나(15) 버림이며(16), 게으름, 탐식, 술취함(17), 부정한 교제(18), 음탕한 노래와 서적과 그림과 춤과 연극(19), 기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안에 부정을 자극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들입니다(20).

(1)잠5:7 (2)히13:4; 갈5:19 (3)삼하13:14; 고전5:1 (4)롬1:24,26,27; 레20:15,16 (5)마5:28;15:19; 골3:5 (6)엡5:3,4; 잠7:5,21,22 (7)사3:16; 벧후2:14 (8)잠7:10,13 (9)딤후4:3 (10)레18:1-21; 막6:18; 말2:11,12 (11)왕상16:12; 왕하23:7; 신23:17,18; 레19:29; 렘5:7; 잠7:24-27 (12)마19:10,11 (13)고전7:7-9; 창38:26 (14)말2:14,15; 마19:5 (15)말2:16; 마5:32 (16)고전7:12,13 (17)겔16:49; 잠23:20-33 (18)창39:10; 잠5:8 (19)엡5:4,9; 겔23:14-16; 사23:15-17; 3:16; 벧전4:3 (20)겔23:40; 렘4:30

문140 제팔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팔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1).

(1)출20:15

문141 제팔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팔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 있어서의 진실과 신실함과 공정함입니다(1). 모든 이에게 각자의 몫을 주며(2), 정당한 소유주로부터 불법으로 압류한 재물을 반환하는 것입니다(3). 우리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내어주며, 빌려주는 것입니다(4).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우리의 가치판단, 소원과, 애착을 절제하며

(5), 우리 본성의 유지에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의 상태에 적합한 것들을 획득하고 보존하며 사용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6). 정당한 직업과(7), 그것에 근면하며(8), 검소하고(9), 불필요한 법정소송과(10) 보증, 그 외에 채무 같은 것을 피합니다(11).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획득하고 보존하며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들을 동원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12).

(1)시15:2,4; 속7:4,10; 8:16,17 (2)롬13:7 (3)레6:2-5; 눅19:8 (4)눅6:30,38; 요일3:17; 엡4:28; 갈6:10 (5)딤했6:6-9 (6)잠27:23-27; 전2:24; 3:12,13; 딤했6:17,18 (7)고전7:20; 창2:15; 3:19 (8)엡4:28; 잠10:4 (9)요6:12; 잠21:20 (10)고전6:1-9 (11)잠6:1-6; 11:15 (12)레25:35; 신22:1-4; 출23:4,5; 빌2:4.

문142 제 팔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 팔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1), 도적질(2), 강도(3), 사람 납치(4), 장물취득(5), 사기거래(6), 저울과 치수를 속이는 것(7), 지계표를 옮기는 것(8),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나 신탁에 있어서의 부정과 불성실함입니다(9). 억압(10), 강탈(11), 고리대금(12), 뇌물(13), 쓸데없는 소송(14), 부당하게 공유지를 사유화하는 것과, 사람들을 추방하는 것입니다(15). 물건 값을 올리기 위한 사재기(16), 불법적인 직업(17), 우리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앗거나 억류하거나, 우리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다른 모든 부당하고 악한 행위들입니다(18). 탐욕(19),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소중히 여기며 애착하고(20), 그것들을 획득하고 보존하며 사용하는 데 신뢰할 수 없고 노심초사하는 것이며(21), 다른 사람들의 번영을 시기하는 것입니다(22). 마찬가지로 게으름(23), 방탕, 낭비성 게임이며, 우리들의 재산에 손해를 끼쳐(2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산을 적절히 사용하여 그로부터 위로를 누리는 일을 가로막는 기타의 모든 행위들입니다(25).

(1)약2:15,16; 요일3:17 (2)엡4:28 (3)시62:10 (4)딤했1:10 (5)잠29:24 (6)살전

4:6; 레25:17 (7)잠11:1; 20:10 (8)신19:14; 잠23:10 (9)암8:5; 시37:21; 눅
 16:10-12 (10)겔22:29 (11)겔22:12 (12)시15:5 (13)욥15:34 (14)고전6:6-8;
 잠3:29-30 (15)사5:8; 미2:2 (16)잠11:26 (17)행19:24 (18)욥20:19; 약5:4; 잠
 21:6 (19)눅12:15 (20)딤후6:5; 골3:2; 잠23:5; 시62:10; 요일2:15 (21)마
 6:25-34; 전5:12 (22)시73:3; 37:1,7 (23)살후3:11; 잠18:9 (24)잠21:17;
 23:20,21; 28:19 (25)전4:8; 신12:7

문143 제구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구 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1).

(1)출20:16

문144 제구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 구 계명에 요구하는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1)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2). 진리를 위해 나서서
 옹호하며(3), 재판과 정의에 있어서나 다른 어떠한 일에 있어서라도(4) 진심
 으로(5) 성실하게(6), 자유롭게(7), 명백하게(8), 그리고 온전하게(9) 오직 진
 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10). 우리 이웃을 자비롭게 평가하고(11), 그들의
 명예를 사랑하며 바라고 기뻐하며(12), 그들의 연약함을 슬퍼하고(13) 덮어
 주며(14), 그들의 재능과 장점들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입니다(15). 그들의
 결백을 변호하고(16),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을 기꺼이 받아들여(17), 나
 쁜 소문은 받아들이지를 원하지 않으며(18), 험담하는 자들과(19) 아침하는
 자들과(20) 비방하는 자들을 저지시키는 것입니다(21). 우리 자신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필요할 때는 이를 변호하며(22), 정당한 약속을
 지키고(23), 어떤 것이든 참되고 정직하며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는
 것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24).

(1)속8:16 (2)요삼1:12 (3)잠31:8,9 (4)레 19:15; 엠4:25 (5)시15:2 (6)대하
 19:9 (7)삼상19:4,5 (8)수7:19 (9)삼하14:18-20 (10)잠14:5 (11)고전13:7 (12)
 롬1:8; 요삼1:3,4 (13)고후2:4; 12:21 (14)잠17:9; 벰전4:8 (15)고전1:4,5,7;
 딤후1:4,5 (16)삼상22:14 (17)고전13:6,7 (18)시15:3 (19)잠25:23 (20)롬16:18

문145 제구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구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특별히 공적 재판에서(1) 우리 자신과 이웃의 진실과 명예를 해치는 모든 일입니다(2). 거짓증거를 제공하며(3) 위증을 사주하고(4), 고의적으로 나서서 악한 소송에 대해 변호하며, 진실을 대적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5).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6),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인에게 보상하기를 의인에게 하듯이하며, 의인에게 보상하기를 악인에게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7). 위조(8),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며, 공의로운 소송에서 부당하게 침묵하는 것과(9), 불법에 대해 우리가 책망하고(10) 다른 이들에게 항의해야 할 때 잠자코 있는 것입니다(11). 때에 맞지 않게 진실을 말하거나(12) 그릇된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말하거나(13), 진리를 왜곡하여 그릇된 의미로 만들거나,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과 공의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14). 비 진리를 말하며(15) 거짓말하고(16), 비방하며(17) 험담하고(18) 훼방하며(19),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20) 수군거리며(21) 비웃고(22) 욕하며(23), 경솔하고(24) 가혹하며(25)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26). 의도와 말과 행동을 오해하는 것이며(27), 아침과(28) 헛된 자랑(29), 우리 자신이나 남들을 지나치게 높게 혹은 낮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30).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과 장점들을 부인하고(31), 적은 과실들을 더욱 악화시키고(32), 자유롭게 고백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죄를 숨기고 변명하고 경감시키는 것입니다(33). 약점을 쓸데없이 찾아내며(34) 헛소문을 퍼뜨리고(35), 악한 소문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며(36) 공정한 변호에는 귀를 막는 것입니다(37). 악하게 의심을 품는 것이며(38),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돌아가는 명예에 대해 시기하며 배 아파하고(39), 그것을 손상시키려고 애쓰거나 갈망하며(40), 그들의 불명예와 오명을 기뻐하는 것입니다(41). 조소하듯이 멸시하는 것(42), 맹신적으로 존경하는 것(43), 정당한 약속을 위반하는 것입니다(44). 명예를 얻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불명예를 초래하는 일은 행하고

스스로 피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45).

(1)레19:15 (2)눅3:14; 삼하16:3 (3)잠19:5; 16:16,19 (4)행6:13 (5)렘9:3,5; 행24:2,5; 시52:1-4 (6)잠17:15; 왕상21:9-14 (7)사5:23 (8)시119:69; 왕상 21:8; 눅19:8; 16:5-7 (9)레5:1; 행5:3,8,9 (10)사58:1; 왕상1:6; 레19:17 (11) 사59:4 (12)삼상22:9,10,15; 시52:1-5 (13)시56:5; 요2:19; 마26:60,61 (14)창 3:5; 26:7,9 (15)사59:13 (16)레19:11; 골3:9 (17)시50:20 (18)시15:3 (19)약 4:11; 렘38:4 (20)레19:16 (21)롬1:29,30 (22)창21:9; 갈4:29 (23)고전6:10 (24)마7:1 (25)행28:4 (26)창38:24; 요7:27; 롬2:1 (27)느6:6-8; 롬3:8; 시 69:10; 삼상1:13-15; 삼하10:3 (28)시12:2,3; 롬16:18 (29)딤후3:2 (30)눅 18:9,11; 롬12:16; 고전4:6; 행12:22; 출4:10-14 (31)욥4:6, 27:5-6 (32)마 7:3-5 (33)잠28:13; 30:20; 창3:12,13; 4:9; 렘2:35; 왕하5:25 (34)창9:22; 잠 25:9-10 (35)출23:1 (36)잠29:12 (37)행7:56-57; 욥31:13-14 (38)고전13:5; 딤후6:4 (39)민11:29; 마21:15 (40)단6:3,4; 스4:12,13 (41)렘48:27 (42)시 35:15,16,21; 마27:28-29 (43)유1:16; 행12:22 (44)롬1:31 (45)삼상2:24; 삼 하13:12-13; 잠5:8-9; 6:33

문146 제십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십 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 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1).

(1)출20:17

문147 제십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제십 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하고(1) 우리 이웃에 대해 인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되, 우리 내면의 모든 움직임과 애정이 그에게 와 닿을 정도로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돌보고 증진 시키는 것입니다(2).

(1)히13:5; 딤후6:6 (2)욥31:29; 롬12:15; 시122:7-9; 딤후1:5; 고전13:4-7

문148 제십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십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우리 자신의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며(1), 우리 이웃의 재물에 대해 시샘하고(2) 배 아파할 뿐만 아니라(3), 이웃이 가진 어떤 소유에 대해 과도하게 끌리고 애착하는 모든 것입니다(4).

- (1)왕상21:4; 예5:13; 고전10:10 (2)갈5:26; 약3:14,16 (3)시112:9,10; 느2:10
(4)롬7:7-9; 골3:5; 신5:21

문149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아무도 자기 스스로든지(1), 혹은 이생에서 받는 은혜로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2),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3) 말과 행동으로(4) 그 계명을 범합니다.

- (1)약3:2; 요15:5; 롬8:3 (2)전7:20; 요일1:8,10; 갈5:17; 롬7:18,19 (3)창6:5, 8:21 (4)롬3:9-19; 약3:2-12

문150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모든 죄들은 그 자체로서와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하게 가증합니까?

답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모든 죄들이 동등하게 가증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죄는 그 자체로, 그리고 여러 가지 악화시키는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합니다(1).

- (1)겔8:6,13,15; 요19:11; 요일5:16; 시78:17,32,56

문151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하게 악화시키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답 죄를 더 악화시키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한 사람들에 따라서(1): 그들의 연령이 높거나 보다 더 많은 경험 혹은 은혜를 가졌거나(2), 직업과(3) 재능과(4) 위치와(5) 직분에서 탁월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도자들이며(6),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게 되기가 쉬운 경우에 그렇습니다(7).
2. 범죄한 대상에 따라서(8): 직접적으로 하나님과(9) 그분의 속성과(10) 예배

(11),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12), 성령과 그분의 증거와 사역에 대항하여 범죄할 경우입니다(13). 그리고 윗사람들과 존경해야 할 사람들(14), 특별히 우리와 관련되고 우리를 고용한 윗사람들에 대항하여(15), 성도들(16), 성도들 중에서도, 특히 연약한 형제들 중의 한 사람에게나, 그들의 영혼이나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항하여(17), 모든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의 공동의 유익에 대항하여 범죄한 경우입니다(18).

3. 범죄의 성격과 질에 따라서(19): 그들의 범죄가 율법에 분명히 명시된 것을 거스른 것 이거나(20), 많은 계명을 범했거나 많은 죄를 포함한 범죄를 하는 경우입니다(21). 마음속에 품었을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고(22),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23) 보상할 의지가 없는 범죄인 경우입니다(24). 은혜의 방편들과(25) 긍휼(26), 심판과(27) 본성의 빛(28), 양심의 가책(29), 공적 혹은 사적인 권면(30), 교회의 견책(31), 국가의 징벌과(32), 우리의 기도와 삶의 목적, 약속과 서약, 언약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에 대항한 범죄인 경우입니다(33). 일부러(34), 고의적으로, 뻔뻔스럽고, 경솔하게, 자랑삼아(35), 사악하게(36), 자주(37), 완강히(38), 기쁨으로(39), 계속적으로(40) 혹은 회개한 후 타락함으로 범죄하는 경우입니다(41).
4. 때와(42) 장소의(43) 상황에 따라서: 주일이나(44) 다른 예배 시(45) 또는 예배 직전이나(46) 직후나(47), 그런 범죄를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경우입니다(48). 공개적으로 남들 앞에서 범죄함으로써 그들이 그로 인해 죄에 자극되고 오염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49).

(1)렘2:8; 욥32:7,9; 전4:13 (2)왕상11:4,9 (3)삼하12:14 (4)약4:17; 눅12:47,48 (5)렘5:4,5; 삼하12:7-9; 겔8:11,12 (6)롬2:17-24 (7)벧후2:2; 갈2:11-14 (8)요일5:10; 마 21:38,39 (9)삼상2:25; 행5:4; 시51:4 (10)롬2:4 (11)고전10:21,22; 말1:8,14 (12)요3:18,36; 히2:2,3; 12:25 (13)히10:29; 마12:31,32; 엡4:30; 히6:4-6 (14)유1:8; 민12:8,9 (15)잠30:17; 시55:12-15 (16)슥2:8,10,11; 마18:6; 고전6:8; 계17:6 (17)고전8:11-12; 롬14:13, 15, 21; 겔13:19; 고전8:12; 계18:12,13; 마23:15 (18)살전2:15-16; 마23:34-38;

수22:20 (19)잠6:30-33 (20)겔20:12,13; 스9:10-12; 왕상11:9,10 (21)골3:5; 담전6:10; 잠5:8-12; 6:32,33; 수7:21 (22)미2:1,2; 약1:14; 마5:22 (23)마 18:7; 롬2:23,24 (24)잠6:32-35; 마16:26; 신22:22,28,29 (25)마11:21-24; 요 15:22 (26)사1:3; 스9:13,14; 신32:6 (27)암4:8-11; 렘5:3 (28)롬 1:20,21,26,27 (29)롬1:32; 단5:22; 딛3:10 (30)잠29:1 (31)딛3:10; 마18:17 (32)롬13:1-5 (33)시78:34-37; 렘42:5,6,20,21; 31:32; 전5:4-6; 잠20:25; 레 26:25; 잠2:17; 겔17:18,19 (34)시36:4; 렘6:16 (35)민15:30; 출21:14; 렘3:3; 6:15; 잠7:13 (36)요삼1:10; 겔35:5,6 (37)민14:22 (38)숙7:11,12 (39)잠2:14 (40)사57:17 (41)렘34:8-11; 히6:4,6; 벧후2:20-22 (42)사22:12-14; 왕하5:26 (43)렘7:10; 사26:10 (44)겔23:37-39 (45)사 58:3-5; 민25:6-7 (46)고전 11:20,21; 렘7:8-10 (47)잠7:14-15; 요13:27,30 (48)대하36:15,16; 느 9:13-16 (49)삼하16:22; 삼상2:22-24

문152 모든 죄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무엇입니까?

답 모든 죄는, 그것이 비록 가장 작은 죄라 할지라도(1) 하나님의 주권과 선 하심과(2) 거룩하심(3), 그리고 그의 의로운 율법에 대항한 것이기에(4), 현세와(5) 내세에서(6) 그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며(7),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결코 속죄될 수 없습니다(8).

(1)약2:10,11 (2)신32:6 (3)합1:13; 레10:3; 11:44,45; 벧전1:15,16 (4)요일 3:4; 롬7:12; 갈3:10 (5)신28:15-68; 잠13:21; 애3:39 (6)마25:41 (7)엡5:6; 갈3:10 (8)히9:22

문153 우리가 범법함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범법함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1),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증보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들을 부지런히 활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2).

(1)행20:21; 마3:7,8; 눅13:3,5; 행16:30,31; 요3:16,18 (2)잠2:1-5; 8:33-36

문154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증보의 은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들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그의 증보의 은덕을 전달하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방편들은 그의 모든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이 모든 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데 효력이 있게 합니다(1).

(1)마28:19,20; 행2:42,46,47; 딤후4:16; 고전1:21; 엡5:19,20; 6:17,18

문155 어떻게 말씀이 구원에 효력 있게 됩니까?

답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말씀에 대한 설교를 통해,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1) 확신하게 하며 겸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2), 그들을 자신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며(3),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4) 그분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며(5), 유혹과 부패에 대항하여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6), 은혜 안에 자라게 하시고(7),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견고하게 세워 가십니다(8).

(1)느8:8; 행26:18; 시19:7-8 (2)고전14:24,25; 대하34:18,19,26-28 (3)행2:37,41;39 (4)고후3:18 (5)고후10:4-6; 롬6:17 (6)마4:4,7,10; 엡6:16,17; 시19:11; 고전10:11 (7)행20:32; 딤후3:11-17 (8)롬1:16; 10:13-17; 15:4; 16:25; 살전3:2,10,11,13

문156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합니까?

답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공적으로 회중에게 말씀을 봉독하게 허락되어 있지는 않지만(1),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라도 각자 개별적으로뿐만 아니라(2)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3). 그러기 위해 성경은 원어에서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4).

(1)신31:9,11-13; 느8:2,3; 9:3,5 (2)신17:19; 계1:3; 요5:39; 사34:16 (3)신6:6-9; 창18:17,19; 시78:5-7 (4)고전14:6,9,11,12,15,16,24,27,28

문157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답 성경은 숭고하고 경건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1).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2),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과(3)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으며 순종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4). 성경의 내용과 의도에 대해 부지런함과(5) 주의를 기울임으로(6), 묵상과(7) 적용과(8) 자기 부인과(9) 기도로(10) 읽어야 합니다.

(1)시19:10; 느8:3-10; 출24:7; 대하34:27; 사66:2 (2)벧후1:19-21 (3)눅24:45; 고후3:13-16 (4)신17:19,20 (5)행17:11 (6) 행8:30,34; 눅10:26-28 (7)시1:2, 119:97 (8)대하34:21 (9)잠3:5; 신33:3 (10)잠2:1-6; 시119:18

문158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답 충분한 은사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1) 정식으로 인정을 받아 이 직분에 부름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2).

(1)딤후3:2,6; 말2:7 (2)렘14:15; 롬10:15; 히5:4; 고전12:28,29; 딤후 4:14; 5:22

문159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답 말씀의 사역에 수고하도록 부름 받은 이들은 올바른 교리를(1) 설교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2) 부지런하게(3), 사람의 지혜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4) 단순명료하게(5), 하나님의 모든 작정을 알도록(6) 신실하게(7), 청중들의 필요와 수용능력에 맞게 적용하며(8) 지혜롭게(9), 하나님과(10) 그분의 백성들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11) 열렬히(12), 하나님의 영광과(13) 백성들의 회심과(14) 성숙과(15) 구원을(16) 추구하며 진정으로(17) 설교해야 합니다.

(1)딤후2:1,7,8 (2)딤후4:2 (3)행18:25 (4)고전2:4 (5)고전14:19 (6)행20:27 (7)렘23:28; 고전4:1,2 (8)고전3:2; 히5:12-14 (9)골1:28; 딤후2:15 (10)고후5:13,14; 빌1:15-17 (11)골4:12; 고후12:15 (12)행18:25; 딤후4:5 (13)살전

2:4-6; 요7:18 (14)고전9:19-22 (15)고후12:19; 엡4:12 (16)딤후4:16; 행
26:16-18 (17)고후2:17; 4:2

문160 설교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설교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자세와(1) 기도로(2) 설교에 부지런히(3) 참여해야 하며, 그들은 바를 성경을 통해 점검해 보고(4), 믿음과(5) 사랑과(6) 온유함과(7)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8) 하나님의 말씀으로(9)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10) 숙고하며(11),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여(12) 그 말씀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13).

(1)벧전2:1,2; 눅8:18 (2)시119:18; 엡6:18,19 (3)잠8:34 (4)행17:11 (5)히4:2
(6)살후2:10 (7)약1:21 (8)행17:11 (9)살전2:13 (10)눅9:44; 히2:1 (11)눅
24:14; 신6:6,7 (12)잠2:1; 시119:11 (13)눅8:15; 약1:25

문161 어떻게 성례가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까?

답 성례가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되는 것은 그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그것을 시행하는 이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파생되는 효능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말미암 습니다(1).

(1)벧전3:21; 행 8:13; 고전3:6,7; 6:11; 12:13

문162 성례는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인데(1), 은혜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2) 그리스도 증보의 은택을(3) 상징하고 인치며 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4). 이는 또한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며 증진시키고(5),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며(6), 그들 상호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귀히 간직하게 하며(7), 그들을 은혜언약 밖에 있는 이들과(8) 구별하게 합니다.

(1)창17:7,10; 출12:1-51; 마26:26-28; 28:19 (2)롬15:8; 출12:48 (3)행2:38; 고전10:16 (4)롬4:11; 고전11:24-25 (5)요6:56,57 (6)롬6:3,4; 고전5:6-8 (7)엡4:2-5; 고전12:13 (8)수5:9; 사52:1,11; 고전10:21; 엡2:11-12; 창34:14

문163 성례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답 성례의 요소는 둘인데, 하나는 그리스도 자신이 정하심을 따라 사용하는 외적이며 눈에 보이는 표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표지가 상징하는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입니다(1).

(1)마3:11; 뵤전3:21; 롬2:28,29

문164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답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인데, 곧 세례와 성찬입니다(1).

(1)마26:26-28; 28:19; 고전11:23-26

문165 세례는 무엇입니까?

답 세례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례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의식을 제정하시되, 이 의식이(1)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임 받고(2), 그의 피로 죄 사함 받으며(3) 성령으로 거듭나고(4), 양자가 되며(5)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한 표지와 증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6).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유형 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여지고(7)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주님께 속했다는 공개적이고 고백적인 계약을 맺게 됩니다.

(1)마28:19; 엡5:26 (2)갈3:27 (3)막1:4; 계1:5 (4)딤후3:5 (5)갈3:26,27 (6)고전15:29; 롬6:3-5 (7)고전12:13

문166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답 누구든지 가시적인 교회 밖에 있어서 약속의 언약에 외인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1). 그러나 양편 혹은 한편의 부모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들은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2).

(1)행2:38; 8:36 (2)창17:7,9; 갈3:9,14; 골2:11,12; 행2:38,39; 롬4:11,12; 고전7:14

문167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받은 세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답 우리가 받은 세례를 향상시켜야 할 의무는, 꼭 필요하지만 매우 소홀히 해왔는데, 우리가 평생에 걸쳐 이행하며,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와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해야 합니다(1). 세례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 세례를 통해 부여되고 보증된 특권과 은덕, 세례에서 한 엄숙한 서약을 신중하면서도 감사히 숙고함으로써 해야 합니다(2). 우리 죄악의 더러움과, 세례의 은혜와 우리의 맹세에 못 미치고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겸손해지며(3), 이 성례 안에서 보증된 죄 사함과 다른 모든 축복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으로써 해야 합니다(4).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죄를 죽이고 은혜를 소생시키기 위해서(5)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힘을 얻음으로써 해야 합니다. 또 믿음으로 살고(6), 그리스도께 자신들의 이름을 드린 자들로서 거룩함과 의로움 가운데 대화하고(7),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기에 형제 사랑 안에서 행하기를 힘씀으로써 해야 합니다(8).

(1)롬6:4,6,11 (2)롬6:3-5 (3)고전1:11-13; 롬6:2,3 (4)롬4:11,12; 벰전3:21 (5)롬6:3-5 (6)갈3:26-27 (7)롬6:22 (8)고전12:13,25-27

문168 성찬은 무엇입니까?

답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음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1).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자라며(2), 그들이 주님과 갖는 연합과 교제를 확신하고(3), 하

나눔을 향한 감사와(4) 헌신뿐만 아니라(5),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나누는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6).

(1)눅22:20 (2)마26:26,28; 고전11:20, 23-26 (3)고전10:16 (4)고전 11:24
(5)고전10:14-16,21 (6)고전10:17

문169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예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답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는 성찬 제정에 관한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 떡과 포도주를 일반적인 용도로부터 구별하고, 떡을 취하여 떼고 떡과 포도주를 수찬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찬자들은 동일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감사히 기념함으로써 떡을 취하여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1).

(1)고전11:23,24; 마26:26-28; 막14:22-24; 눅22:19,20

문170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이들은 어떻게 그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됩니까?

답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아래에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임재하지는 않지만(1), 수찬자들에게 외적으로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참되고도 실제적으로 그들의 믿음에 영적으로 임재합니다(2).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이들은 그 예식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3).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이 가져다준 모든 은택을 믿음으로 받고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한에서는 참되고도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4).

(1)행3:21 (2)마26:26,28 (3)고전11:24-29 (4)고전10:16

문171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자신들을 준비해야 하나?

답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신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에 대해(1),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2),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과(3) 회개와(4)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5)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과(6) 잘못된 이들에 대한 용서(7) 진실성과 분량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갈망과(8) 자신들의 새로운 순종에(9) 대해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10) 또한 이 떡목들을 반복적으로 실천함과(11), 깊은 묵상과(12) 뜨거운 기도로(13) 성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1)고전11:28; 고후13:5 (2)고전5:7; 출12:15 (3) 고후13:5 (4)속12:10; 고전11:31 (5)고전10:16,17; 행2:46,47 (6)고전11:18,20,22 (7)마5:23,24 (8)사55:1; 요7:37 (9)고전5:7,8 (10)고전11:29; 마26:28 (11)고전11:25,26,28; 히10:21,24; 시26:6 (12)고전11:24,25 (13)대하30:18,19

문172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성찬에 임할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심하는 이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는 성찬의 성례에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 의심하는 이도, 비록 그에 대해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런 결핍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여(1)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2) 악에서 떠나기를(3) 진실하게 원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 (약하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약속은 주어지고 성례는 제정된 것이기에(4) 그는 자신의 불신앙을 애통해 하고(5) 의심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6). 그렇게 하면서 그는 더욱 더 강건해지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7).

(1)마5:3,4; 시73:22,23 (2)빌3:8,9 (3)딤후2:19; 시66:18-20 (4)사40:11,29,31; 마11:28; 12:20; 26:28 (5)막9:24 (6)행2:37, 16:30 (7)고전

문173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에게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습니까?

답 비록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무지하며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난 이들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변화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못 받게 해야 합니다(1).

(1)고전11:27-34; 마7:6; 고전5:1-13

문174 성찬예식을 거행할 때 성찬을 받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성찬의 성례를 받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을 거행하는 동안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1), 성례의 요소들과 동작들을 부지런히 따르고(2),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며(3), 그분의 죽음과 고난을 마음을 다해 묵상함으로써(4) 그 은혜가 왕성하게 역사하도록 스스로를 자극하는 것입니다(5). 그들 스스로를 판단하여(6) 죄를 슬퍼하고(7), 그리스도에 대해 진정으로 주리고 목말라 하며(8)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9), 그의 충만함을 받으며(10)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11), 그의 사랑을 기뻐하며(12)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13).

(1)레10:3; 시5:7; 고전11:27 (2)출24:8 (3)고전11:29 (4)눅22:19 (5)고전10:3-5,11,14; 11:26 (6)고전11:31 (7)숙12:10 (8)계22:17 (9)요6:35 (10)요1:16 (11)빌3:9 (12)시63:4,5; 대하30:21 (13)행2:42; 렘50:5

문175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는 그들이 성찬식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심각하게 숙고하는 것입니다

다(1). 만일 그들이 소생함과 위로를 경험했으면, 그로 인해 하나님을 송축하고(2) 그 은혜가 계속되기를 간구하며(3), 다시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4), 서약한 것을 실천하며(5) 그 예식에 자주 참여하도록 스스로 힘써야 합니다(6). 그러나 그들이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은덕을 얻지 못했다면, 성례에 대한 준비와 거기에 임하는 자세를 더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7). 만약 그들이 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과 그들의 양심에 떳떳하다면, 적절한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8). 그러나 만약 그들이 어느 한쪽이라도 실패했음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겸비해져야 하며(9), 차후에는 더 많은 주의와 부지런함으로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1) 고전11:17,30,31; 시 28:7; 85:8 (2)대하30:21-27; 행2:42,46,47 (3)시 36:10; 아3:4 (4)고전10:3-5,12 (5)전5:1-6 (6)고전11:25,26 (7)고전11:27-32 (8)시123:1,2 (9)대하30:18,19; 사1:16,18

문176 세례와 성찬 이 두 성례는 어떠한 점에서 일치하는가?

답 성례와 성찬이 일치하는 점은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했으며(1), 그 영적 측면이 모두 그리스도와 그의 은덕이고(2), 둘 다 같은 언약의 인침이라는 점입니다(3). 그리고 둘 다 복음 사역자들(목사들)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그 밖에 누구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없고(4),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5).

(1)마28:19; 고전11:23 (2)롬6:3,4; 고전10:16 (3)롬4:11; 마26:27,28 (4)요 1:33; 마 28:19; 고전4:1; 11:23; 히5:4 (5)마28:19,20; 고전11:26

문177 세례와 성찬 이 두 성례는 어떠한 점에서 다릅니까?

답 세례와 성찬이 다른 점은 세례는 물로써 단 한번만 시행하며(1), 우리의 중생과 그리스도께 접붙임의 표증과 인침으로서 유아에게도 시행해야 하는 반면에(2), 성찬은 떡 포도주라는 요소들을 가지고 자주 시행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영혼의 신령한 양식으로 나타내고 전시하며(3)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며 자라감을 확증하는 것으로서(4), 오직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고 그런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만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5).

- (1)마3:11; 딤후3:5; 갈3:27 (2)창17:7,9; 행2:38-39; 고전7:14 (3)고전11:23-26
(4)고전10:16 (5)고전11:28,29

문178 기도는 무엇입니까?

답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1),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2)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3),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4) 그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함으로 해야 합니다(5).

- (1)요16:23 (2)롬8:26 (3)시62:8 (4)시32:5,6; 단9:4 (5)빌4:6

문179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까?

답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시고(1)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며(2) 죄를 사하시고(3) 모든 사람의 소원을 성취해 주실 수 있습니다(4).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5) 종교적 예배의 대상이 되실 수 있기에(6), 그런 예배의 특별한 요소인 기도는 그분께만 드려야 하고(7), 그 외의 누구에게도 드려서는 안 됩니다(8).

- (1)왕상8:39; 행1:24; 롬8:27 (2)시65:2 (3)미7:18 (4)시145:18,19 (5)롬10:14; 삼하22:32; 요14:1 (6)마4:10 (7)단6:7-10 (8)눅4:8; 사42:8

문180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순종하며 그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 긍휼을 구하는 것인데(1), 단순히 그의 이름을 언급함으로써가 아니라(2), 그리스도와 그의 증보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용기와 담대함과 힘, 그리고 기도가 수납되리라는 소망을 얻음으로써 하는 것입니다(3).

- (1)요14:13-14, 16:24; 단9:17 (2)마7:21 (3)히4:14-16; 요일5:13-15

문181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답 인간의 죄성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사이에 생긴 간극이 심히 크기에 중보자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1). 그리고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 임명되거나 그 사역에 적합한 이가 없으므로(2), 우리는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닌 오직 그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3).

(1)요14:6; 사59:2; 엡3:12 (2)요6:27; 히7:25-27; 딤후2:5 (3)골3:17; 히13:15

문182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까?

답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기도의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깨달음과 열정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킵니다(비록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똑같은 정도로 역사하시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1).

(1)롬8:26-27; 시10:17; 스후12:10

문183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답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1). 위정자들과(2) 목사들(3), 우리 자신과(4)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5),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도(6)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거나(7) 앞으로 생존할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만(8), 죽은 자나(9)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10).

(1)엡6:18; 시28:9 (2)딤후2:1-2 (3)골4:3 (4)창32:11 (5)약5:16 (6)마5:44 (7)딤후2:1 (8)요17:20; 삼하7:29 (9)삼하12:21-23 (10)요일5:16

문184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답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1) 교회의 안녕과(2) 우리 자신과(3) 다른 이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4). 그러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5).

(1)마6:9 (2)시51:18; 122:6 (3)마7:11 (4)시125:4 (5)요일5:14; 약4:3

문185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답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엄숙한 이해와(1),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2) 빈곤과(3) 죄를(4) 깊이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통회하고(5) 감사하며 (6) 열린 마음으로(7) 기도해야 합니다. 깨달음과(8) 믿음과(9) 진실함과(10) 열정과(11) 사랑과(12) 인내로(13) 하나님을 양망하며(14), 그분의 뜻에 겸허히 순복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15).

(1)전5:1 (2)창18:27; 32:10 (3)눅15:17-19 (4)눅18:13-14 (5)시51:17 (6)빌 4:6 (7)삼상1:15; 2:1 (8)고전14:15 (9)막11:24; 약1:6 (10)시17:1; 145:18 (11)약5:16 (12)딤후2:8 (13)엡6:18 (14)미7:7 (15)마26:39

문186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침으로 주신 것은 무엇인가?

답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가 기도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지침으로 사용되지 만(1), 특별히 규정된 지침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양식으로,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불립니다(2).

(1)요일5:14 (2)마6:9-13; 눅11:2-4

문187 주기도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답 주기도문은 우리가 다른 기도를 작성할 때 따라야 할 하나의 규범으로서 지침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기도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음, 믿음, 경외 등과 기도의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덕목들을 가지고 이 기도를 사용해야 합니다(1).

(1)마6:9; 눅11:2

문188 주기도문은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답 주기도문은 세 부분, 즉 서언, 기원, 결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189 주기도문의 서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 주기도문의 서언("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이 가르치는 것은(1),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같은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2). 또한 경외심, 자녀로서의 모든 태도(3), 하늘에 속한 사랑을 가지고(4), 그분의 주권적 능력과 위엄과 은혜로운 낮아지심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서 나아가되(5),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거나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6).

(1)마6:9 (2)눅11:13; 롬8:15 (3)사64:9 (4)시123:1; 애3:41 (5)사 63:15-16; 느1:4-6 (6)행12:5

문190 첫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 첫째 기원("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1),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2),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3) 자신의 이름들과(4) 속성과(5) 규례들과 말씀과(6) 사역뿐만 아니라, 즐겨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수단들에 대해서, 깨닫고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7) 더불어 생각과 말과(8) 행동으로(9)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무신론(10), 무지(11), 우상숭배(12), 신성모독과(13) 그에게 모독되는 모든 일을 막으시고 제거하시며(14), 그의 모든 것을 주권적인 그의 섭리로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운행하고 처리하시도록 기도합니다(15).

(1)마6:9 (2)고후3:5 (3)시51:15; 67:2-3 (4)시83:18 (5)시86:10-15 (6)살후 3:1; 시138:1-3; 147:19-20; 고후2:14-15 (7)시145:1-21 (8)시19:14; 103:1 (9)빌1:9,11 (10)시67:1-4 (11)엡1:17-19 (12)시97:7 (13)시74:18,22,23 (14)왕하19:15-16 (15)대하20:6,10-12; 시83:1-18; 140:4,8

문191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 둘째 기원("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에서(1), 우리는, 우리 자신과 온 인류

가 본질상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2), 죄와 사단의 왕국이 파괴되며(3),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4),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으며(5),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고(6), 교회가 모든 복음의 직분자들과 규례들로 갖추어지며(7), 부패로부터 정화되고(8), 세상의 위정자로부터 지지받고 유지되도록 기도합니다(9). 그리스도의 규례들이 순수하게 집행되어 아직 죄 중에 있는 이들을 돌이키고, 이미 회심한 이들을 견고하게 하고 위로하고 성숙하게 하는 데 효력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10).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11), 그의 재림과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때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며(12), 이상의 목적들을 가장 잘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기 나라의 권세를 온 세상에 행사하기를 기도합니다(13).

(1)마6:10 (2)엡2:2,3 (3)시68:1; 계12:9-11 (4)살후3:1; 시67:2 (5)롬10:1 (6) 요17:9,20; 롬11:25,26; 시67:1-7 (7)마9:38; 엡5:26,27 (8)말1:11; 속3:9 (9) 딤후2:1,2 (10)행4:29,30; 26:18; 엡6:18-20; 롬15:28-32; 살후1:11; 2:16-17; 고후4:2 (11)엡3:14-19 (12)계22:20 (13)사64:1,2; 대하20:6,10-12

문192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 셋째 기원("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서(1), 우리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 하고 완고할 뿐 아니라(2), 그의 말씀에 반역하기를 잘하고(3) 그의 섭리에 대해 불평하고 투덜대며(4), 전적으로 육신과 마귀의 뜻을 행하려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합니다(5).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무분별함과(6) 연약함과(7) 완고함과(8) 사악함을 제거하시고(9), 그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10) 겸손과(11) 즐거움과(12) 신실함과(13) 부지런함과(14) 열심과(15) 진정함과(16) 변함없음으로(17)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즐겨 알고 행하며 복종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18).

(1)마6:10 (2)롬7:18; 욥21:14; 고전2:14 (3)롬8:7 (4)출17:7; 민14:2 (5)엡2:2 (6)엡1:17-18 (7)엡3:16 (8)마26:40-41 (9)렘31:18-19 (10)단7:10; 사6:2-3;

시103:20-21; 마18:10 (11)미6:8 (12)시100:2 (13)사38:3 (14)시119:4-5 (15)
롬12:11 (16)시119:80 (17)시119:112 (18)시119:1,3,35,36; 행21:14

문193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 넷째 기원("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서(1), 우리는, 아담 안에서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인생의 모든 외적 축복을 누릴 권리를 상실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완전히 박탈해야 마땅하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2), 그 축복들 자체가 우리를 유지할 수 없으며(3), 우리가 그것들을 얻을 공로도 없고(4),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도 없으며(5), 오히려 그것들을 불법적으로 구하고(6) 획득하며(7) 사용하기 쉽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8).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들과 우리가 정당한 수단들, 즉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성적 지혜에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축복들의 적합한 분량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9). 그리고 그와 동일한 섭리가 우리가 그것들을 거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면서(10) 그것들로 만족하는 삶 속에(11) 계속되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에게 대한 현세적인 지원과 위로에 배치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12).

(1)마 6:11 (2)창2:17, 3:17; 롬8:20-22; 렘5:25 (3)신8:3; 28:15-68 (4)창32:10 (5)신8:17-18 (6)렘6:13; 막7:21-22 (7)호12:7 (8)약4:3 (9)창28:20; 43:12-14; 엡4:28; 살후3:11-12; 빌4:6; 약4:13,15; 시90:17; 144:12-15 (10)딤후4:3-5 (11)딤후6:6-8 (12)잠30:8-9

문194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 다섯째 기원("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서(1), 우리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원죄와 실제적인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공의에 빛진 자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다른 어떤 피조

물도 그 빛을 조금이라도 값어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2).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해되고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를 통하여 우리를 죄책과 그 죄에 대한 형벌에서 면제해 주시고(3),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4). 우리에게 그의 은총과 은혜를 계속 베푸시며(5), 우리의 매일 범하는 죄들을 용서하시고(6),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을 날마다 더 하심으로써 우리를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7). 이 사죄는,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때 더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더 용기를 가지고 기대하게 됩니다(8).

(1)마 6:12 (2)롬3:9-22; 마18:24-25; 시130:3-4 (3)롬3:24-26; 히9:22 (4)엡 1:6-7 (5)벧후1:2 (6)호14:2; 렘14:7 (7)롬15:13; 시51:7-10,12 (8)눅11:4; 마 6:14-15

문195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 여섯째 기원("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1), 우리는,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룩하고 공의로운 목적을 위해 우리가 시험에 공격을 받아 포위되며, 잠시 사로잡히고(2), 사탄과(3) 세상과(4) 육신이 잠시 우리를 강력하게 끌길로 이끌어 텃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것을(5)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의 부패함과(6) 연약함과 부주의함으로(7) 시험을 받고,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시험에 내어줄 뿐 아니라(8), 우리 스스로 시험을 저항하거나 거기서 헤어나 오거나 시험을 성숙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자원하는 마음도 없어서,(9) 그런 권세 아래 내버려 둬야 당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10). 그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11), 육신을 굴복시키시며(12), 사탄을 제어하시고(13), 만물을 섭리하시며(14), 모든 은혜의 방편을 베푸시고 그것들에 복을 주셔서(15),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때 우리 안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와 그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로 죄의 시험을 받지 않게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16). 만약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된다면, 우리를 그의 영으로 강력히 붙드심으로 시험의 때에도 든든히 서게 하시고(17), 혹 넘어지더라도 거기서 다시 일어나 회복되게 하셔서(18) 그 시험 받음이 도리어 성화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하고(19), 우리의 성화와 구원이 온전하게 되며(20), 사단이 우리 발아래에 짓밟히게 되고(21), 우리가 영원히 죄와 시험과 모두 악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22).

(1)마6:13 (2)대하32:31 (3)대상21:1 (4)눅21:34; 막4:19 (5)약1:14 (6)갈5:17 (7)마 26:41 (8)마 26:69-72; 갈2:11-14; 대하18:3; 19:2 (9)롬7:23-24; 대상 21:1-4; 대하16:7-10 (10)시81:11-12 (11)요17:15 (12)시51:10; 119:133 (13)고후12:7-8 (14)고전10:12-13 (15)히13:20-21 (16)마 26:41; 시19:13 (17)엡3:14-17; 살전3:13; 유1:24 (18)시51:12 (19)벧전5:8-10 (20)살전3:13; 고후13:7,9 (21)롬16:20; 속3:2; 눅22:31-32 (22)요17:15; 살전5:23

문196 주기도문의 절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 주기도문의 절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에서(1)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의 기원을 강화해야 함을 가르칩니다(2). 또한 하나님께만 영원한 주권과 전능함과 영광스러운 탁월함을 돌리는(3) 찬양이 담긴 기도로 우리의 기원을 강화해야 함을 가르칩니다(4). 하나님의 이런 주권과 전능하심과 탁월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5),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게 되고(6),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제목을 이루어 주시도록 잠잠히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7).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며 확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8).

(1)마6:13 (2)단9:4,7-9,16-19; 롬15:30 (3)대상29:10-13 (4)빌4:6 (5)엡

3:20-21; 눅11:13 (6)대하20:6,11 (7)대하14:11 애3:24-26 (8)고전14:16; 계
22:20-21

교리표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문1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1),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2).

(1)고전10:31; 롬11:36; 계4:11 (2)시편73:25-28 벤전1:8; 롬15:13

문2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답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1)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유일한 법도입니다(2).

(1)딤후3:15; 벧후1:20-21; (2)딤후3:16; 시1:2; 119:77,92,111,143; 램15:16

문3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답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1)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2).

(1)딤후 3:15; 요20:31; 요5:39 (2)미6:8; 롬 15:4; 고전10:11

문4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영이신데(1),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2) 영원하시고(3) 변함이 없으십니다(4).

(1)요4:24 (2)욘 11:7-9; 시147:5; 사57:15; 계4:8; 15:3-4; 신32:4; 출 34:6-7; 창17:1 (3)시90:2; 102:27; 100:5; 117:2; 118:1-2 (4)말3:6; 약1:17; 삼상15:29

문5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답 오직 한 분뿐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1).

(1)신6:4; 램10:10; 요17:3; 고전8:4

문6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1).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고 본질이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 하십니다(2).

(1)마28:19; 3:16-17; 고후13:13 (2)요10:30; 5:18; 14:9-10; 1:1-3

문7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하신 바에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1).

(1)엡1:4,5,11; 행2:23; 4:27-28; 엡2:10; 롬9:22-23; 11:36

문8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답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그의 작정을 이루십니다(1).

(1)계4:11; 엡1:11; 단4:35; 욥23:14

문9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답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옛세 동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1) 아무 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2),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3).

(1)히11:3; 시33:6,9; 요1:3; 창1:1,3,6,9 등 (2)계4:11; 골1:16-17 (3)창1:4,10,12 등; 전7:8

문10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1),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셨으며(2),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3).

(1)창1:27 (2)창1:26; 골3:10; 엡4:24 (3)창1:28; 2:15; 시8:6-8

문11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그의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들을 그의 지극하신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시며 다스리는 것입니다(1).

(1)마10:29-31; 히1:3; 시103:19; 느9:6

문12 사람이 지음을 받은 지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어떤 특별한 섭리 행위를 하셨습니까?

답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히 순종하면 얻게 될 생명의 언약을 그와 더불어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죽음의 형벌로 금하셨습니다(1).

(1)창2:16-17; 사43:27; 호6:7; 롬5:12; 고전15:22

문13 우리 시조는 창조함을 받은 그대로의 상태에 계속하여 있었습니까?

답 우리 시조는 그들 자신의 자유 의지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들의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1).

(1)창3:6-8; 고후11:3; 롬5:12; 전7:29

문14 죄가 무엇입니까?

답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것을 어기는 것입니다(1).

(1)요일3:4; 5:17

문15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답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었습니다(1).

(1)창3:6,12-13

문16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답 아담과 세운 언약은 그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에 참여

하여, 그 안에서 범죄하였으며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1).

(1)롬5:12-14,15-19; 고전15:22

문17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답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1).

(1)롬5:12-21; 3:10-18,23

문18 사람이 타락하게 된 상태의 죄성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답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1)과, 원래의 의가 없는 것(2)과, 그의 본성 전체가 부패한 것(이것을 대개 원죄라고 부름(3))과,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4).

(1)롬5:12 (2)롬3:10,20; 시51:5 (3)창6:5 (4)약1:14-15; 마15:19

문19 인류가 타락한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답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였으며(1),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2), 그 결과 현세의 모든 비참함과(3) 죽음(4)과 영원한 지옥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5).

(1)창3:8,10,24 (2)엡2:3; 갈3:10 (3)롬3:16 (4)롬6:23 (5)마25:41

문20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답 하나님은 오직 그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으로 택하시고(1),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 내시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2).

(1)엡1:4-7; 딤후1:2 (2)롬3:23-24

문21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답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1). 그

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니 사람이 되셨으며(2), 그는 과거와 미래에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시며(3),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한 인격이십니다.

(1)딤후2:5-6 (2)요1:14; 빌2:6-7; 골2:9 (3)히7:24-25, 히13:8; 롬9:5

문22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된 몸(1)과 이성 있는 영혼(2)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3) 죄는 없으십니다(4).

(1)요1:14; 히2:14 (2)마26:38 (3)눅1:31,35; 갈 4:4 (4)히4:15; 7:26

문23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리스도는 무슨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1)와 제사장(2)과 왕(3)의 직분을 수행하시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수행하십니다.

(1)행3:22-23 (2)히4:14-15; 5:5-6 (3)마 21:5; 계19:16; 사9:6-7; 시2:6

문24 그리스도는 선지자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1).

(1)히1:1-2; 요1:18; 17:8 ; 벰전1:12; 요15:26

문25 그리스도는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1),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2),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것입니다(3).

(1)히9:14,28; 롬3:25-26 (2)롬5:10 (3)롬 8:34; 히7:25

문26 그리스도는 왕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왕직을 수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시고 정복하시는 것입니다(1).

(1)빌2:9-11; 고전15:25-27; 요18:37; 마28:20; 사32:1

문27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비천한 상태로 탄생하신 것(1)과, 율법 아래 나서서 (2) 현세의 비참함(3)과 하나님의 진노(4)와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것(5)과, 장사 지낸 바 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6).

(1)눅2:7; 빌2:6-8; 고후8:9 (2)갈4:4 (3)사53:3 (4)마27:46 (5)갈3:13 (6)고전 15:4; 행2:24-27, 31

문28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3일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1)과, 하늘에 오르신 것(2)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3)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4)입니다.

(1)고전15:4 (2)행1:9 (3)롬8:34; 엡1:20 (4)행1:11; 17:31

문29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까?

답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은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1).

(1)딤후3:5-6; 고전2:10-12

문30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답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1),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말미암습니다(2).

(1)엡2:8; (2)엡 3:17; 요15:5; 고전1:9; 롬6:5

문31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1)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2),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3),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4), 또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5).

(1)갈3:2,5 (2)행2:37 (3)행26:18 (4)골11:19; 36:26-27 (5)요6:44-45; 엡2:5; 살후2:13-14

문32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현세에서 무슨 은덕을 받습니까?

답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현세에서 칭의(1)와 양자됨(2)과 성화에 참여하고, 그리고 현세에서 이것들과 함께 또는 이것들로 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은덕을 받게 됩니다(3).

(1)롬8:30 (2)엡1:5 (3)고전1:30; 롬8:22

문33 칭의가 무엇입니까?

답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1) 그의 목전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 주시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2).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며 우리에게 전가됩니다(3).

(1)엡1:7 롬4:6-8 (2)고후5:21; 롬3:22,24-25 (3)롬3:22; 5:1; 행10:43; 갈 2:16; 빌3:9

문34 양자됨이 무엇입니까?

답 양자됨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1),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 중에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2).

(1)요일3:1-2 (2)요1:12; 롬8:17

문35 성화가 무엇입니까?

답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전인이 새롭게 되며(1), 점차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됩니다(2).

(1)살후2:13; 엡4:23-24 (2)롬6:12-13

문36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은덕들은 무엇입니까?

답 현세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은덕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1)과, 은혜의 증거(2)와 그 은혜 안에 끝까지 견디는 것 입니다(3).

(1)롬5:1-2,5; 14:17 (2)요1:16; 잠4:18 (3)빌1:6; 요17:15; 롬8:11

문37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습니까?

답 신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1) 즉시 영광중에 들어가고(2),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3).

(1)히12:23 (2)눅23:43 (3)살전4:14; 요5:28

문38 신자는 부활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습니까?

답 부활 때 신자는 영광중에 들어 올리우며(1), 심판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2),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3).

(1)살전4:17 (2)마25:33-34; 10:32 (3)요일3:2; 시16:11; 고전13:12

문39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1).

(1)신29:29; 미6:8; 삼상15:22

문40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답 하나님이 순종을 위하여 처음에 사람에게 계시하신 법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1).

(1)롬 2:14-15; 롬10:5; 신6:4-9

문41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답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1).

(1)출20:1-17; 신5:5-21; 10:4

문42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강령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하신 것입니다(1).

(1)마22:37-40; 신6:5

문43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말씀입니다(1).

(1)출20:2; 신5:6

문44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므로(1),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2).

(1)수24:18; 딤전 1:1 (2)신11:1

문45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1).

(1)출20:3; 산5:7

문46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과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1), 그리고 합당하게 그를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2).

(1)신26:17 (2)마4:10; 시95:6-7; 29:2

문47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1), 곧 그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그리고 그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3).

(1)시14:1 (2)롬1:21; 시 81:9 (3)롬1:25

문48 제1계명에 있는 "내 앞에"란 말씀에서 우리는 특별히 무슨 가르침을 받습니까?

답 제1계명에 있는 "내 앞에"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1)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중히 보시고 매우 노여워하신다는 것입니다(2).

(1)히4:13; 대상28:9; 시44:20-21 (2)신30:17-18

문49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 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하신 것입니다(1).

(1)출20:4-9; 신5:8

문50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 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 경배와 규례를 받아서 준수하고, 그것들을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1).

(1)마28:20; 신12:32; 32:46

문51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1), 그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2).

(1)신4:15-19; 행17:29 (2)신12:30-32

문52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1),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2), 자기에게 드리는 경배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3).

(1)대상 29:11-12 (2)시45:11; 100:3 (3)출34:14

문53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입니다(1).

(1)출20:7; 신5:11

문54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1)과 칭호(2)와 속성(3)과 규례(4)와 말씀과 행사(5)를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6).

(1)시29:2; 마6:9 (2)시68:4 (3)계15:3-4; 말1:14 (4)출15:26 (5)시138:2; 107:21-22 (6)레19:12

문55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무엇이든지 속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1).

(1)말 1:6-7,12; 말2:2; 레19:12; 마5:34-35

문56 제3계명에 붙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에 붙어 있는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그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는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1).

(1)신28:58-59

문57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 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 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 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것입니다(1).

(1)출20:8-11; 신5:12-15

문58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신 때들을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삼는 것입니다(1).

(1)레19:3; 신5:12-14; 사56:2-7

문59 하나님이 7일 중에 어느 날을 매 주간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답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이 그 주간의 일곱째 날을 매 주간의 안식일로 정하셨고(1),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그 주간의 첫 날로 정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2).

(1)창2:2-3; 출16:23; 눅23:56 (2)행20:7; 고전16:2; 계1:10

문60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까?

답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 날 하루를 거룩하게 섬으로 할 것인데,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일과 오락까지 그치고(1), 긴급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제외하고는 그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2).

(1)레23:3; 사58:13; 눅23:56 (2)출16:25-30; 렘17:21-22; 느13:15-22; 눅4:16; 행20:7; 마12:11-12

문61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요구하는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1) 부주의하게 행하거나, 그리고 게으름으로 그 날을 더럽게 하거나 또는 그 자체로서 죄 되는 일을 하거나(2)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해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 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3).

(1)렘22:26 (2)렘23:38 (3)사58:13; 렘17:24,27

문62 제4계명에 붙어 있는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에 붙어 있는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일들을 위하여 한 주간 중 엿새를 허락하시고(1), 제7일은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날임과 (2), 자신이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3), 안식일을 복 주신 것입니다(4).

(1)출31:15-16 (2)레23:3 (3)출31:17 (4)창2:3

문63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1).

(1)출20:12; 신5:16; 레19:3; 엡6:2-3

문64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각자에게 그들의 여러 가지 지위와 상(1)하(2)와 동등한 관계(3)를 따라 존경을 유지하고 의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1)엡5:21-22; 6:1,5,9; 롬13:1; 레19:32 벤전2:17 (2)엡6:4; 5:25; 6:9 (3)롬 12:10

문 65.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들의 여러 가지 지위와 관계에서 각자에게 속한 존경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어떤 일이든 대항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1).

(1)마15:4-6; 엡5:22; 6:1; 롬13:1

문66 제5계명에 덧붙여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에 덧붙여 있는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와 번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단, 이 약속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한에 있어서 그러합니다)(1).

(1)엡6:2-3; 신5:16

문67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1).

(1)출20:13; 신5:17

문68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정당한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1)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2)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1)마10:23; 엡5:28-29 (2)시82:3-4; 왕상18:4

문69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1)이나 우리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거나(2) 무엇이든지 그런 경향이 있는 것들입니다(3).

(1)행16:28 (2)창9:6; 요일3:15 (3)마5:22; 잠24:11-12; 출21:18-32; 신24:6

문70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1).

(1)출20:14; 신5:18

문71 제7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마음(1)과 말(2)과 행위(3)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4).

(1)마5:28 (2)엡5:4 (3)히13:4; 딤후2:22 (4)살전4:4-5; 고전7:2-3,5

문72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순결하지 못한 생각(1)과 말(2)과 행동(3)입니다.

(1)마5:28; 15:19 (2)엡5:3-4 (3)히13:4; 딤후2:22; 고전6:9-10

문73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1).

(1)출20:15; 신5:19

문74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얻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1).

(1)엡4:28; 잠12:27; 27:23; 13:4 ; 딤펢전 5:8; 레25:35

문75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저해할 소지가 있는 일입니다(1).

(1)엡4:28; 잠21:6; 약5:4

문76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1).

(1)출20:16; 신5:20

문77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1)또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시키라는 것인데(2), 특히 증언할 때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3).

(1)속8:16 (2)렘9:3-6 (3)잠14:5,25

문78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왜곡하거나(1) 혹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입니다(2).

(1)잠19:5; 시12:3; 롬3:13 (2)잠6:16-19; 골3:9; 눅3:14; 시15:3; 레19:16

문79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10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한 것입니다(1).

(1)출20:17; 신5:21 (눅12:1(5))

문80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해 완전히 만족하며(1), 우리 이웃과 이웃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올바르게 우호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2).

(1)히13:5; 딤후6:6 (2)롬12:15; 레19:18

문81 제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상태에 대한 모든 불만(1)과, 우리 이웃의 재산에 대해 시기하거나 불평하는 것(2)과, 이웃의 소유에 대한 모든 부당한 충동이나 애착(3)입니다.

(1)딤후6:8 (2)눅12:15; 시37:7; 전10:20 (3)삼하12:9; 왕상 21:4

문82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타락한 후로는 어떤 사람도 현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1) 날마다 생각(2)과 말(3)과 행위(4)로 계명을 범합니다.

(1)왕상8:46; 요일1:8-10; 롬3:9-10; 전7:20 (2)창8:21 (3)약3:1-2 (4)롬 3:12,23

문83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가 동등하게 악합니까?

답 어떠한 죄는 그 자체에 있어서와 여러 가지 악화시키는 요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들보다 더 악합니다(1).

(1)겔 8:6; 시78:17,32,56; 요19:11; 눅12:10; 히10:29

문84 죄마다 받는 보응은 무엇입니까?

답 죄마다 받는 보응은 현세와 내세에서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1).

(1)엡5:6; 롬6:23; 갈3:10; 애3:39; 마25:41

문85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1)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2)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덕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방편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입니다(3).

(1)행16:31; 20:21; 요3:18 (2)행11:18 (3)행2:38; 빌2:12; 벧후1:10; 딤후 4:16

문86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인데(1),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에 제시된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2).

(1)히10:39; 엡2:8 (2)요1:12; 빌3:9; 갈2:16

문87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인데(1),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2),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며(3),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4).

(1)행11:18 (2)행2:37-38 (3)욥2:13; 행26:18; 시119:59; 롬6:18; 겔36:31

(4)롬1:5; 16:26

문88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보통의 방편은 그가 정하신 것들인데(1),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2).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하여 그 택하신 자들에게 효력 있게 하셨습니다(3).

(1)마28:19-20; 고전11:23 (2)막16:15-16; 고전11:23-26; 행1:14; 행6:4 (3) 고전3:6; 행 2:42,46-47

문89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효력 있게 됩니까?

답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을 설득하고 회개케 하시며(1),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2) 그들을 거룩함과 위로로 세우십니다(3).

(1)시19:7-8; 느8:8; 약1:21 (2)롬1:16-17; 10:9 (3)행20:32; 롬15:4

문90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습니까?

답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게 되기 위해 우리는 부지런함(1)과 준비(2)와 기도(3)로 말씀에 주목해야 하며, 믿음(4)과 사랑(5)으로 받아야 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6)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여야 합니다(7).

(1)잠8:34 (2)벧전2:1-2[하]; 눅8:15[중] (3)시119:18 (4)히4:2; 롬1:16 (5)벧전 1:8 (6)시119:11 (7)약1:25

문91 성례는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까?

답 성례가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가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1),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역사하는 그의 영의 역사로 됩니다(2).

(1)벧전 3:21; 마 3:11; 고전3:6-7 (2)딤후3:5; 요1:33

문92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인데(1), 그 안에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덕들이 감각적인 표로써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2).

(1)마28:19; 고전11:26 (2)골2:11

문93 신약의 성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신약의 성례에는 세례(1)와 성찬(2)이 있습니다.

(1)마28:19; 행10:47-48 (2)마26:26-28; 고전11:23-26

문94 세례가 무엇입니까?

답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1) 씻는 성례인데,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것과 은혜 언약의 모든 은덕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의미하며 인치는 것입니다(2).

(1)마28:19 (2)갈3:27; 롬6:3-4

문95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답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1). 그러나 보이는 교회의 회원들의 유아들은 세례 받아야 합니다(2).

(1)행2:41; 10:47 (2)창17:10; 골2:11; 행2:38-39; 고전7:14

문96 성찬이 무엇입니까?

답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1).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 영적으로 양육 받고 은혜 안에서 성

장하게 됩니다(2).

(1)고전 11:23-26; 눅22:19-20; 마26:26-28 (2)고전10:16

문97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지식(1)과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그들의 믿음(2)과 회개(3)와 사랑(4)과 새로운 순종(5)이 자신들에게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혹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여 자기들에게 돌아올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6).

(1)고전11:28-29 (2)요6:53-56; 고후13:5 (3)속12:10[중]; 요일1:9 (4)갈5:6; 고전14:1; 요일3:11; 4:20 (5)롬1:5; 16:26; 6:12-13 (6)고전11:27-32

문98 기도가 무엇입니까?

답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1) 우리의 소원(2)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3)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4)과 그의 자비에 대해 감사함으로(5) 인정하는 것이 함께 하여야 합니다.

(1)요일5:14 (2)요15:7; 시10:17 (3)요16:24 (4)단9:4; 요일1:9 (5)빌4:6

문99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관한 지침으로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전체 말씀이 기도에 관한 지침으로 사용되지만(1),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태인데,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불립니다(2).

(1)딤후3:16-17; 요일5:14 (2)마6:9-13

문100 주기도문의 머리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한 주기도문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처럼(1),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또 기꺼이 도우려 하시는 하나님(2)께 거룩한 경외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갈 것(3)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4).

(1)롬8:15; 갈4:6 (2)마7:11; 눅 11:13 ; 시18:1-2 (3)시145:19; 엡3:12 (4)엡 6:18; 속8:21; 담전2:1-2

문101 첫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첫째 기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영화롭게 하도록 해 주실 것과(1),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섭리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2).

(1)고전 10:31; 시67:3; 살후3:1 (2)롬11:36; 계4:11; 골3:17

문102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 "나라이 임하옵시며"라는 둘째 기원에서는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기도하며(1), 은혜의 나라가 흥왕케 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로 들어와서 그 안에 머무르도록 기도하며(2),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3).

(1)시68:1; 롬16:20 (2)살후3:1; 롬10:1 (3)벧후 3:12-13; 계22:20

문103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우리가 범사에 그의 뜻을 기꺼이 알고(1)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2)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3)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시119:18; 엡1:17-19 (2)마26:39,42; 행21:14 (3)시103:20-21

문104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현세에 합당한 몫을 우리가 받고(1), 또 그

것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할 것을 기도합니다(2).

(1)딤후6:6-8 (2)잠10:22; 30:8-9; 딤후4:4-5

문105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1).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격려 받는 것은 우리가 그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2).

(1)시51:1-2,7,9; 요일1:9 (2)마18:23-35; 마6:14-15

문106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게 하(1) 또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2).

(1)마26:41; 시19:13; 요17:15 (2)고전10:13

문107 주기도문의 절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절어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것과(1),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돌리면서 그를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2).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3).

(1)단9:9,18-19 (2)대상29:11-13 (3)계22:20-21; 고전14:16

관리표준

교회예배

교회정치

교회권징

관리표준

교회예배

교회정치

교회권징

제1장 교회와 예배

제1조 교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며, 권징을 정당하게 집행하여 그 정통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2조 예배

1.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비록 성도가 개인적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으나, 약속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방식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르며 마땅하다.

2. 예배는 본질적으로 언약적이다. 언약의 쌍방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다. 언약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에 오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이 있다. 초청, 사죄의 선포, 말씀, 성례, 축도 등이 전자에 해당하고, 회개, 찬양, 기도, 헌금 등이 후자에 해당한다.

제2장 주일 성수

제3조 주일 성수의 의무

주일성수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 날은 성경의 교훈에 따라 거룩히 지

켜야 한다. 주일은 예배와 안식에 방해되는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하며 세상 염려와 세속적 혹은 쾌락적 행동을 삼가야 한다.

제4조 주일 공동회집

주일은 공동회집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제5조 주일 준비

주일은 거룩히 지키되 사전에 성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충분히 준비하여 예배에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도록 해야 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여 예배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에 일체의 거리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주일에 해야 하는 일

주일에는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연구, 묵상, 기도, 찬송, 전도, 구제 등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 간에 교제를 힘써야 한다.

제3장 주일 예배

제7조 주일 예배 참석자의 자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1. 예배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여 예배 준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
2. 예배당에 들어가면 자리에 앉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한 신뢰를 고백한다.
3. 예배 인도를 맡은 목사의 사역과 예배의 모든 순서가 경건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하되, 특히 설교를 경청하고 묵상하여 삶에서 열매 맺기를 간구한다.

다.

4. 예배에서 교회의 신앙 안에서의 하나됨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며, 참석자와 결석한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5.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삼가고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의 마음, 믿음의 순종과 감사, 그리고 사랑과 온유함이 풍성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준비해야 한다.

제 8 조 예배의 요소와 순서

예배의 요소는 아래와 같고 순서는 당회가 정한다.

- 예배초청과 축복의 인사
- 죄의 공적고백과 사죄 선포
- 신앙고백
- 성경봉독
- 말씀선포
- 성례
- 기도
- 찬송
- 헌금
- 서약
- 시별과 해별의 공포
- 금식과 감사
- 축도(강복선포)

제 9조 신앙고백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로 모였을 때 본 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다고 인정된 신앙 고백서(사도신경, 니케아신조, 아타나시우스신조, 웨스트민스터신앙

고백과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로 공동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제10조 성경 봉독

예배 중의 성경 봉독은 목사와 회중이 정해진 본문을 함께 교독하거나 설교를 위한 본문을 읽는 것이다. 설교를 위한 본문은 설교와 함께 하나님께서 회중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목사나 혹은 정한 자가 봉독한다. 교독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감사, 회개 등의 고백이며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교독문으로 함이 적합하다.

제11조 찬송

1. 공동의 찬송

찬송은 구원받은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며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히 13:15) 성도들은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곡조에 맞추어 마음을 다해야 하며, 연습을 충분히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온 교회가 다 함께 불러야 한다.

2. 찬송의 횡수

예배시의 찬송의 횡수와 시간은 목사의 재량에 속하되 전 교인들이 다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한다.

3. 특별 찬양

예배 중에 찬양대나 정한 사람이 준비한 찬양을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제12조 기도

기도는 감사와 함께 예배의 특별한 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가 받아들여지려면 각자가 이해, 존경, 겸손, 열성, 신앙, 사랑과 인내로써,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의 뜻에 따라 회중이 사용하는 언어로 해야 한다.

1. 기도의 준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기도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목사는 반드시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관한 서적을 연구 묵상하며 기도의 능력과 정신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며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언어의 선택에도 유념하며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2. 모든 예배의 기도자도 1 항과 같이 경건하고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3. 기도의 내용

공식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위를 의식하여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은혜로운 임재와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일체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권고하시는 중에 나타내신 일과, 성경말씀 가운데 분명하고 완전하게 나타내신 영광과 그의 완전하심을 고백해야 한다.

(2) 감사

하나님이 주신 각양 은혜를 감사하되 일반은혜와 특별은혜, 신령한 은혜와 육신적인 은혜, 단체적인 축복과 개인적인 축복을 아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생의 소망과 성령의 은혜에 크게 감사해야 한다.

(3) 자복

원죄와 자범죄를 자복하되 죄의 근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 언어와 행동의 죄, 은밀한 죄, 참람한 죄, 우연히 범한 죄, 습관적인 죄 등 각종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4) 간구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사죄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화목, 그 은혜로 인한 즐거운 생활, 성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능력, 고난 중에서의 권고와 안위의 은총, 험악한 땅위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 자신의 신령한 생활을 보호하

며 항상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의 부족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고 그 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과 자기 백성을 위로하심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5)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기도하는 사람은 전 인류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모든 인류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실 것과 하나님의 교회의 평화와 성결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들과 각국에 산재한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과 본 교회와 교제하는 각 회와 병자와 어려움에 처한 사람, 궁핍한 자, 나그네, 감옥에 갇힌 자, 여행자, 공무원 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4. 설교 후의 기도

설교 후의 기도는 설교한 내용에 관계되는 것을 들어 간략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3조 헌금

국내외 복음사업을 위하여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되 그 순서는 예배시간 중에 편리한 대로 택해야 한다.

1. 헌금의 의무

모든 신자는 예배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의 일부분으로서 헌금을 드려야 할 의무를 가진다.

2. 헌금의 의의와 종류

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십일조와 주일헌금으로 구분되 십일조와 주일헌금은 당연한 의무이며 그 외 감사헌금, 기타 헌금 등은 자유로운 헌납이 되어야 한다.

3. 십일조의 의무

모든 성도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소독의 십일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십일 조는 마땅히 소속한 본 교회에 드려야 한다.

제14조 축도(강복선포)

예배의 모든 순서는 목사의 축도(강복선포)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후 13:13; 히 13:20-21; 엡 3:20-21; 살후 2:16-17; 민 6:24-26)

제4장 말씀의 선포

제15조 말씀 선포자의 자질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이므로 모든 행위가 모범이 되어야 하며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도 존경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16조 성경 봉독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에 대한 정확 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므로 봉독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신의 입장을 바르게 인식하고 엄숙히 해야 한다. 목사나 목사의 허락을 받은 자가 성경을 봉독할 때 청중은 일체의 잡념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과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야 한다.

제17조 설교

설교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니 목사는 전심전력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해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설교 본문의 선택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한 부분을 해석하고 본문을 강론하여 그 진리를 가르치며 신자의 본분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는 목사의 재량과 상황에 따라 정하되 구약과 신약을 균형있게 선택해야 한다.

2. 설교의 방법

목사는 항상 기도와 묵상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복음과 진리가 순수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하며 언어구사는 성경에 합당하고 청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할 것이며 자신의 학문과 재능을 자랑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설교 시간의 배정

목사는 설교의 시간을 예배의 다른 순서가 지장을 받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적절하게 배정해야 한다.

4. 설교는 담임목사 혹은 당회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제5장 성례

제18조 성례의 종류와 의미

기독교의 성례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세례와 성찬뿐이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교회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인데, 은혜언약 안에 있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확인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며 증진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그들 상호 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귀히 간직하게 하며, 그들을 은혜언약 밖에 있는 이들과 구별하게 한다.

제19조 세례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예식으로서 성경의 가르침

을 따라 물로써 시행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언약의 모든 은혜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로 약속함을 확인하며 공포하는 것이다. 세례는 성인세례와 유아세례가 있으며, 유아세례는 부모의 서약으로 시행하되 성년이 된 다음에는 자신의 신앙고백과 입교식을 통해 세례교인으로 확정된다.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

1. 성인세례

(1) 세례를 줄 수 있는 자

세례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가 행하여야 한다

(2) 세례 받을 자의 자격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와 주이심을 시인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

(3) 세례의 장소

세례는 주일 예배시간에 모든 회중을 증인으로 하고 베풀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중환자나 군대 또는 교도소 등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회의 결의 또는 목사의 판단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유아세례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4) 세례의 교육과 문답

세례를 베풀기 전에 당회는 세례받을 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문답으로 신앙고백을 확인해야 한다. 신자 개인의 신앙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에 근거해야 하기에 당회는 세례 문답 전 이에 근거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5) 세례식

1) 서약 : 세례를 베풀 때에는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하게 한다.

① 여러분(그대)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합니까?

- ②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 ③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합니까?
- ④ 구약과 신약 성경이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배우고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까?
- 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2) 세례의 시행

서약을 마친 다음 목사는 물을 그 머리 위에 부리면서 "주 예수를 믿는 (○○○) 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회중도 다 함께 아멘 하여야 한다.

3) 공포

세례를 베푸는 후 목사는 기도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하여야 한다.

"(○○○)씨는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교회의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2. 유아세례

(1) 문답

유아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부모는 그 뜻을 목사에게 알리고 부모 중 1인 혹은 양육권자가 그 세례를 받을 아이를 정한 시간에 당회 앞으로 데리고 와서 문답을 받아야 한다.

(2) 권면

목사는 유아세례를 받기 원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양육하고 부모가 친히 신앙생활에 모범이 될 것을 권유하여야 한다.

(3) 세례식

1) 서약 : 부모 중 1인 혹은 양육권자가 당회 앞에서 확실한 약속을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일 예배 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을 하게 한다.

① 여러분(그대)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②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③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합니까?

2) 세례의 시행

서약을 받은 부모의 자녀들에게 목사는 성인세례와 꼭 같은 방법으로 그 아이 머리 위에 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딸) (○○○)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면 회중도 다 함께 아멘 하여야 한다

3) 공포

유아세례를 베푼 후 목사는 기도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하여야 한다. "(○○○)는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교회의 유아세례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제20조 성찬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이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그들이 주님과 갖는 연합과 교제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나누는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새롭게 한다.

1. 성찬식의 횡수

성찬의 횡수는 당회가 정하되 떡을 세우기에 합당한 대로 정하며 예배시간에 목사의 집례로 시행한다.

2. 성찬식의 예고

성찬식을 시행하려 할 때는 적어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공식 광고를 해야 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합당한 자세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3. 성찬식의 참여자의 자격

성찬식에 참여할 자는 세례교인(입교인)이어야 한다. 치리회에서 수찬정지의 시별하에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고, 타 교회 교인의 경우 해 당회가 그 신앙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할 수 있다.

4. 성찬식의 진행

성찬식 준비: 성찬상은 먼저 깨끗한 포장으로 단정하게 덮고, 신자들의 자리를 정돈하고 성찬 위원들을 각각 지정된 자리에 앉게 한 후 목사가 성경말씀을 해석 권면한다.

(1) 떡을 나눔: 성찬위원들을 세우고 기도한 다음 떡을 나누게 하되 성찬 위원들은 교인들에게 떡을 나누어 준 다음 목사를 통하여 떡을 받는다.

(2) 잔을 나눔 : 떡을 다 나누어 준 다음 혹 받지 못한 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목사는 다시 떡을 나누어 줄 때와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설명하고 성찬위원들로 하여금 포도주가 담긴 잔을 나누어 주도록 한다.

5. 성찬식 참여자들의 태도

성찬에 참석한 신자들은 성령의 역사와 감화 아래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감

사하는 동시에 그와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와 그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6. 성찬식의 마침

성찬식이 끝나면 찬송을 부르고 목사의 축복하는 기도로 마친다.

제6장 입교

제21조 입교

1. 입교의 의미

교인에게서 출생한 자녀로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는 교회의 권고와 치리 하에 있고, 교회와 부모는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교리 문답을 익히게 하며, 기도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성년이 된 다음에는 그들이 출생하면서부터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을 알게 하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유아세례 시에 부모가 대신 고백했던 신앙이 이제는 자신의 신앙인 것을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입교라 한다.

2. 입교의 고백

유아세례 받은 자가 당회 문답에 합격하고 성찬에 참여하려 할 때에는 정식으로 교회 앞에서 자기의 신앙고백과 입교식을 통해 세례교인으로 확정된다.

3. 입교의 서약

입교 예식을 행할 때에는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을 하게 한다.

(1) 여러분(그대)은 어렸을 때에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2)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인정합니까?

(3)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죄인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4)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합니까?

(5)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4. 공포

서약이 있는 후 목사는 기도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해야 한다.

"(○○○)씨는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제 7장 절기, 감사일 및 금식일

제22조 절기와 감사일

교회는 구원 역사를 기념하고 소망하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 개 교회 형편에 따라 절기와 감사일을 정하여 지킬 수 있다.

1. 교회의 구속사적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등이 있다.
2. 감사일은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있다.
3. 성경적이지 않거나 구원 역사와 관련이 없는 절기를 만들거나 시행해서는 안 된다. 단, 총회가 전도와 복음사역을 위해서 결의할 경우 한 주간을 기

넘주간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금식일

교회나 노회, 총회가 주도하거나, 국가 또는 교인의 가정에 극히 어려운 일이 발생했거나 목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당회는 금식기도 일정을 정하고 이를 교회 앞에 공포할 수 있다.

1. 금식할 때 주의해야 할 일

금식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경의 원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해야 하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되 개인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금식일에 해야 할 일

교회에서 공포한 금식일에는 육신의 일을 절제하며 공적인 예배로 모여야 하며, 당회(목사)는 금식일을 지키는 이유와 형편을 설명하도록 한다. 또한, 하루 중 가능한 많은 시간동안 성경을 읽으며, 적절한 찬송을 부르고 기도 하면서 보내도록 한다.

제8장 기도회

제24조 기도회의 정의

기도, 찬송, 설교와 헌금으로 진행되는 주일예배를 제외한 일체의 모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기도회라 한다.

제25조 기도의 의무

교회에서 회집하는 기도회를 참석하는 것과 개인이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다. 특히, 개인의 은밀한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것으로 사람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엄숙히 자신을 살피며, 진실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제26조 기도의 종류

1. 수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교회역사에서 길이 전승된 유익한 기도회이며, 한 주간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중에 저지르기 쉬운 과오와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회이니 모든 신자들이 다 함께 힘써야 한다.

2.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신자가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모여 경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자 복된 삶을 위한 가장 훌륭한 방법 이므로 권장되어야 한다.

3. 가정 기도회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회를 가지는 것은 가정의 신앙과 화평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신앙 교육에도 적합하다. 가정마다 특정한 시간에 성경을 함께 읽고, 제목에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회로 모이는 것에 힘써야 한다.

4. 기타 기도회

교회는 필요에 따라 여러 종류(금요, 구역, 철야, 심야, 중보 등)의 기도회를 가지기 위해 회집할 수 있다.

제27조 기도의 인도

기도할 목적으로 모이는 모든 집회는 당회의 지도를 따라야 하며,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형편을 따라 특별한 장소에 모일 수도 있으나 교역자가 인도하거나 혹은 당회에서 선정한 사람이 인도해야 한다.

제28조 특별집회 및 참여

1. 교회가 영적 유익과 성도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특별한 집회(수련회, 부흥집회 등)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2. 교회의 모든 특별한 집회의 시간과 내용과 방법은 당회가 정한다.
3. 다른 교회나 교파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므로 반드시 담임목사나 당회의 허락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9장 교회학교

제29조 교회학교의 명칭

교회에서 시행되는 교육기관은 세계 기독교 역사와 고신장로교회의 전통에 따라 교회학교로 칭한다.

제30조 교회학교 교육 이념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들(Westminster Standards -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교회 예배, 교회 정치 및 교회 권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한다.

제31조 교회학교 교육 목적

성경을 가르쳐,

1.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며 섬기게 한다. (예배적 인격)
2.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도우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한다. (인화적 인격)

3. 자기의 존재 의의와 특별한 사명을 자각하여 자기가 선 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한다. (문화적 인격)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육성하여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견비하게 한다.

제32조 교회학교의 예배

1. 모든 세대는 주일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드림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교회 형편에 따라 교회학교 부서별로 따로 예배 드리게 되었을 경우 당회의 지도하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33조 교회학교의 편제

교회학교는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 편성하되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등으로 구분한다. 중등부, 고등부와 대학부는 학생신앙 운동(SFC/ Student for Christ)이라 칭한다.

제34조 교회학교의 책임자

교회학교의 교장은 개체교회 담임목사(담임교역자)로 한다.

제35조 교회학교의 교사

교회학교의 교사는 세례교인 중에서 신앙에 모범이 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라야 하며 노회와 총회의 교육을 받도록 권장한다.

제36조 교회학교의 교재

개혁주의 신앙을 기초로 한 교재를 선정하여 사용한다.

제10장 혼례와 장례

제37조 혼례

1. 혼례: 혼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언약적, 성적 그리고 출산에 있어 평생 연합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이는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 사이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동성, 일부 다처 또는 비독점적 다자연애 등의 관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확인한다. 또한 결혼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엄숙한 언약이다. 그러나 혼례는 성례는 아니다.
2. 혼례의 주례: 성도들이 마땅히 주 안에서 혼인할 것이며 혼례에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교역자로 주례하게 함이 옳다. (단, 주례는 세례교인(입교인)으로 한다.)
3. 혼인의 대상 : 혼인은 일남 일녀로 하고 성경에서 금한 친족 범위 안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4. 부모의 승낙 : 혼인은 남녀가 각각 상당한 연령에 도달하여야 하며, 부모 혹은 후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혼례의 예고 : 혼례는 공적 성질을 가진 것이며, 국민과 사회의 복리와 가족상의 행복과 종교상의 명예에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혼례를 거행할 일을 여러 날 전에 작성하고 널리 예고해야 한다.
6. 증거의 확보 : 주례자는 이 일에 깊이 유의하여 하나님의 법을 범하거나 국가 법률에 저촉됨이 없도록 하며, 가정의 화평과 안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 혼인에 반대되는 것이 없다는 쌍방의 증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7. 혼인증서의 발급 : 혼인은 충분한 증인들 앞에서 행할 것이며, 주례자는 해당 행정부로부터 발부받아 온 결혼증서에 증인들과 함께 서명을 하여 발부할 것이다.

8. 혼인명부의 기록 : 목사는 혼인한 자의 성명과 날짜를 혼인명부에 자세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9. 혼례의 정당성과 타당성: 교회는 정부에서 인가하는 두 사람의 연합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 연합이 오직 현 교단 헌법에 나타난 결혼의 정의와 일관성이 있을 경우에만 원칙 기준에 맞는 진정한 결혼이라 정의할 것이다. 결혼 주례와 결혼식을 위한 예배당 사용에 관해서 성경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일은 이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38조 장례

1. 위로 : 장례는 찬송을 부르고 합당한 성경을 낭독하고 설교를 하고, 특별히 비참한 일을 당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며 저희의 슬픔이 변하여 영원한 유익이 되게 하며, 위로를 받도록 해야 한다.
2. 소망에 대한 확증 : 장례는 주례목사의 의견대로 하되 그 중요한 뜻을 잃지 말아야 하며 생존자를 위로하는 데 힘을 쓰고 신앙 없이 생활하다가 별세한 자에 대한 소망은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장 기타 예배 모범

제39조 예배당의 헌당식

1. 헌당식의 의미 : 예배당의 헌당식은 신축된 예배당이 완공되고 일체의 부채를 정리한 다음 온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다.
2. 헌당식의 주례 : 헌당식의 주례는 해 교회의 당회장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헌당식의 절차 : 헌당식의 절차는 해 당회에서 실정에 맞도록 작성하되 건축위원회 경과보고와 열쇠봉헌의 순서를 삽입할 것이다.

4. 헌당식의 공포 : 헌당식은 주례자의 공포로 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되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야 한다.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교회 교우 일동은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제40조 목사의 임직식

목사의 임직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약 : 노회장은 목사위원 중 임직위원을 선정하고 설교 후 취지를 설명하고 임직 받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서약하게 한다.
 - (1) 구약과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한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 (2) 본 장로회 교리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은 구약과 신약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릅니까?
 - (3) 본 장로회 관리표준인 교회 예배, 교회 정치, 교회 권징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 (4) 주 안에서 동역자된 형제들에게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 (5)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진심으로 서약합니까?
 - (6) 어떤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여 근실히 사역하기로 서약합니까?
 - (7) 신자이며 겸하여 목사가 될 것이므로 자기의 본분과 타인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서 경건한 모범을 보이도록 서약합니까?

2. 안수 : 노회장은 서약을 마친 후 임직 받는 자로 무릎을 꿇게 하고, 사도의 규례에 따라 임직위원과 노회 대표자들의 안수와 함께 노회장이 기도하고 악수례를 행한다. (갈2:9; 행1:25)
3. 공포 : "(○○○)씨는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노회 목사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4. 권면 : 노회장 또는 임직위원이 임직받은 목사에게 권면(딤후 4:1-2)하고, 노회는 이 사건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41조 목사의 위임식

목사의 위임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약 :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위임 위원으로 예식을 거행하게 할 것이요, 설교 후에 위임받는 목사와 그 교회에 각각 다음과 같이 서약하게 한다.
 - (1) 위임받는 목사에게(거수로)
 - 1)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교회의 목사직을 담임하기로 서약합니까?
 - 2) 이 직분을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이를 본심으로 서약합니까?
 - 3)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성으로 목사의 직무를 다하고, 범사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서약합니까?
 - (2) 교인에게(거수로) : 본 교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서약하게 한다.
 - 1) (○○○)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씨를 본 교회 위임목사로 받으십니까?

- 2)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를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 3)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 4) 여러분은 (OOO)씨가 본 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약속한 그 생활비를 어김없이 지급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2. 공포 :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OOO)노회의 권위로 (OOO)씨가 본 교회 위임목사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3. 권면 : 위임 위원이 위임목사와 교회에게 각각 권면한 후 축도로 마친다.

제42조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식

장로, 집사, 권사의 임직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약 : 당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임직 위원으로 예식을 거행하게 할 것이요, 설교 후에 당회장은 취지를 설명하고, 임직 받는 자와 그 교회에게 각각 다음과 같이 서약하게 한다.
 - (1) 임직 받는 자에게(거수로)
 - 1) 구약과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 2) 본 장로회 교리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은 구약과 신약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까?
 - 3) 본 장로회 관리표준인 교회 예배, 교회 정치, 교회 권징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 4) 본 교회 장로(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

실한 마음으로 본 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5)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서약합니까?

(2) 교인에게(거수로)

- 1) (○○○)교회 회원들이여 (○○○)씨를 본 교회 장로(집사,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정치에 가르친 바를 따라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고 복종(집사와 권사에게는 "협조"로)하기로 서약합니까?
2. 안수: 당회장은 서약을 마친 후, 임직 받는 자로 무릎을 꿇게 하고, 임직 위원과 전 당회원의 안수와 함께 당회장이 기도하고 악수례를 행한다. (권사는 안수하지 않는다.)
3. 공포 :“(○○○)씨는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교회 장로(집사, 권사)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4. 권면 : 임직 위원이 임직자와 교회에게 각각 권면한 후 축도로 마친다.

관리표준

교회예매

교회정치

교회권징

제1장 교회 정치 원리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교회 정치원리 8개조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그가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그 말씀에 위반되거나 탈선되는 사람의 명령이나 교리를 받지 않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종교에 관계되는 각 항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자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1. 전조에서 설명한바 개인 자유의 일례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세례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2. 교회는 국가의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 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며 동일시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제3조 진리와 행위

진리는 선행의 기초이다.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에 있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하심과 같다. 진리와 거짓이 평등하다고 하거나,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무관하다 하는 이 말들보다 더 패역하고 모순된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 진리와 의무는 서로 연결되어 분리될 수 없다.

제4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그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세우사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자로 하여금 진리와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징을 시행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 중 거짓 교리를 신앙하는 자나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전 교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성경이 교훈한 법규대로 행할 것이다.

제5조 직원의 자격

제3조의 원리에 의거하여 교회가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자를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사람에 따라 성격과 주의가 다르고, 교회규칙에 대한 의견이 다를지라도, 교우와 교회가 서로 관용하여야 한다.

제6조 직원의 선거

교회 직원의 성격, 자격, 권한 및 선거와 위임의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어떤 회의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제7조 교회의 처리

치리권은 전 교회로서나 그 선정된 대표자로 행사함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전달하는 것뿐이다. 곧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이므로 어느 교회의 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근거한다.

제8조 교회의 권징

교회가 이상 각조의 원리를 힘써 지키며 교회의 영광과 복을 증진할 것이니 교회의 권징은 세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에서 온 것이므로

반드시 그 성격이 순전히 도덕적이고 영적이어야 하며, 도덕성과 신령성의 것이요, 국법에 의한 시벌이 아니므로, 그 효력은 정치의 공정과 모든 사람의 공인과 만국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고와 은총에 있다.

제2장 교회

제9조 교회의 의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회이다.

제10조 교회의 구별

교회에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고, 보이는 교회는 전 세계에 산재한 교회이다.

제11조 교회의 회집

지상의 모든 교인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므로 각 처소에 개체 교회를 설립하여 회집한다. (갈1:22; 계1:4-20)

제12조 개체 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언약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대로 연합하고 제정된 교회 정치에 복종하며,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개체 교회라 한다.

제13조 개체 교회의 분류

개체 교회는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로 분류한다.

1. 조직교회는 당회에 의해 처리되는 개체 교회이다.
2.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는 교회로서,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에 의해 처리되는 개체 교회이다.

제14조 개체 교회의 설립

1. 예배장소를 준비하고 일정한 교인들이 회집하다가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설립기준: 개체 교회 설립에 필요한 교인(18세 이상)의 수는 8인 이상이어야 한다.
3. 구비서류: 개체 교회의 설립 및 분립 청원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1) 설립(분립)교회의 명칭과 소재지.
 - (2) 설립(분립) 일자.
 - (3) 교인들이 서명한 명단.
 - (4) 성인 수와 가정 수.
 - (5) 어린이, 청소년 등 성인 이외의 교인 수.
 - (6) 예배당 상황(대지와 교회당 크기 및 계약서 또는 권리증 사본 등).
 - (7) 교회의 재정 상황.
 - (8) 당회와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분립의 경우).
4. 개체 교회의 설립 및 분립청원서는 해당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제15조 개척교회의 관리

1. 동일한 노회지역의 개척교회는 그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관리하고, 교회 설립 허락을 받은 후에는 노회에서 관리한다.
2. 다른 노회 지역 내의 개척교회 관리는 1항에 준한다. 단, 교회 설립 허락은 개척된 교회 목사의 노회 소속 문제가 선결된 후 개척된 교회 소속 지

역 노회에 한한다.

3. 개척된 교회가 조직교회가 될 경우 담임목사는 위임목사가 된다.

제16조 개체 교회의 분립과 합병

1. 한 개체 교회가 분립하고자 할 때와 두 개 이상의 개체 교회가 합병하고자 할 때는 그 교회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개체 교회 설립 및 분립 청원을 받은 노회는 설립 또는 분립될 곳의 형편과 여건을 소상하게 살펴 합당하면 허락하고, 당회장을 파송한다.
3. 개체 교회의 합병 절차는 각 청원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가 결의하고, 그 회의록 사본과 각 청원 교회 회원들이 연서 날인한 청원서를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제17조 개체 교회의 폐쇄

1. 개체 교회를 폐쇄하고자 하면 그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가 기능을 발휘 할 수 없을 경우 시찰회의 청원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개체 교회의 폐쇄는 그 교회의 청원이 있거나 또는 청원이 없어도 노회가 그 교회의 폐쇄를 필요로 인정할 때, 이를 결의하고 위원을 파송하여 제반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그 교회를 개체 교회 명부에서 삭제하고, 교인들의 교적은 노회의 지도로 관할 시찰회에 맡겨 관리한다.
3. 폐쇄교회의 자산에 대한 교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교회의 잔여 자산의 처분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개체 교회의 소속 노회 변경

1. 개체 교회가 소속 노회를 변경하고자 하면, 관계 양 노회의 결의로 한다.
2. 총회가 설정한 지역 분할 또는 노회 분립에 따른 소속 노회 변경 외에,

개체 교회가 소속 노회를 변경하고자 하면 그 당회에서 결의하고 당회록 사본과 공동의회 결의서 및 사유서와 당회원이 연서 날인한 청원서를 관계 양 노회에 제출한다.

제19조 개체 교회의 변경

1. 개체 교회의 명칭과 주소 변경 : 개체 교회가 그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면 공동의회에서 결의하고 관할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개체 교회가 설립 허락을 받은 후, 교인수가 성인 8인 미만의 상태로 2년이 경과되면 그 교회 관리는 노회가 하고, 교회 설립의 여건이 회복되면 개체 교회로서의 지위가 회복된다.

제20조 다른 교단 교회의 가입

1. 다른 교단 교회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면, 그 지역 관할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가입 절차 : 다른 교단 교회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그 지역 관할 시찰회를 경유, 노회에 청원한다.
 - (1) 전에 소속되었던 교단과 교회의 명칭 및 소재지.
 - (2) 교회 연혁.
 - (3) 교인 수(원입, 세례, 입교, 유아세례, 교회학교 학생 수).
 - (4) 교역자 현황.
 - (5) 제직 현황.
 - (6) 예배당 상황(대지와 교회당 크기 및 계약서 또는 권리증 사본 등).
 - (7)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및 교인 서명날인.
 - (8) 교회 가입 신청서.
3. 가입 허락 : 다른 교단 교회의 가입청원을 받은 노회는 이를 신중히 살펴 합당하면 허락하고, 당회장을 파송한다. 단 교회 부동산은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케 한다.

4. 항존 직원은 승계를 원칙으로 하나 목사는 제5장 제55조에, 장로는 제6장 제66조에 준용한다.

제3장 교인

제21조 교인의 의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다.

제22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그 신급에 따라 원입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1. 원입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유아세례교인 : 언약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은 자(단, 입교서약하기까지는 교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3. 세례교인(입교인) : 세례를 받은 자와 유아세례교인으로 입교 서약을 한 자.

제23조 교인의 신급별 문답 자격

1. 유아세례문답 대상자는 당회 결의로, 최소한 부모 중 1인이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이어야 한다. 단, 부모의 부존재시 양육권자의 청원으로 가능하다.
2. 세례문답 대상자는 원입인으로 6개월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자로 한다.

- 단,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6개월이 미달해도 문답할 수 있다.
3. 입교문답 대상자는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 한다.

제24조 교인의 권리

1. 세례교인(입교인)은 성찬 참여권과 공동의회 회원권 및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개체 교회에서 법규에 의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단, 무단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위 권리가 정지된다.
2. 교인이 노회에 교회 헌법에 따라 진정서나 청원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면 당회를 경유하여야 하며, 당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는 제출한 서류와 당회가 거부한 이유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 서류의 내용이 재판(징계, 행정)에 관한 것이면, 이에 대한 교회 권징의 소송 규정을 따른다.

제25조 교인의 의무

1. 교인은 공적 예배 참여, 헌금, 전도, 봉사, 교회 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2. 교인은 성경과 교리와 신앙의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써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
3. 교인은 성경의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 법규를 준수하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에 순복하여야 한다.
4. 교인의 자녀 관리 의무
 - (1) 보이는 교회 내에서 출생한 모든 자녀들은 교인이다.
 - (2)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의 보호 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 (3) 자녀가 성장하면 교회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교인이 거룩한 주일을 범하거나 미신행위나 음주나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의 헌금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시 교회는 교회의 법도를 따라 지도하고 치리해야 하며, 직분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다.

제26조 교인의 이명

1. 교인이 이거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날 때는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2. 교인이 다른 교회로 이거한 후 6개월 이내에 전 소속 교회 당회장에게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하며, 이명 절차가 끝나기까지는 전 소속교회 처리 하에 있다.
3. 이명 증서를 받아 교인으로 등록되면 즉시 이명 접수 통지서를 이명한 교회에 보내야 하며, 이명을 허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명 증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4. 교인의 이명 증서에는 책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7조 교인의 신고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개체 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 교인의 자격

1. 자격 정지 및 상실: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교인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교인권이 상실된다.
2. 교인권 부여: 다른 교회 교인이 이명서 없이 본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을 경과하면 당회의 결의로 교인권을 줄 수 있다.

제29조 교인권의 복권

교인권을 상실한 자가 본 교회에 돌아왔을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당회의 결의로 교인권을 복권시킬 수 있다.

제4장 교회 직원

제30조 교회 창설 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그 교회를 세상에 세우사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도를 세우사 직권적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사역하게 하셨다. (마 10:1-8)

제31조 교회 향존 직원

1. 교회에 향존할 직원은 목사, 장로, 집사이다. (행20:17,28; 딤후3:1-13; 딤후1:5-9)

제32조 교회 향존 직원의 시무 정년

1. 교회 직원의 시무정년은 70세까지로 하되 정년 되는 해 연말까지로 한다.
2. 향존직(목사, 장로, 집사)에 있는 자가 정년 전에 은퇴하려면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으나 다시 복직은 할 수 없다.
3. 위 2항으로 은퇴하는 자에게 은퇴직을 부여하고자 하면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5년 이상 시무한 자라야 한다.
4. 정년 은퇴 유예 규정
 - (1) 정년 은퇴 유예자는 목사를 제외한 향존직 직분자(장로, 집사)와 임시 직원(권사)으로 한다.
 - (2) 정년 은퇴 유예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 (3) 정년 은퇴 유예는 직원 은퇴 이후 해당 향존직 직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4) 정년 은퇴 유예시 장로는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받아, 공동의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집사와 권사는 당회의 결의로 결정

한다.

(5) 정년 은퇴 유예 장로는 노회 총대가 될 수 없다.

제33조 교회 준직원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신학대학원생)을 준직원이라 한다.

제34조 교회 임시직원

교회 사정에 따라 전도사, 권사, 서리 집사, 권찰을 임시직원으로 둔다.

제35조 교회 직원의 선거와 투표

교회 직원은 성경(히 5:4)에서 규정한 대로 질서를 따라서 교인의 적절한 선출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교회 직원의 선거에 임한다.

1. 선거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이다. 교회에서나 어떤 회에서든지 특정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 방문하여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하는 일은 일절 금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그 치리회는 적절히 시벌한다.
2. 병환, 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 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3. 투표할 때 정원수를 초과 기명한 표는 무효이고 정원수 이내를 기명한 표는 유효하다.
4. 지정한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무효표와 기권은 총투표수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잘못 기록한 무효표와 백표는 총투표수에 가산한다.

제36조 집사와 권사의 선택과 임직 권한

1. 집사와 권사의 선택과 임직은 조직교회만이 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

에 의해 미조직 교회에서도 집사, 권사를 선택 임직하고자 하면 당회장이 협조 당회원 2인(목사1인, 장로1인)을 노회원 중에서 청하여 선택 임직할 수 있다.

2. 집사와 권사와 장로에 대한 명예직은 성경과 헌법정신에 의거 세울 수 없다.

제37조 장로와 집사 및 권사의 투표

1. 동일 직원을 2인 이상 선출할 때는 연기명 투표를 허용한다.
2. 장로 또는 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허락(장로는 노회 허락, 집사와 권사는 당회 결의)후 1년 이내에 단회로 실시하되, 2차까지 투표할 수 있다.
3. 1차 투표 결과 산표로 인하여 당선자 선출이 어려울 경우, 득표순으로 1.5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단 2차 투표시 찬반으로 투표할 수 없다.
4. 위 1항과 2항과 3항의 투표 방법은 투표 전에 공동의회장의 선언이 있어야 한다.

제38조 무흠의 규정

교회직원의 무흠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 규정은 임직에는 적용되나 복직 또는 재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무흠의 한계 : 무흠이라 함은 교회 권징에서 처리회가 정하는 시벌 중 정직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2. 무흠의 시한 : 그 직원을 투표하는 당일을 기점으로 역산한다. 위 1항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해벌 후부터 무흠 기간에 산정된다.
3. 향존 직원 선출시 본 교회 등록 후 경과 기간 적용시 이전 교회에서 장로

- 는 4년, 집사는 3년의 정직 이상의 시벌을 받지 않은 자라야 한다.
4. 본 교회 등록 전 이전 교회에서 시벌을 받은 자는 해별 후부터 무흠 기간을 적용한다.

제5장 목사

제39조 목사의 의의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장립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집행하며,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이다. (롬11:13) 이 직분에 대한 호칭은 성경에 나타난 각양의 의무를 따라 다음과 같이 불린다.

1.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돌보는 자이므로 감독이라 한다. (행20:28)
2. 신령한 양식으로 양무리를 먹이므로 목자 또는 목사라 한다. (엡4:11; 렘 3:15; 뱀전5:2-4)
3. 양무리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치리 하는 자이므로 장로라 한다. (뱀전5:1-3)
4.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므로 그리스도의 종 혹은 사역자라 한다. (고후 3:6)
5.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므로 교회의 사자라 한다. (계2:1)
6.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한다. (고후5:20; 엡6:20)
7.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깨닫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 한다. (딤후2:7; 딤후1:11; 딤후1:9)
8.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자라 한다. (딤후4:5)
9.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므로 청지기라 한다. (눅12:42; 고전4:1-2)

제40조 목사의 자격

목사는 다음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남자 세례교인(입교인)으로 무흠히 7년 이상을 경과한 자.
2. 목사의 신학적 자격은 총회직영 신학대학원, 혹은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졸업자로서 강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총회가 정하는 수련 봉사기간을 필한 자.
4.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한 자.
5. 신앙이 진실한 자.
6. 교수의 능력이 있는 자.
7. 행위가 복음에 적합한 자.
8.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9. 신, 불신 간에 신임과 존경을 받는 자.

제41조 목사의 직무

목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2.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과 설교자를 선정하는 일.
3. 찬송을 지도하는 일.
4. 성례를 거행하는 일.
5.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는 일.
6. 교인을 교육하는 일.
7. 교인을 심방하는 일.
8. 예배를 관장하는 일.
9.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
10. 지역사회에 복음전파하는 일과 지역교회와의 연합을 통하여 활동하는 일.

제42조 목사의 칭호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위임 목사 - 조직 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 허락으로 위임받아 시무하는 담임목사이다.
2. 전임 목사 - 미조직 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에서 허락받아 전임으로 시무하는 담임목사이다.
3. 부목사 -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협력하는 목사이다.
4. 전도 목사 - 노회의 허락을 받아 독립교회, 타 교단 교회, 기타 특수한 곳에 파송되어 전도하는 목사이다.
5. 기관 목사 - 본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 병원, 학교 등 기타 기관에서 사역하는 목사이다.
6. 종군 목사 - 총회의 파송을 받아 군대에서 전도하는 목사이다.
7. 선교 목사 - 치리회의 파송으로 다른 민족이나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이다.
8. 무임 목사 - 일정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
9. 은퇴 목사 - 정년이 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노회에 은퇴를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퇴임한 목사이다.
10. 원로 목사 - 한 개체 교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노후에 시무를 사면할 때, 그 교회에서 추대 절차에 따라 원로목사로 추대 받은 목사이다.
11. 공로 목사 - 한 노회에서 1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한 목사가 노회에 시무 사면을 청원할 때, 노회 결의로 공로목사로 추대 받는 목사이다.

제43조 은퇴 목사와 원로 목사의 소속 및 예우

1. 은퇴 목사의 소속은 은퇴시의 교회 소속노회에 속하나 이명 절차에 따라 목사의 주거지역 노회에 소속할 수 있다. 한 개체 교회에서 15년 이상 시

무한 목사가 은퇴할 때에 원로목사로 추대되어 은퇴하고자 할 때는, 그 교회에서 생활비를 정하여 예우한다.

2. 은퇴 목사의 예우는 한국 총회은급제도에 의거 시행을 하되 총회은급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목사는 은퇴할 때에 시무했던 교회에서 퇴임 당시 사례금 × 시무 년 수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3. 은퇴 목사는 소속치리회에서 소속증명은 발급받을 수 있다.
4. 은퇴 목사가 교회를 개척할 경우, 혹은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의 경우 소속 노회로 하여금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고, 은퇴목사에게는 설교와 목양의 일을 맡길 수 있다.

제44조 전임 목사의 연임

전임 목사와 부목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

제45조 부목사의 시무와 권한

1. 시무: 노회의 허락 없이는 부목사가 현직으로 시무하는 개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될 수 없다. 단, 개체 교회 담임목사가 은퇴할 때에는 은퇴하는 목사의 동의를 얻어 담임하는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
2. 권한 : 부목사는 당회장 유고시, 노회의 허락을 받아 당회의 결의로 그 교회 당회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46조 목사의 임직과 위임

1. 교회 정치에 의거 목사 자격을 구비한 자를 목사로 임직하고자 하면, 개체 교회 또는 기타 기관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허락으로 노회에서 안수로 임직하고, 위임식은 그 시무할 교회에서 거행한다.
2. 위임국장은 해 노회 위임 목사가 맡아야 한다.

제47조 위임 목사

1. 위임 목사의 자격 : 노회에서 위임목사로 허락받은 자가 위임식을 거행하기까지는 전임목사로 간주된다.
2. 위임 목사의 시무 :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에 위임한 교회를 사임하지 못한다.
3. 위임식의 시한 : 위임식은 노회 허락 후 1년 이내에 거행하여야 하며, 1년이 경과되면 전임목사로 간주하며, 위임식을 사정에 따라 연기할 경우 노회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4. 위임을 받은 후 폐 당회가 되면 빠른 시일 안에 당회를 조직하도록 하고, 폐 당회가 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전임목사가 된다. 단 당회가 다시 조직되면 위임 목사의 자격은 회복이 된다.

제48조 목사의 청빙

개체 교회 혹은 기관에서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교회는 위임목사로 청빙한다.
2. 동일한 노회에서 부목사 이동시는 노회 임원회의 허락을 얻어 이동하고 후에 노회에 보고 한다.
3. 기관목사, 종군목사의 청빙은 그 기관의 결의로 노회에 청원한다.

제49조 목사의 청빙 투표

1. 목사의 청빙은 개체 교회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에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의 날인과 공동의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2. 공동의회에서 목사의 청빙 투표를 함에 있어 3분의 2이상이 찬성할지라도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 회장은 연기하도록 권함이 가하나 다수가 양보하지 아니하면 화합하도록 권면한다.

3. 전임목사의 위임 투표는 동일 회기 내에는 1회만 가능하며 부결 시 전임 목사이다.
4. 후임목사 청빙 시 현 당회장이 사회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50조 부목사의 청빙 처리

1. 부목사의 청빙은 개체 교회 당회에서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청빙서에는 당회원 과반수의 서명과 당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에 청원한다.
2. 부목사의 청빙은 청원을 받은 노회의 형편에 따라 노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 외국 거주 목사의 청빙

외국 거주자인 목사(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자)를 청빙할 수 있으며, 본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졸업을 한 자에 한 한다.

제52조 목사 청빙 서류

1. 청빙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 (1) 같은 노회 내의 목사 청빙 시는 2통.
 - (2) 다른 노회의 목사 청빙 시는 3통.
2. 청빙 서식 : 청빙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총회 서식 참조).
 (○○○)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이 있어 우리 영혼의 영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 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 교회 (○○○)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귀하께서 시무하는 기간에는 본 교인들이 범사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 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생활비 월(○○○)원 × 연(○○개월)를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서명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심을 바랍니다.
 ○○○○년 ○○월 ○○일

증인 공동의회장 서명

(○○○) 목사 귀하

첨부 : 세례교인(입교인) 연서

3. 공동의회장의 의견서

목사청빙에 있어 공동의회장의 의견서에는 총투표, 찬성표, 반대표, 기권표의 수를 상세히 기록하고 청빙서와 함께 노회에 제출한다.

제53조 청빙 승인

청빙서는 청빙 받은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제출한다. 그 노회가 허락하면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한다. 단, 노회의 허락 없이 교회나 기관이 청빙서를 직접 목사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제54조 다른 노회 목사의 청빙

다른 노회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또는 기관이 청빙서를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2. 노회에서 그 청빙이 허락되면 그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가 속한 노회로 조회한다.
3. 청빙서를 받은 노회에서 그 청빙이 허락되면, 청빙서는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하고, 그 노회는 이명서를 청빙한 노회로 발송한다.
4. 이명서를 접수한 노회는 발송한 노회에 이명 접수 회신을 한다.

제55조 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

다른 교단 소속 목사가 본 교단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대학 과정(B.A)과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구비

하여야 한다.

2. 본 교단 소속 목사 2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관할 노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얻어야 한다.
3. 해당 노회 고시부에서 요구하는 과정을 이수하며, 이수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 혹은 노회 고시부에서 10학점(본 교단 역사 3학점, 조직신학 6학점, 교단 헌법 1학점)을 취득한다.
 - (2) NAPARC 에 소속된 교단의 목사와 본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는 본 교단 헌법, 본 교단 역사만 이수한다.
4. 3항의 요건을 충족한 목사는 해당 노회에서 고시 후, 목사 서약을 해야 한다.

제56조 목사의 사임

1. 자유 사임 : 목사가 자유로이 사임하고자 하면,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그 사임이유를 조사한 후, 그 이유가 충분하면 사임을 승낙한다.
2. 권고 사임 : 개체 교회가 특별한 이유로 목사의 계속 시무가 곤란할 때에는, 노회가 목사와 교인 대표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사임하게 한다.

제57조 목사의 사직

1. 자유 사직 : 목사가 자유로이 사직코자 하여 노회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노회는 이를 신중히 심사하여 처리한다.
2. 권고 사직 : 목사가 성직에 합당한 자격을 상실한 때와, 심신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처소가 있음에도 5년간 시무를 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권고 사직하게 한다.

제58조 본 교단 이탈 목사

노회의 허락없이 본 교단을 이탈한 목사와 이단 종파에 가입한 목사는 면직한다.

제59조 목사의 복직

목사로서 사직된 자가 목사의 직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소속했던 노회에서 시무처가 다른 목사 3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복직 청원서를 그 노회에 제출한다.
2. 노회는 자유사직자 또는 권고사직자의 사직 이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핀 후, 노회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3. 목사의 복직이 허락되면,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60조 목사의 휴무

1. 시무 중에 있는 목사가 신체 요양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단기간 휴무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시무 목사가 6개월 이상 휴무하고자 하면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1년 이상 계속 휴무하고자 하면 노회의 재허락을 받아야 한다.
3. 목사의 안식 및 연구년 제도는 시무 6년 후 7년째로 할 수 있다.

제6장 장로

제61조 장로직의 기원

율법시대에 장로가 있었음과 같이 복음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에 치리하는 자를 선정하였으니 곧 치리 장로이다.

제62조 장로의 권한

장로는 당회와 상회의 회원권을 가진다.

제63조 장로의 자격

장로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40세 이상 66세 미만의 남자 세례교인(입교인)으로 무흠히 7년을 경과한 자. (단, 교인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인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교회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영어권(EM)은 30세 이상 66세 미만으로 한다.)
2.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는 자.
3.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
4. 공적, 사적 생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5.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6. 성품이 원만하며 덕망이 있는 자. (딤후3:1-7)
7. 본 교회에 등록된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 (단, 미조직교회는 노회의 결의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8. 주일 성수, 예배 참석, 십일조를 실천하는 자.

제64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딤후5:17; 롬12:7-8)

1.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2.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3. 교인을 심방, 위로, 교훈하는 일.
4. 교인을 권면하는 일.
5.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6.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7.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8.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제65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선출한다.
2.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3. 당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공동의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66조 장로의 임직

1. 장로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면, 개체 교회에서 안수로 임직한다.
2. 타 교단 장로의 전입시 노회에서 시취를 거친다.

제67조 휴무 장로

1. 시무 중에 있는 장로가 일정기간 시무를 사임하게 되면 휴무장로라 한다.
2. 장로가 휴무기간 중 그 직위는 계속되나 당회 성수를 위한 정원에는 계산되지 않는다.
3. 당회가 장로의 윤번 시무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면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68조 무임 장로

1. 장로가 시무하는 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거하고, 그 교회에서 취임 받지 않은 자를 무임장로라 한다.
2. 무임 장로가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등록된 후 3년 이상 경과한 후, 그 당회의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 취임을 하여야 한다.

제69조 협동 장로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교단 혹은 NAPARC 소속 교회 출신) 무임 장로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협동 장로를 세울 수 있다. 협동장로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 당회와 제직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제70조 은퇴 장로와 원로 장로

1. 은퇴 장로 : 장로가 정년으로 퇴임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노후에 퇴임하면 이를 은퇴 장로라 한다.
2. 원로 장로 : 한 개체 교회에서 15년 이상 시무한 장로가 노후에 퇴임할 때,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 원로 장로로 추대받은 장로이다.

제71조 장로의 사임과 재시무

장로가 건강상의 이유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자의로 사임 할 수 있고, 또는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권고 사임하게 할 수 있다.

1. 자유사임 : 시무장로가 일신상의 형편으로 자유로이 사임하고자 하면 당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당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권고사임 : 교인의 다수가 그 장로의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당회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권고사임안을 발의하고,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사임하게 한다. 다시 시무하게 하고자 하면 당회가 사임 이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핀 후 당회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재시무안을 발의하고,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재시무를 허락한다.

제72조 장로의 사직과 복직

1. 사직: 장로가 건강상의 이유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자의로 사직할 수 있고, 또는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권고사직하게 할 수 있다.

- (1) 자유사직: 시무장로가 일신상의 형편으로 자유로이 사직하고자 하면 당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 (2) 권고사직: 교인의 다수가 그 장로의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당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권고사직하게 할 수 있다.
2. 복직: 장로로서 사직된 자가 장로의 직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소속했던 당회에 복직 청원서를 제출한다.
 - (2) 당회는 그 사직 이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핀 후, 당회의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 (3) 장로의 복직이 허락되면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집사

제73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35세 이상 66세 미만의 남자 세례교인(입교인)으로 무흠히 5년을 경과한 자. (단, 영어권(EM)은 25세 이상 66세 미만)
2. 좋은 명성과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
3.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딤후 3:8-13)
4. 본 교회에 등록된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
5. 주일 성수, 예배 참석, 십일조를 실천하는 자.

제74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75조 집사의 선택

1. 집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공동의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76조 집사의 임직

집사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고시에 합격하면, 개체 교회에서 안수로 임직한다.

제77조 휴무 집사

시무 중에 있는 집사가 그 시무를 쉬게 되면 이를 휴무 집사라 한다.

1. 시무 집사가 일신상의 형편으로 당회의 허락을 받아 자유로이 휴무할 수 있고, 또는 당회의 결의로 권고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휴무 집사가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78조 무임 집사

1. 집사가 시무한 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거하고, 그 교회에서 취임 받지 않았을 때, 이를 무임 집사라 한다.
2. 무임 집사가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 취임을 하여야 한다.

제79조 은퇴 집사

집사가 정년으로 퇴임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노후에 퇴임하면 이를 은퇴 집사라 한다.

제80조 집사의 사임과 사직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노쇠하거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 자의로 사임 또는 사직할 수 있고, 당회가 집사를 권고사임 또는 권고사직시키고자 하면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권고사임 또는 권고사직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 집사의 복직

집사로서 사직된 자가 집사의 직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했던 당회에 당회원의 추천으로 복직 청원서를 제출한다.
2. 당회는 그 사직 이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핀 후,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3. 집사의 복직이 허락되면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8장 준직원과 임시직원

제82조 준직원의 자격

준직원은 개인으로는 그 당회에 속하고 직무상으로는 노회에 속하며, 준직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강도사
강도사는 총회에서 실시한 강도사 자격 심사를 받아 설교할 자격을 취득하고 노회의 지도를 따라 사역하는 자인데, 교회 치리권은 없다.
2. 목사 후보생
목사 후보생은 남자 세례교인(입교인)으로 무흠히 5년을 경과하고, 모범적

인 신앙과 목사됨에 합당한 자질이 있는 자가 목사직을 희망하여 노회 허락을 받고 그 지도대로 신학대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자로서, 전도사와 같은 자격자로 인정한다.

제83조 준직원의 직무

1.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당회 허락으로 개체 교회의 제직원이 되며,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회장이 될 수 있다.
2.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이 신덕이 불량하거나 노회 지도에 순응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그 인허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4조 준직원 및 전도사의 이동

1. 강도사, 목사 후보생 및 전도사가 노회를 옮기고자 하면 직무상 노회에 속함으로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고, 그 이명증서와 이력서를 이거하는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당회장의 허락으로 임시 시무이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노회에 이명 수속을 하여야 한다.
2. 개인으로는 그 당회에 속함으로 가족과 함께 교인이명증서를 시무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 전도사의 자격

전도사는 25세 이상 66세 미만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노회의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이다.

제86조 전도사의 직무

전도사는 당회나 목사가 관리하는 개체 교회의 직무를 돕는다.

제87조 권사의 자격

권사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45세 이상 66세 미만의 여자 세례교인(입교인)으로 무흠히 5년을 경과한 자. (단, 영어권(EM)은 25세 이상66세 미만)
2.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3. 좋은 명성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자.
4. 본 교회에 등록된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

제88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심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제89조 권사의 선택

1.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공동의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90조 권사의 임직, 휴무, 사직 및 복직

1. 권사로 피택된 후, 당회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당회가 주관하는 고시에 합격하면 개체 교회에서 안수 없이 임직한다.
2. 권사의 휴무, 사직 및 복직에 관한 절차와 무임권사와 은퇴권사에 관한 규정은 집사의 관계조항에 준한다.

제91조 서리집사의 선택

서리집사는 개체 교회의 형편에 따라 목회자가 진실한 세례교인(입교인) 중에서 선임하여 당회의 자문을 받아 집사의 직무를 하게하는 자로서 임기는 1년이다.

제92조 교회 임시직원의 자격

1. 서리집사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2년을 경과하고 25세 이상으로 70세 미만자로 신앙과 덕행에 본이 되는 자라야 한다.
2. 무임집사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의 직무를 맡길 수 있고, 공동의회에서 안수집사로 선택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는 하지 않는다.
3. 목회자는 무흠 2년 이상 된 세례교인(입교인) 중에서 신앙이 독실한 자를 당회의 자문을 받아 권찰로 세워 교인 심방하는 일을 맡길 수 있으며 그 임기는 1년이고 집사 중에서 겸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장 교회 직원 고시

제93조 목사고시

1. 고시 자격 : 강도사가 목사 임직을 받으려 하면, 목사고시를 청원하기까지 다음과 같은 수련봉사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 (1) 총회에서 실시한 강도사 고시를 합격한 자는 다음 해 정기노회에 목사고시를 청원할 수 있다.
 - (2) 군종장교 후보생과 총회 선교부에서 추천받은 선교사 후보생은 강도사고시를 합격한 후, 소속 노회의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2. 제출 서류 : 목사고시 청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 (1) 목사고시 청원서.
 - (2) 강도사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증명서.
 - (3) 이력서.
 - (4) 당회장 추천서 및 평가서.
3. 고시 과목
 - (1) 필기과목 : 교회 예배, 교회 정치, 교회 권징, 목회학.

- (2) 실기과목 : 설교(Floor Test).
 - (3) 구두시험 : 필기고시에 합격한 자에게 성경과 신학과 성직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구두로 고시하고, 이 외에도 노회는 공석에서 만족하다고 인정되기까지 다른 방법으로 고시할 수 있다.
 - (4) 한국 총회에서 이명한 강도사의 경우는 논문, 주해, 미국 장로교회사를 추가 고시한다.
4.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가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없이 2년 이내에 안수받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제94조 장로고시

장로고시 청원자는 소속노회의 규칙에 따라 장로고시 청원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에 응시한다.

- 1. 고시자격: 개체교회의 공동의회에서 장로로 피택되어 노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득한 자.
- 2. 고시과목
 - (1) 필기과목 : 성경, 교리, 교회 예배, 교회 정치, 교회 권징, 기타(소속노회가 정한 과목).
 - (2) 구두시험 : 필기고시에 합격한 자에게 구두로 고시한다.

제95조 강도사고시

강도사고시 청원자는 총회 고시위원회의 시행세칙에 따라 강도사고시 청원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에 응시한다.

- 1. 고시 자격:
 - (1) 본 총회 직영신학교(Evangelia Univ./에반겔리아 대학교, CA)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와 NAPARC 멤버 교단들이 인정하는 신학교의

- M. Div. 학위 소지자 혹은 당해 6월 전후로 졸업 예정인 자.
- (2)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자.
- (3) 본 교단 소속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으로 1년 이상 훈련을 받은 자.
2. 제출 서류 : 강도사고시 청원서, 4년제 대학교 졸업 증명서(B.A.),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M.Div.), 신학대학원 성적증명서, 이력서, 당회장 평가서, 노회장 추천서, 강도사 소집교육 수료증.
3. 고시 과목 :
- (1) 논술과목 : 논문, 주해, 설교.
- (2) 필기과목 : 성경, 교의학, 교회사.
- (3) 구두시험 : 설교, 면접.
4. 고시는 매년 10월 정기총회 이전에 실시한다.

제 96조 전도사고시

전도사고시 청원자는 소속 노회의 규칙에 따라 전도사고시 청원서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에 응시한다.

1. 고시 자격 : 제8장 85조에 준한다.
2. 제출 서류 : 전도사고시 청원서, 이력서, 당회장 추천서.
3. 고시 과목 : 성경, 소교리문답, 교회 정치, 교단 역사, 면접 등.

제97조 집사와 권사의 고시

집사 또는 권사의 고시는 장로고시 절차에 준하여 그 당회의 정한 바에 따라 고시한다.

제10장 교회 치리회

제98조 치리회의 의의

1. 교회는 정규의 단계를 따른 회의로 말미암아 관리되는데, 이 회를 치리회라 한다. 각급 치리회는 도덕과 영적인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교회의 법을 순종하게 한다.
2. 교회의 질서와 행정에 대하여 분별할 필요가 있을 때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한다.

제99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하며,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고, 당회, 노회, 총회로 순차대로 상소한다.

제100조 치리회의 회집

당회는 매년 1회 이상, 노회는 매년 2회 이상, 총회는 1년에 1차 회집한다.

제101조 치리회의 권한

각 치리회는 교회의 질서와 성결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교회규례에 따라 행정과 권징을 행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헌법에 근거하여 자체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2조 치리회 결정의 성격

1. 각 치리회는 고유의 권한은 있으나 독립된 개체는 아니므로 어느 회에서든지 법대로 결정된 사안은 총회 산하 교회가 인정하는 결정이 된다.
2.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

을 받는다.

제103조 처리회 결의의 방법

1. 처리회의 결의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한 다수결로 한다.
2. 처리회의 결의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4조 처리회의 회장

각 처리회는 사무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정하되 목사가 회장이 된다.

제105조 처리회 회장의 권한

처리회 회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그 회의 규칙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개회와 폐회를 주관.
2. 회무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체의 권한 보유.
3. 규칙준수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제반 조치.
4. 회원 상호 간의 언권 침해행위 방지.
5. 회원 상호 간의 모욕 또는 풍자적인 언행 금지조치.
6. 안건 심의의 숙의와 신속한 처리.
7. 회의 중 이석의 제지.
8. 안건 설명과 결정 공포.
9. 비상 정회 선포.

제106조 처리회의 서기

각 처리회는 그 회의록과 문서를 보관하기 위하여 서기를 선정한다.

제107조 서기의 의무와 임무

각 치리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상세히 기록하고 각종 서류를 보관하여 회의록 일부에 대한 등본을 청구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등본을 교부하며, 서기가 서명한 등본을 각 치리회에서는 원본과 같이 취급한다.

제108조 회의록 검사 기준

각급 치리회가 하회의 회의록을 검사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그 회의록의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
2. 그 회의록이 규칙대로 되었는지의 여부.
3. 그 회의 결정이 교회의 법에 합당한지 여부.
4. 그 회의 결정이 지혜 있고 공평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되었는지의 여부.

제109조 회의록 시정 지시

상회가 하회의 회의록을 검사하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해당 하회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지시할 것이며, 그 하회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0조 수습위원회 및 전권위원회

노회나 총회는 개체 교회, 노회, 총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습 위원이나 전권 위원을 파송할 수 있다.

제111조 전권위원회의 구성

노회 전권위원회는 3명(목사 2명, 장로 1명), 총회 전권위원회는 7명(목사 5명, 장로 2명)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112조 전권위원회의 업무 범위

1. 노회 전권위원회는 노회를 대행하는 전권으로 사정에 따라 본 교회의 당회장과 당회원의 권한을 일시 정지하고 다른 목사를 임시 또 대리 당회장으로 임명하여 행정권으로 수습하게 할 수 있다.
2. 총회 전권위원회는 총회를 대행하는 전권으로 사정에 따라 본 노회의 노회장과 임원들의 권한을 일시 정지하고 행정권으로 수습할 수 있다.

제113조 전권위원회 결정의 효력과 상소

1.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이를 고지하는 즉시로 효력을 발생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2.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본 처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당회

제114조 당회의 조직과 구분

당회는 개체 교회의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하고, 시무장로가 1명만 있는 경우를 준당회라하고 시무장로가 2명 이상인 당회를 완전당회라고 한다.

제115조 당회의 조직 요건

당회를 조직하는 요건은 세례교인 20명 이상과 장로의 자격자가 있어야 한다. 단, 미조직 교회는 예외로 한다.

제116조 준당회의 직무 처리

준당회에서 일반 당회 직무를 처리할 수 있으나, 그 장로의 치리문제나 기타 사건에 있어서 장로가 불복할 경우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117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매년 1차 이상 회집하여야 한다.

1. 당회장이 필요할 때.
2. 장로 중 2인 이상의 소집 청원이 있을 때.
3. 상회가 소집을 지시할 때.

제118조 당회의 소집 요건

당회장은 시무하는 당회원 전원이 소집 사항을 인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119조 당회의 개회 성수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목사 1인, 장로 1인 출석으로 개회성수가 되고, 3인 이상이면 목사 1인, 장로 2인 출석으로 개회성수가 된다.

제120조 당회장

개체 교회의 당회장은 다음 각 항에 의거 노회에서 선임 파송한다.

1. 위임 목사는 개체 교회의 당회장이 된다.
2. 전임 목사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될 수 있다.
3. 개체 교회 위임 목사가 결원되었을 때,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제121조 임시당회장

1. 개체 교회 위임 목사가 병중에 있거나 출타할 때, 또는 당회장 본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그 당회의 결의로 본 노회 소속 목사 중에서 임시당회장을 청한다.
2. 노회가 파송하지 아니한 임시당회장은 사회권만 행사한다.

3. 노회로부터 파송된 임시당회장은 처리권을 제외한 모든 목양 업무를 담당한다. 단 처리 업무가 필요한 때는 노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는다.

제122조 미조직교회 당회장

1.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 일반 직무를 당회장이 처리하되, 문제가 되는 것은 시찰회의 협조를 얻어 처리하고, 권징건은 소속 노회원 중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씩의 협조 당회원을 노회에 청하여 처리하며, 행정록을 작성하여 매년 1차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장로와 집사 및 권사를 선택하고자 할 시에는, 미조직 교회에서는 협조 당회원 2인(목사, 장로)을 노회원 중에서 청원하여 선택 임직할 수 있다.

제123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2. 제반 예배 주관.
3. 입교 및 세례의 문답과 시행을 하며, 부모를 권하여 유아세례를 받게 하는 일.
4. 성찬식의 주관.
5. 공동의회 소집권.
6. 교인의 이명증서 교부 및 접수와 제적.
7. 집사와 권사의 선택, 고시 및 임직.
8. 장로의 피택 요청과 임직.
9. 교회직원의 임면.
10. 각종 헌금의 실시와 지도.
11. 노회의 총대 장로 파송.
12. 노회에 상황보고 및 청원.

13. 소속기관과 단체, 부설기관 감독 지도.
14. 교회의 기본재산 관리.
15. 권징에 관한 제반 업무.

제124조 노회의 장로 총대 선정 기준

당회는 시무 장로를 장로 총대로 노회에 파송할 수 있다.

제125조 회의록

당회 회의록에는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의록은 1년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6조 각종 명부의 비치

당회는 다음의 명부를 비치하되,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원입교인 명부.
2. 유아세례교인 명부.
3. 세례교인(입교인) 명부.
4. 이명 명부.
5. 결혼 명부.
6. 실종교인 명부.
7. 시벌과 해벌 명부.
8. 별세 명부.

제127조 폐당회

당회조직 후 시무장로가 없는 당회는 자동적으로 폐당회가 된다.

제12장 노회

제128조 노회의 의의

그리스도의 몸 된 하나의 교회가 나뉘어 여러 개체 교회가 되었으므로(행 6:1-6, 9:31, 21:20) 서로 협력함으로써 교리의 순결과 온전함을 보존하여 신앙을 증진시키고 교회행정과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배교와 부도덕을 방지하며, 교회의 전반적인 사항과 목사의 제반 신상문제의 처리를 위해 상호로서 노회를 설치한다.

제129조 노회의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역 안의 시무교회가 각기 다른 목사 5인 이상과, 당회 5개 처 이상에서 파송한 장로로 조직한다. 단, 특수지역은 예외로 한다.

제130조 노회의 회집

노회는 다음의 경우에 노회장이 회집한다.

1. 정기노회는 연 2회(봄 및 가을) 이상 예정된 시일과 장소에서 회집하되, 개회 2 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시노회는 노회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와 시무처가 다른 목사회원 2인과 장로총대 2인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에 소집하고, 회집할 시일 7일 전에 상정안건을 목사 및 장로총대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처리한다.
3. 국가적 재난이나 자연적 재난으로 인해 통상적인 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원회 결의로 회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1조 노회 개회 성수

본 노회에 속한 시무처가 다른 목사회원 3인과 장로총대 1인 이상이 회집하여야 개회한다.

제132조 노회원의 자격

노회원의 자격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전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 선교목사는 노회원의 권한을 가지되 활동회원과 비활동회원으로 구분한다.
 - (1) 활동회원:
 - 1) 교회와 본인이 교단에 가입된 자로서 매 회기마다 결격 사유 없이 참가하며 적극적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자.
 - 2) 활동회원의 권한은 노회와 총회의 회원이 되고, 임원과 상비 부서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 (2) 비활동회원:
 - 1) 비활동회원은 노회가 인정하는 이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하는 자, 무임목사, 교회가 교단에 가입되지 않은 목사.
 - 2) 비활동회원의 권한은 노회와 총회의 회원이 되나, 노회와 총회의 임원과 상비부원과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단, 언권과 선거권이 있다.
 - 3) 준회원 : 타교단에서 가입한 자로 가입 후 1년간 언권을 가진다.
2. 총대장로는 서기가 당회로부터 접수, 호명한 자로 그 회기에 회원권을 가진다.
3. 목사회원은 서기가 호명하면 그 회의 회원권이 있다.
4. 은퇴목사는 발언권만 있고, 소속치리회의 상비부원 또는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33조 노회원의 의무 이행

당회가 총대를 파송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그 당회를 권면하고, 선정된 총대 장로가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게을리 하면 노회는 그 당회로 그를 책망하게 하며, 노회의 회원된 목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노회 출석을 게을리하면 노회는 그 목사회원과 당회를 책망하여야 한다.

제134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그 구역 안에 있는 당회, 개체 교회, 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후보생, 소속기관 및 단체의 총찰.
2. 각 당회에서 제출한 건의, 청원, 문의(질의) 및 진정의 접수 처리.
3.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소송, 상소 및 위탁판결의 접수 처리.
4. 목사의 자격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및 권징의 관리와 처리.
5. 강도사, 전도사, 목사후보생의 교육, 이명 및 권징의 처리.
6. 개체 교회 장로의 선택, 임직 및 자격고시 관장.
7. 전도사의 자격고시 시행.
8. 각 당회의 회의록 및 미조직교회의 행정록의 검사와 그 합법 여부 표시.
9. 진리와 권징에 관한 해석.
10. 교회의 거룩성과 화평을 위한 개체 교회 시찰.
11. 개체 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 조직 관장.
12. 개체 교회 및 미조직교회의 목사 청빙 관장.
13. 개체 교회와 미조직교회의 전도사업의 지도권장(행6:1-6, 9:31, 21:20) 교육 강화로 인한 영적 유익 도모.
14. 총회 제출의 청원, 건의, 문의, 진정, 행정소송, 상소 및 위탁판결의 처리.
15. 총회에 제출하는 노회 상황 보고.

16. 총회 총대 파송.
17. 총회 지시 실행.
18. 개체 교회와 산하기관의 재산권 문제 처리.

제135조 노회 회의록

노회 회의록에는 회무 처리와 결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매년 1차씩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6조 노회의 각종 명부

노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1. 시무 목사(위임목사, 전임목사) 명부.
2. 부목사 명부.
3. 전도 목사 명부.
4. 기관 목사 명부.
5. 종군 목사 명부.
6. 선교사(선교 목사, 평신도 선교사) 명부.
7. 무임 목사 명부.
8. 별세 목사 명부.
9. 은퇴 목사 명부.
10. 원로 목사 명부.
11. 강도사 명부.
12. 목사 후보생과 전도사 명부.
13. 개체 교회 명부(설립, 분립, 합병, 폐쇄, 연월일 명기).
14. 장로 명부.

제137조 노회의 설립, 분립, 합병 및 폐지

1. 노회의 설립, 분립, 합병 및 폐지는 관계 노회의 결의와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제 1항의 경우에 총회는 결의로 조사위원을 파송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3. 총회는 제 2항의 그 보고를 받아 노회 명부를 정리하고 폐지된 노회의 목사, 강도사, 목사 후보생 및 전도사의 이명을 총회에서 처리한다.

제138조 노회 구역 설정 및 변경

1. 노회의 구역은 총회가 결정하는 지역 구분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2. 노회의 구역 변경은 노회가 분립될 때 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노회 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총회는 관계 노회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다.

제139조 시찰회

1. 노회는 개체 교회를 효율적으로 지도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내의 일정구역 단위로 시찰회를 둔다.
2. 시찰구역은 노회에서 정한다.

제140조 시찰 위원

1. 노회는 개체 교회를 관리하는 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회 단위로 총대원 중에서 관내의 시무목사와 총대장으로 중에서 시찰위원(시찰장, 서기, 회계)을 선정한다. 시찰 회원은 시찰에 소속된 목사와 장로로 한다.
2. 시찰위원수는 노회가 정하고 시찰위원은 개체 교회를 시찰하고 중요사건은 시찰회에서 협의 지도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제141조 시찰회의 직무

시찰회의 구역 내의 개체 교회시찰에 관한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찰회는 교역자 청빙건을 협의 지도하며, 미자립 교회들이 연합하여 교역자를 청빙하도록 권고 지도하여 교역자 없는 교회가 없도록 힘쓴다.
2. 시찰회는 교회의 연합사업을 기획 지도한다.
3. 시찰회는 개체 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살펴 전달한다.
4. 시찰회는 필요시 각 교회의 형편을 시찰할 수 있으며, 각 집회 관례를 협의 지도할 수 있다.
5. 시찰회는 교회 상황과 위임받은 사건의 처리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6. 시찰회는 처리회가 아니므로 임의로 처리관계의 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하나, 노회가 위임한 사건은 처리할 수 있다.

제142조 노회 자체 규정

각 노회는 세부적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헌법에 근거한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13장 총회

제143조 총회의 의의

총회는 본 장로회의 최고 치리회이며, 그 명칭은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교신) 총회라 한다.

제144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

제145조 총회 총대

1. 노회는 총회 총대를 제12장 제 132조에 의거하여 활동회원을 파송한다.
2. 총회 총대는 서기가 노회로부터 접수, 호명한 자이다.

제146조 총회의 개회 성수

총회가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노회의 과반수와 노회가 파송한 총대(목사, 장로)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 성수가 된다.

제147조 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소속 개체 교회와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찰.
2. 총회는 하회에서 제출하는 건의, 청원, 진정, 상소, 행정소송, 문익과 위탁 판결을 접수 처리.
3. 총회는 각 노회 회의록을 검사.
4. 총회는 헌법의 제정, 개정 및 해석할 전권 보유.
5. 총회는 노회를 설립, 합병, 분립,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 제정.
6. 총회는 교회의 분쟁을 수습하고, 화평과 성결의 덕을 증진, 유도.
7. 총회는 신학대학원을 설치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 강도사 고시.
8. 총회는 교육, 선교 및 구제에 관한 일을 계획 실천.
9. 총회는 국내외의 개혁주의적 교회들과 친교를 도모.

제148조 총회의 회집

총회는 매년 1회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되,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혹은 전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사회할 것이며, 총회 임원의 직책은 다음 총회 때까지 계속되고, 총대는 서기가 각 노회로부터 명단을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149조 계속 총회 또는 비상총회

1. 총회는 성원 미달로 유회되었거나 또는 장기간 정회되었을 때에 계속 총회로 모일 수 있다.
2. 계속 총회의 회원은 원 총회시의 총대가 회원이 된다.
3. 국가적 재난 시와 그에 준하는 위기가 발생했을 시 비상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0조 총회장의 지위와 직무 대리

1. 총회장은 총회를 대표하고 총회 업무와 산하기관을 총괄한다.
2. 총회의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대리하고 부회장도 유고시는 회원인 직전 회장으로부터 역순위로 전(前) 회장이 대리한다.

제151조 총회 개회와 폐회

총회는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 회장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축도함으로 폐회한다. "교회가 내게 위탁한 권한으로 지금 총회는 폐회함이 가한 줄 압니다."

제14장 교회 회의 및 소속기관

제152조 공동의회

1. 회원 : 공동의회 회원은 그 개체 교회의 교인권을 가진 18세 이상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한다.
2. 소집 :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 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

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한다.

- (1)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 (2) 무흠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 (3)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3. 회장과 서기

- (1) 회장은 그 개체 교회 당회장이 겸한다. 당회장 유고시는 제10장 제 121조 1항을 준용한다.
- (2) 서기는 그 개체 교회 당회 서기가 겸하고, 회의록을 따로 편찬하여 보관한다.

4. 개회 성수 : 공동의회 개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한 회원으로 가능하나, 회집한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일시를 다시 정하여 회집하게 할 수 있다.

5. 회의 안건 : 공동의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당회 혹은 당회장이 제시한 사항.
- (2) 개체 교회 예산과 결산 사항.
- (3) 개체 교회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4) 직원의 선거 사항.
- (5) 상회가 지시한 사항.

제153조 제직회

1. 회원 : 제직회의 회원은 그 개체 교회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하고, 당회의 결의로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2. 소집 : 제직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직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제직회 소집을 필요로 할 때.
 - (2)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임원 :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는 당회나 제직회에서 선정한다.

4. 개회 성수 : 제직회 개회는 교회에 공고한 후, 예정한 시간에 출석한 자로 개회한다.
5. 회의 안건 : 제직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집행 사항.
 - (2) 예산 추가경정 사항.
 - (3) 보통재산과 특별헌금 관리사항.
 - (4)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제154조 미조직교회의 제직회

미조직교회에서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가 제직회 사무를 집행한다.

제155조 제직회의 직무 한계

제직회는 헌법이 허용한 직무의 범위를 넘어 공동의회나 당회의 고유 직무를 침범하는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다. 단, 위임받은 안건은 의결 처리할 수 있다.

제156조 연합 당회

한 지역 안에 2개 이상의 당회가 있으면 교회 공동사업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 당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회원은 각 당회원 전원으로 하되 치리권은 없다.

제157조 연합 제직회

한 지역 안에 2개 이상의 개체 교회 제직회가 그 지역의 합동재정, 전도사업, 교회교육 등 교회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연합 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회원은 이 회에 가입한 모든 개체 교회의 제직회장과 각 제직회에서 파송한 총대로 한다.

제158조 노회, 총회 소속 기관

각 노회와 총회는 회의 발전을 위하여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관할한다.

1. 소속회 및 기관을 조직하고자 하면 그 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소속회 및 기관의 정관, 회칙, 임원선정, 사업계획 등은 그 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소속회 및 기관은 그 목회자의 감독 하에 교육, 선교, 구제 등 교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하며, 재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9조 교회 소속회와 소속 기관

1. 교회 소속회는 당회에서 임명하는 직할 조직체를 뜻하며, 소속기관의 운영은 목회자의 감독 하에 있는 부속기관을 뜻한다.
2. 당회는 소속기관 및 임의단체가 목회자의 감독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할 때는 그 대표에게 권고하고 그 권고도 듣지 않으면 그 기관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법적 조치와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15장 선교 및 대외(교단, 단체) 교류

제160조 목적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교회에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셨으므로 교회는 선교에 주력하여야 하며, 또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신 것처럼 성도 간의 교제를 부탁하셨기에 총회는 개혁주의교회와의 연합과 협력에 주력하도록 한다.

제161조 총회 파송 선교사

총회는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교회를 설립하며 의료, 교육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한다.

1. 총회 파송 선교사는 목회자 혹은 전문인 중에서 선발한다.
2. 총회 파송 선교사는 총회가 정하는 특수 지역에서 사역하는 교포선교사도 포함한다.
3. 총회 파송 선교사는 총회 선교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4. 선교사의 교적은 파송 받을 때의 소속 노회 또는 파송하는 기관의 소속 노회에 둔다.

제162조 미국 주재 선교사

1. 외국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미국 내에서 선교하고자 하면 본국 교회의 파견증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총회는 그에게 소정의 과정을 거치게 한 다음 해당 노회 또는 기관에서 협력하여 사역하게 한다.
2. 미국 주재 선교사는 선교할 때 해당 노회 또는 기관과 협의하여 사역하여야 한다.

제163조 자매교회 관계

본 교단과 신학 및 생활이 일치하는 외국교회와는 자매관계를 체결하여 친선을 도모하며 협력한다. 본 교단과 자매 관계를 가진 교회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서 본 교단 정신으로 조직된 총회
 - (1) 한국 총회.
 - (2) 대양주 총회.
 - (3) 유럽 총회.
2. 자매교회 관계 대상 외국 교단

- (1) 화란 자유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es in Netherlands).
- (2) 호주 자유개혁교회(The Free Reformed Churches of Australia).
- (3) 남아공 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es in South Africa).

제164조 우호 관계

본 교단의 신학과 신앙에 동의하고 친선을 도모하기 원하는 교단과는 우호 관계를 체결하고 협력한다. 본 교단과 우호 관계를 가질 교단은 다음과 같다.

1.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
2. 미국 정통장로교회(The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3. 일본 기독교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 in Japan).
4. 남아공 자유개혁교회(The Free Reformed Churches in South).
5. 미국 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제165조 외국 교회 단체와의 협력 관계

총회는 본 교단의 신학과 신앙에 모순되지 않는 외국 교회 단체에 가입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며 협력한다. 본 교단과 협력 관계를 가질 외국 교회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북미장로교 및 개혁주의교회 협의회(NAPARC: 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
2. 국제개혁주의교회 협의회(ICRC: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rmed Churches).

제16장 재산

제166조 재산의 구분

개체 교회, 노회 및 총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부동산과 그 회의 결의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제1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67조 개체 교회의 재산

개체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그 개체 교회 운영에 사용한다.

1. 개체 교회가 조성한 재산.
2. 개체 교회 산하기관과 단체의 재산.
3. 기타 교회가 기증받은 재산.

제168조 노회의 재산

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노회 운영에 사용한다.

1. 노회가 조성한 재산.
2. 개체 교회가 신탁한 재산.
3. 노회 산하 기관과 단체의 재산.
4. 기타 노회가 기증받은 재산.

제169조 총회의 재산

총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총회 운영에 사용한다.

1. 총회가 조성한 재산.
2. 노회나 개체 교회가 신탁한 재산.
3. 총회 산하 기관과 단체의 재산.
4. 기타 총회가 기증받은 재산.

제170조 재산의 보존과 관리

1. 개체 교회, 노회 및 총회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개체 교회의 부동산은 그 개체 교회 명의로 보존할 수 있으나 총회유지재단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기본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담보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개체 교회는 순차에 따라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결의하고, 노회와 총회는 정기회에서 결의한다.
 - (2) 총회유지재단에 편입된 재산은 위 (1)의 결의 후, 주 정부에 제출된 개체 교회의 정관대로 시행한다.
 - (3) 개체 교회, 노회 및 총회가 총회유지재단에 신탁한 재산은 유지재단 이사회가 선히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된 재산에 대하여 신탁주의 청원 없이 어떠한 처분결의도 할 수 없다.
 - (4) 개체 교회가 총회유지재단에 신탁한 재산은 그 교회 당회로 관리하게 한다.
 - (5) 개체 교회에서 기본재산은 당회가 관리하고, 보통재산은 제직회가 관리하되 부동산은 개체 교회 명의로 등기한다.
 - (6) 개체 교회의 재산은 교인에게 지분권이 없는 재산이므로 그 교회를 이탈하는 자는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171조 재산 권리의 제한

1. 교인은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노회나 총회의 유지재단이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신탁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소속 노회를 이탈할 경우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본 장로회의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는 자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한할 수 있다.

제172조 기본재산의 처분

기본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결의는 다음 원칙에 의한다.

1. 개체 교회는 당회에서 3분의 2이상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결의.
2. 노회와 총회는 3분의 2이상의 결의.

제173조 미조직교회의 재산 관리

미조직교회에서 총회유지재단에 신탁한 재산과 기본재산은 당회가 조직될 때까지 제직회가 관리한다.

제174조 회계연도

개체 교회, 노회 및 총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1. 개체 교회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교회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노회 : 임원을 선임하는 정기노회의 회집 익일부터 동일한 정기노회의 차기회집 당일까지.
3. 총회 : 총회 회집 익일부터 차기 총회 회집 당일까지.

제175조 경상비 관리

1. 추가경정예산 : 개체 교회의 회계는 공동의회에서 통과한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교회의 예산편성 절차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 제직회의 결의를 얻어 집행한다.
2. 예산과목 외의 지출 :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항목에 없는 지출은 당회의 제안으로 제직회 결의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다.
3. 현금 보관과 증빙서 :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출에는 증빙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개체 교회 제직회가 현금보관 한도액을 정했을 경우 회계는 이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예비비 : 세출예산에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액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5. 회계보고 : 개체 교회의 회계는 정기제직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세계(歲計)잉여금 처리 : 매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그 회 또는 개체 교회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76조 감사

개체 교회, 노회 및 총회는 1년에 1차 이상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회계책임자는 각종 재무자료를 성실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관리표준

교회예배

교회정치

교회권징

제1장 총칙

제1조 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가 세우신 교회의 법제도를 시행하여 교인, 직원 및 각급 치리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

제2조 권징의 목적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의 정결과 덕을 세우며 범죄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1. 이상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지혜롭게 하며,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
2. 각 치리회는 권징할 때에 그 범행의 관계와 정황의 경중을 상고하되 사건은 같으나 정황이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달리 처리할 것도 있다.

제3조 권징의 성격

권징은 말씀, 성찬과 함께 개혁교회의 표지이며, 개인(교인과 직원)과 치리회의 위법 사항에 대하여 재판을 통하여 시벌하는 행위이다.

제4조 권징의 대상

권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세례교인(입교인)
2. 교회의 직원
3. 총회를 제외한 각급 치리회

제5조 권징의 범위

교인과 직원 및 각급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시벌한다.

1. 성경에 위배되는 신앙을 가지거나 남에게 전하는 경우.
2. 성경에 위배되는 말이나 행위로 개인이나 그룹 또는 교회에 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 성경에 기초해서 교회가 정한 교리, 관리표준, 또는 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거나 위배하는 경우.
4. 예배 및 기타 교회의 공적인 모임을 방해한 경우.
5.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의한 것이 아닌 사항으로 국가 재판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 행위를 할 경우.

제6조 권징의 절차

권징의 절차는 징계재판과 행정재판, 두 가지 재판으로 이루어진다.

1. 징계재판 : 교인과 직원에 대한 범죄 사건으로 제기된 소송.
2. 행정재판 : 치리회가 행한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이나 동등한 치리회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소송.

제2장 재판 규제

제1절 통칙

제7조 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 관할

1. 당회 재판국은 필요시에 당회에, 노회 재판국과 총회 재판국은 상설로 노회와 총회에 각각 설치한다.
2. 목사 외의 모든 직원과 교인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 재판국에 속하되 차서를 따라 노회와 총회에 항소, 상고할 수 있다.
3.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 사건의 재판 관할은 노회 재판국에 속하되 총회 재판국에 항소할 수 있다.
4. 상회가 하회에 명한 일에 대해서 하회가 불순종 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회가 직접 시벌할 수 있다.
5. 폐쇄된 교회에 계류 중인 징계재판은 소관 노회가 처리하여야 하며, 폐지된 노회에 계류 중인 징계재판은 병합 노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재판 비용의 예납

1. 고소인(고발인), 항소인, 상고인, 이의신청인, 재심청구인, 총회위탁판결 청원인이나 처리하는 재판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단 당회 재판국은 예외로 한다.
2. 재판 비용은 재판을 수행할 당해 처리회에 예납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재판 비용의 예납액은 다음과 같다.
 - (1) 고소(고발), 항소, 소제기 : 노회: \$1,000.00, 총회: \$1,500.00
 - (2) 상고 : \$1,500.00
 - (3) 이의신청, 재심청구, 항고, 재항고, 위탁판결 청원: 노회: \$1,000.00, 총회: \$1,500.00
4. 예납한 재판 비용의 금액은 재판의 결과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고 그 처리회에 귀속한다
5.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판 비용을 면제한다.

- 1) 처리회장과 임원이 고발을 한 때.
- 2) 처리회장이 직권으로 기소 의뢰를 한 때.
- 3) 기소위원장이 재심청구를 한 때.

제9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재판국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에서 제척된다.
 - (1) 국원이 재판 당사자(피고, 원고, 혹은 참가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 (2) 국원이 재판당사자와 친족 관계(8촌 이내의 친척, 4촌 이내의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국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 (4) 위의 경우 재판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2. 재판국원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 당사자는 해당 국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1)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해당 국원을 해당 사건의 심리 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
 - (2)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에 불복하는 경우, 기피 신청인은 결정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차상급 재판국에 불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불복 신청서를 받은 재판국은 불복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 확정된 결정서를 신청인과 해당 재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3) 재판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국원 재적 1/3을 초과하여 기피할 수 없으며, 재판심리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이미 한 경우에도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
3. 재판국원은 1항 1호와 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국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4. 제척, 기피, 회피가 확정되어 재판국의 정족수가 미달될 경우 치리회 (폐회 중에는 해 치리회 임원회)는 직권 또는 재판국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한다. 단, 보선된 국원은 그 사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심판에 관여하며 제척, 기피, 회피가 확정된 재판국원은 재판의 심리 및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2절 당회 재판국

제10조 구성

당회 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이상(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 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단, 재판국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노회에 협조 당회원을 청해서 구성하거나 상회에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를 두며, 국장은 당회장이 맡고 서기는 장로 중에서 국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2. 재판국장은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서기는 재판의 진행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고,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관장한다.

제12조 의결 방법

1. 재판국 회의는 재판국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분산된 의견으로 인해 시벌의 종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인원 과반수가 아닌 다수결로 최종 의결한다.

제13조 재판 사항

당회 재판국은 목사 외의 모든 직원과 교인에 관한 소송사건을 심판한다.

제3절 노회 재판국

제14조 구성

1. 노회 재판국은 본 노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3인(목사 2인, 장로 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동일한 교회 파송 총대 중 1인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2. 재판국원은 노회원 중 교회법에 상당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목사는 임직 10년 이상, 장로는 임직 7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15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1.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노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
2. 재판국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노회 공천위원회가 보선한다. 단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 및 회계를 두며, 임원은 국원 중에서 매년 선택한다.
2. 재판국장은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서기는 재판의 진행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고,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관장하며, 회계는 재판국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제17조 의결 방법

1. 재판국 회의는 재판국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인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재판국 서기는 재판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국장과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등본 서명하여 노회 서기에게 한 통을 제출하고 판 결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한 통씩 교부하여야 한다.
3. 재판국은 그 판결 사건을 본 노회 서기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며, 본 노회 서기는 그 기록과 본회 회의록을 모두 상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재판국이 본 노회 회무 중에 위탁받은 안건을 판결하였으면 그 판결을 즉시 보고하여 본 노회가 채택하면 그 판결은 노회의 판결로 인정된다.
5. 노회 회무 중에 노회가 재판국의 보고를 채용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때는 그 안건 전부를 재판 규칙대로 직접 심리 처결할 수 있다.
6. 본 노회가 폐회한 후 재판국에서 재판한 사건은 선고한 때로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서 효력이 발생되고 본 노회에 보고 채택함으로써 노회의 판결로 확정된다.

제18조 재판 사항

노회 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재판한다.

1.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대 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 사건.
2. 당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3. 당회의 행정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 사건.
4.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
5. 당회장이 청원한 위탁 판결사건.
6. 노회로부터 위탁 받은 사건. 단, 노회가 폐회한 다음에 발생한 긴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해당 사건을 위탁할 수 있다.
7. 총회 재판국이 지시한 사건.

제4절 총회 재판국

제19조 구성

1.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서 총대 중 선임된 재판국원 7인(목사 5인, 장로 2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 총대 중 2인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2. 재판국원은 교회법에 상당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목사는 임직 15년 이상 장로는 임직 7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제20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

1. 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에서 3분의 1을 개선한다.
2. 총회기간에 재판국에 결원이 발생하면 총회 공천위원회가 보선하고 폐회 후에 결원이 발생하면 총회 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기가 만료된 국원은 연임하지 못하나 중임은 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의 선임 및 직무

1. 재판국에 임원으로 국장과 서기 및 회계를 두며, 임원은 국원 중에서 매년 선택한다.
2. 재판국장은 재판을 진행하며,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서기는 재판의 진행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고, 재판국의 재판사무를 관장하며, 회계는 재판국의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제22조 의결 방법

1. 재판국 회의는 재판국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재판국 서기는 재판사건의 전말을 기록하고 국장과 서기가 서명하여, 그 등본을 총회 서기와 원고 피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총회 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 회의록과 동일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4.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한 사건은 선고한 때로부터 본 총회의 판결로서 그 효력이 발생되고, 본 총회에 보고, 채택함으로써 총회의 판결로 확정된다.

제23조 재판 사항

총회 재판국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3. 노회 재판국장이 청원한 위탁 판결 사건.
4. 총회로부터 위탁 받은 사건. 단, 폐회 후에 발생한 긴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해당 사건을 위탁할 수 있다.
5. 헌법이 정하는 행정 사건.

제3장 징계재판

제1절 통칙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된 경우 법에 따라 시별하는 것을 징계재판이라 한다.

제24조 징계재판을 위한 소송이 필요한 경우

1. 확실한 범죄사건으로 고소, 고발이 있을 때.

2. 하급 재판국의 판결(미확정 판결)에 대한 항소나 상고가 있을 때.
3. 하급 재판국의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가 있을 때.
4.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가 있을 때.

제25조 소송 당사자

1. 소송 당사자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며 원고인, 피고인, 참가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소송을 제기한 개인과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각급 치리회와 그 외에 법률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인이 된다.
3. 고소인(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를 당하여 죄과를 범한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의하여 재판국에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된다.
4. 이미 개시되어 있는 소송에 당초부터의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끼어들어 소송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 이를 참가자라 한다.

제26조 고소(고발)인에 대한 경고

고소(고발)인이 자연인이라면 개심 전에 치리회에서 고소(고발)인에게 “송사가 허망하거나 악의 또는 경솔함이 드러나면 처벌한다”라고 경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삼가야 할 소송

소송서류를 접수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자의 소송.
2. 성격이 불량한 자의 소송.
3. 별 아래 있거나 재판이 계류 중인 자의 소송.
4. 피고인의 처벌로 이익을 얻게 되는 자의 소송.
5. 법률적 제한 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소송.

제28조 변론

1. 당사자는 소송에 관하여 재판국에서 변론한다.
2. 당사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할 수 있다.
3.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의뢰인은 각 급마다 변호인 선임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변호인의 선임

1.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시무목사, 시무장로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변호인은 안건을 축조 가결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
3. 치리회가 원고가 되어(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재판한 건이 상소되었을 때는 기소위원 또는 상회에서 선정한 협조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4. 변호인은 여비(실비)외에 변호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30조 당사자 일방의 불출석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이 변론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출석하여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한 기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 판결 선고기간

1.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 재판국은 30일 이내에, 노회 재판국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모든 판결은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 재판서의 기재 사항

1. 재판서에는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성별, 나이, 소속 교회, 직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재판서에는 재판에 참여한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의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재판서에는 재판국 국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33조 판결의 확정 및 집행

1. 당회, 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면 확정된다.
2.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그 효력이 발생되고 총회에 보고, 채택함으로 확정된다.
3. 판결의 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4.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5.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에 보고한다.

제34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1.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의 송달로 한다.
2.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국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제35조 재판 송달의 기일

재판서의 등본은 재판을 선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6조 판결의 경정

1.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 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 2. 전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3. 재판국은 경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37조 재판서 등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 재판 조서의 작성

- 1. 재판국은 재판 조서를 작성한다.
- 2. 재판 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재판을 행한 일시와 재판국.
 - (2) 재판국원, 기소위원, 피고인, 변호인의 성명.
 - (3) 기소 사실의 진술.
 - (4) 증거 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서류, 증거물.
 - (5) 변론의 요지.
 - (6)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 (7)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 3. 재판 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재판국 서기가 서명한다.
- 4. 재판 조서는 재판 기일 후 20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39조 재판정에서의 속기, 녹취

- 1.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 변호인, 기소위원장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에 의한 속기나 녹취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 변호인 또는 기소 위원장은 재판국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나 녹취를 한 때에는 신청인은 실비금액을 부담하고 속기록 또는 녹취록의 등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 송달의 원칙

송달은 재판국장의 직권으로 하며, 송달을 받을 자에게 등기우편(Registered Mail) 및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송달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1조 기간의 계산

1.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당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기간의 만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절 고소 및 고발

제42조 고소

1. 범죄의 피해자가 그 범죄사실을 알려 기소해 달라는 의사를 요청하는 것을 고소라 한다.
2.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혹은 그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다.
3. 피해자가 사망 또는 고소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

제43조 고발

1. 범죄를 인지한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알려 기소해 달라는 의사를 요청하는

것을 고발이라 한다.

2. 치리회는(치리회장 또는 임원) 고소자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관할 내에서 분명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인지된 경우, 권징하기 위해 고발할 수 있다.

제44조 고소 및 고발 기간

1. 고소 및 고발자는 죄과를 범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고발)하지 못한다.
2. 고소(고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시작된 날로부터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전체 경과 기간에서 제외한다.
3. 고소(고발)을 할 수 없는 사유는 서면으로 재판국에 제출된 후 재판국의 승인이 있을 때 인정된다.

제45조 고소 및 고발의 방식

1. 고소 및 고발은 서면으로 소속 치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1)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고발)인의 성명, 성별, 나이, 소속 교회, 직분, 주소.
3. 죄증 설명서에는, 범죄의 내용(범행일시, 장소, 상황 등)과 증거물(서증, 물증), 증인들을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4. 범죄의 사건별로 기록하되 범죄 사건마다 죄증 설명서를 각기 제출해야 한다.
5. 피해로 인해 고소하고자 하면 마태복음 18장 15~17절의 교훈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사건을 동시에 고소할 수 있다.

제46조 서류제출과 접수처리 및 피고인의 소환

1. 소송을 위해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는 소속 치리회장 또는 차상급 치리회

- 장에게 제출한다.
2. 재판 개시 이후에 추가되는 서류는 사건마다 각각 두 통씩을 재판국 서기에게 제출한다.
 3. 피고인을 소환할 때 재판국장은 소환장과 함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재판 개정 10일 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4.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성별, 나이, 직분, 주소, 죄과명, 출석일시, 장소를 기재하고 재판국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5. 전항의 전달은 그 전달한 증거(등기우편 영수증 등)가 있어야 한다.

제47조 고소 및 고발과 조치

1. 처리회장이 고소(고발)장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2.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처리회장은 10일 이내에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도 제46조 5항에 의거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3. 고소(고발)장이 기소위원회에 이첩된 이후의 기소관련 모든 서류는 기소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48조 고소의 취하

1.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2. 고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제49조 처리회의 기소

1. 분명한 범죄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자가 없어도 처리회는 그 회원 중에서 필요한 수의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기소할 수 있다.
2. 이 경우 기소위원은 원고가 되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종 원고로서 행사한다.

제3절 기소

제50조 기소

1.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기소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기소라 한다.
2. 기소는 기소위원회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51조 기소의 방식과 기소장

1. 기소를 제기함에는 기소장을 관할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피고인의 성명, 성별, 나이, 소속 교회, 직분, 주소.
 - (2) 죄과명.
 - (3) 기소 사실(죄과의 사실).
 - (4) 적용 규정.
3. 당회 또는 노회의 임원회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처리회장은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제52조 기소 유예 및 중지의 취소

1. 기소 유예 및 중지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2. 기소 유예 및 중지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3조 재기소

기소를 유예하거나 기소가 기각된 사건의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다시 기소할 수 없다.

제54조 고소 및 고발에 의한 사건의 처리

기소위원회가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죄과를 조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장을 치리회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제55조 기소여부 결정 통지

1. 기소위원회가 고소 및 고발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 불기소 혹은 기소 유예 및 중지를 결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조치한 내용을 고소인 및 고발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기소위원회는 불기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6조 불기소

1. 고소 및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죄과가 되지 않거나 그 죄과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수 있다.
2. 불기소 처분이 결정된 경우 기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고소인(고발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기소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주문의 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기소 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2) 무혐의 :
 - 1) 범죄인정 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2) 증거 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 (3) 기소 중지 :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재판을 위한 여건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

(4) 공소권 없음 :

- 1)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 2)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기소가 제기된 경우.
 - 3) 고소 고발이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 4)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 5)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4. 기소위원회가 기소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 항고 및 재항고

1. 당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당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노회 재판국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회 기소위원회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할 수 있고,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0일 내에 노회 재판국에 항고장을 송부하여야 한다.
2.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기소위원회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불기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노회 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회기소위원회는 재항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할 수 있고,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총회 재판국에 15일 이내에 재항고장을 송부하여야 한다.
4. 노회 재판국이 1심일 경우 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 또는 불기소 간주로 인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총회 재판국에 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

우에는 전 3항을 준용한다.

제58조 재판국의 결정

1. 항고서 또는 재항고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은 60일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판국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 (1)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한다.
 -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기소를 명령한다.
2. 해당 재판국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정보를 이우서와 함께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 피의자와 관할 기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3. 기소 명령을 받은 노회 기소위원회 또는 당회 기소위원회가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의 기소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은 1차에 한하여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에 재차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재차 기소명령을 받고도 노회 기소위원회 또는 당회 기소위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재판하여 처리한다.

제59조 당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1. 당회 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 1인 내지 2인으로 구성한다.
2. 기소위원이 2인일 때는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임원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제60조 노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1. 노회 기소위원회는 필요시 노회 공천위원회에서 기소위원 4인(목사 2인, 장로 2인)을 공천하고, 노회 허락으로 구성한다. 단 재판국원과 동일한 교회 목사나 장로는 선임할 수 없다.

2. 노회 기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 회계를 두며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3. 기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새로운 사건이 접수되면 노회는 이미 구성된 기소위원회에 그 사건을 위탁할 수 있다.
3. 기소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하면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보선하며 보선된 기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기소위원의 임기와 연임은 각 노회의 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며 노회의 규칙에서 정함이 없을 때에는 1년으로 하거나 노회에서 연임을 허락할 수 있다.

제61조 총회 기소위원회의 구성

1. 총회 기소위원회는 필요시 총회 공천위원회에서 기소위원 5인(목사 3인, 장로 2인)을 공천하고 총회 허락으로 구성한다. 단 총회 재판국원과 동일한 노회 소속 목사나 장로는 선임할 수 없다.
2. 총회 기소위원회는 총회재판국을 1심 재판국으로하여 고소(고발)한 사건을 다루며 총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심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3. 총회 기소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총회 재판국원의 자격에 준한다.
4. 총회 기소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과 서기, 회계를 두며 위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5. 총회 기소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매년 1년조 2~3인씩(장로 1인 포함)을 교체한다.
6. 기소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하면 제20조 2항을 준용한다.

제62조 의결 방법

기소위원회는 기소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소여부를 의결한다.

제63조 고소(고발)인의 조사 및 피의자 신문

1. 기소위원장은 고소(고발)인을 먼저 출석하게 하여 고소(고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2. 기소위원장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절 재판 규례

제64조 기소장 부분의 송달

재판국은 기소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소장의 부분을 제1회 재판기일 전 10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5조 재판 기일의 지정 및 변경

1. 재판국장은 재판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 재판 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3. 재판 기일을 기소위원장,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재판국장은 직권 또는 기소위원장,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6조 재판 연기

재판기일에 원고나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재판연기 청원이 있었을 때 재판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재판 연기를 가결한다.
2. 다음 개정 시일과 장소를 정한다.

3. 재판국장은 소집통지서를 개정 10일 전에 원고인, 피고인 및 증인 등 관계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4. 소환장은 등기우편(Registered Mail)으로 전달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제67조 불출석 사유 자료의 제출

재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회의 불출석

1. 피고인 또는 기소위원장(위임시 기소위원)이 재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제67조의 불출석 사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출석 없이 결석한 그대로 재판을 진행한다.
2. 피고가 부득이한 사연으로 정한 일에 출석 못하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만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도 개정할 수 있다.

제69조 당사자의 재판 기일 전의 증거 제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기일 전에 해당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 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제71조 재판의 절차

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국장이 재판 회집의 이유를 설명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선언한다.
2. 인정신문 : 재판국장은 피고인의 성명, 성별, 나이, 소속교회, 직분, 주소를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소위원장의 공소 요지의 진술 :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으로 하여금 공소장(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피고인 신문의 방식
 - (1) 기소위원장 또는 기소위원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 (2) 재판국장 및 재판국원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6. 피해자의 진술권
 - (1) 재판국장은 죄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2) 재판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7. 증거조사 및 증인 채택과 신문 : 원고인과 피고인의 증거조사 및 증인 신청이 있을 때 채택하고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하게 한 후 진술하게 한다.
8. 재판국원만 모여 고소장(고소 고발), 죄증 설명서의 각 조를 축조하여 가부 결정 한다. 단, 범죄의 정상을 참작해서 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9. 재판 결정을 회의록에 자세히 기록한다.
10. 상소가 있으면 그 이유도 회의록에 명백히 기록한다.
11. 회의록을 채용하고 서기가 서명함으로 재판회의 기록이 된다.
12. 상소된 안건이면 판결한 후 그 결과를 하회에 통보한다.

제72조 공소장의 변경

1.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기소 사실 또는 적용 규정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소사

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2. 재판국은 기소 사실 또는 적용 규정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73조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재판국장은 소송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74조 시벌의 선고

재판국은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죄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시벌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75조 시벌 판결에 명시될 이유

시벌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죄로 인정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6조 상소에 대한 고지

시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재판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7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죄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죄과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제78조 기소 기각의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기소 기각의 선고를 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기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가 제기되었을 때.
3. 고소(고발)가 취하되었을 때.
4. 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제79조 기소 기각의 결정

다음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기소가 취소되었을 때.
2. 처리회장이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소 의뢰를 취소하였을 때.
3. 피고인이 사망 한 때.

제80조 기소 각하의 판결

기소의 절차가 헌법이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기소 각하의 선고를 할 수 있다.

1.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고발)장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된 경우.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고발)한 경우.
3. 고소(고발)을 취하한 자가 다시 고소(고발)한 경우.
4. 동일 사건에 관하여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고소권이 없는 자(피해자, 피해자의 사망 시 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나,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고발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 불명 되어 고소 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6. 전에 고소한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고소, 고발을 한 경우.

제81조 피고인의 이의서 제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이의서를 피고인의 모두 진술 종료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재판회가 합법적 집회가 아닌 경우.
2. 고소장이나 죄증 설명서에 법률 적용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82조 피고인의 이의 처리

피고인의 이의가 정당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합법적 재판의 개정을 위한 연기.
2. 소송 이의서 기각.
3. 고소장이나 죄증 설명서의 정정 지시.

제83조 재판과정의 쟁론

1. 재판 과정에서 규칙이나 증거에 대하여 회원 간에 쟁론이 발생하면 국장은 쌍방의 주장을 들은 후 직권으로 시비를 결정한다.
2. 국원은 국장의 결정에 불복 항의할 수 있다.
3. 국장은 최종 합의가 된 안건을 즉시 가부 결정한다.
4. 그 결정한 것은 회의록에 기재한다.
5. 총회 재판국에서는 결정과 다른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재판국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84조 국원의 회원 결의권

1. 재판국은 휴회, 정회를 불문하고 속회시마다 회원을 호명하고 결석회원의 이름은 회의록에 기록한다.
2. 재판과정에 시종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결의권이 없다. 단, 총회 회기 변경으로 인한 국원 교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치리회 상호 간의 소송사건은 상급 치리회의 재판과정에서 그 치리회의 결의로 원고인과 피고인의 언권 또는 투표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재판국원이 소속한 치리회의 재판사건을 다룰 때 해당국원은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

제85조 피의자

치리회는 건적을 위해 재판이 귀결될 때까지 피의자를 정직 또는 수찬정지시킬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전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

제86조 비공개 회의

재판국은 상황에 따라 회원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 비공개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7조 화해의 중용

재판국장은 판결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중용할 수 있다.

제5절 직원에 관한 재판

제88조 목사에 관한 재판

1. 복음의 명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되므로 노회는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2. 목사라고 편호하거나 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하여야 한다.
3. 목사에 대하여 사소한 일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4. 목사가 다른 지역 노회에서 범죄 했을 때 그 지역 노회가 범죄사건을 당연히 그 목사의 소속노회에 통보하여 시벌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목사의 징계는 그의 소속노회가 집행함이 원칙이나 목사의 소재 사정을 따라 그 지역노회에 위탁할 수 있다.
6. 면직된 목사를 복직시키고자 할 때는 소속했던 노회가 교회 권징의 절차대로 하되, 임직식은 하고 안수는 하지 않는다.
7. 위임목사를 정직시킬 때는 그 담임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하게 되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결정이 중지된다.

제89조 장로와 집사 및 기타 직원의 재판

목사에 관한 규례에 준한다.

제6절 증거 조사

제90조 증인의 자격

증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
2.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확신하는 자.
3.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는 자.
4. 원고나 피고가 수락하는 자.
5. 치리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자.

제91조 증인의 결격 사유

증인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인, 피고인의 친척.
2. 소송 판결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3. 시벌 하에 있는 자.

제92조 증인의 의무

1. 재판국장은 사건에 관계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2. 재판국장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된 당사자는 출두하여 증인 신문에 응해야 한다.
3.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재판 개정 10 일 이전에 송달하여야 하며, 증인이 재판정에 있는 때에는 소환절차 없이 신문할 수 있다.
4. 증인으로 채택된 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처벌한다.
5. 증인으로 출두한 자가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처벌한다.

제93조 증인의 의무 제한

1. 처리회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처리회장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단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재판국이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교회의 향존직 또는 사회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가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재판국이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명백한 거부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94조 증거 제출 방법

증거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구두로 직접 제시한다.
2. 서면 혹은 인쇄한 문서로 제출한다.
3. 녹음테이프나 사진으로 제출한다.
4. 타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5. 기타 믿을 만한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95조 증인 신문의 방식

증인 신문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재판국장이 증인을 다음과 같이 선서하게 한다.
"본인은 전지하사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송사건의 증인이 되었으니 후일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문답함같이 사실대로 말하며 바른대로 말하며 있는 대로 말하며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아니하기로 선서합니다."
2. 재판국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한 내용에 서명하게 한다.
3.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인 경우에는 선서없이 신문할 수 있다.
4. 증인이 사실과 다르게 위증을 할 때에는 절차에 따라 책벌을 받을 수 있다.
5. 증인 신문의 순서는,
 - (1) 재판국장은 인정 신문을 통해 증인의 성명, 나이, 직분, 직업, 주소를 물어서 증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한다.
 - (2) 증인을 신청한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신문한다.
 - (3) 증인을 세운 편이 신문한다.
 - (4) 재판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전 (2)

의 신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5) 재판국 국원이 신문한다.

6.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할 수 있으나 다만 필요할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 신문도 할 수 있다.

7. 신문상의 주의사항

1) 사건에 무관한 말이나 농담은 금한다.

2) 증인을 세운 자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증인에게 유도 신문을 할 수 없다.

제 96조 증인의 재판정 외 신문

재판국장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재판정 외에 소환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다

제97조 증인 신문 사항의 서면 제출 명령

재판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신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98조 증인의 퇴정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판정에 있을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99조 증거의 관리

1. 증인 신문의 내용은 녹음하거나 정밀히 기록하여 증인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
2. 이 기록은 상회나 다른 치리회에서 사용될 증거가 된다.

제100조 증거조사위원

원고와 피고가 다같이 증거조사위원을 청원할 경우 재판국은 아래와 같이 목사와 장로 몇 명을 증거조사위원으로 선정한다.

1. 증거 조사위원은 본 교단에 속한 시무목사와 시무장로라야 한다.
2. 증거조사위원은 사건에 관계된 자들(원고, 피고, 증인들)을 정한 장소와 시일에 출석시켜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이 서명한 후 재판국 서기에게 제출한다.
3. 그 재판국은 증거 조사위원의 보고서를 심사한 후 참작하되 채용 여부는 회에서 결정한다.

제101조 증거 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102조 자유 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103조 증거능력 있는 서류

다음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공증된 증서,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
2. 국가 기관에서 작성한 문서나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 문서.
3. 기타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제104조 증거조사 방식

1.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알려준다.

2.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등의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3. 재판국은 전항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5조 증거조사 후의 기소위원장 및 피고인의 의견진술

1. 피고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기소위원장은 사실과 규정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다만, 기소위원장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소위원장의 의견진술이 된 것으로 본다.
2.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장 행정재판

제1절 통칙

제106조 행정재판의 의의

치리회가 행한 위법한 행정 행위의 변경,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거나, 동등한 치리회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을 다루는 것을 행정재판이라 한다.

제107조 행정재판을 위한 소송의 종류

1. 결의 변경 및 취소 소송 : 치리회가 행한 행정행위의 결의 취소 또는 교

- 정이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
2. 무효 등 확인 소송 : 처리회가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동등한 처리회 간의 소송 : 처리회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재 및 부존재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

제108조 재판 관할

1.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가 소속한 처리회의 차상급 처리회의 재판국이 된다.
2. 노회의 결의나 노회재판국의 재판에 대하여는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다. 단 총회의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은 총회 재판국이 관할한다.

제109조 원고의 적격

소속 처리회로부터 행정 처분이나 결정을 받은 자는 원고가 되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시별 중에 있는 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110조 피고 적격 및 경정

1. 행정 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는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2.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3. 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보를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111조 제3자의 소송참가

재판국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 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제3자의 소송 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2조 소의 제기 및 제소기간

1. 소의 제기는 소장을 차상급 처리회장에게 제출함으로 한다.
2. 결의 취소 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하거나, 행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2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3.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행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4. 동등한 처리회 간의 소송은 소송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언제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13조 소송의 처리

1. 소장을 접수한 재판국은 쌍방의 진술을 청취하고 판결한다.
2. 재판국은 원고의 주장이 합당하면 그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거나 변경 처리하고 그 처리 방법을 하회에 지시한다.
3. 원고 및 피고는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그 상급 처리회(재판국)에 상소할 수 있다.
4. 피고가 된 하회는 상소장을 접수한 지 15일 이내로 반드시 그 관계서류 일체와 기록 전부를 상급 처리회(재판국)에 송달해야 한다.

제114조 소장의 기재사항

1. 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원고의 성명, 성별, 나이, 소속 교회, 직분, 주소.
 - 2) 피고인 처리회와 처리회장의 성명.

- 3)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의 내용.
 - 4) 행정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
 - 5) 청구의 취지 및 원인.
2. 제 1항의 소장에는 원고(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115조 청구의 변경

1. 원고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2. 청구의 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재판국은 청구의 변경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혹은 소송절차를 지연케 할 목적이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6조 소의 취하

소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 전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다.

제117조 직권심리

제기된 소송과 관련하여 재판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제2절 결의 변경 및 취소 소송

제118조 소송의 제기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결의의 날로부터 15일 내에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의 교정이나 변경, 취소나 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제119조 소송의 처리

소장을 접수한 상회(재판국)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 소송의 이유가 정당하면 피고 치리회의 결정 전부 혹은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피고 치리회에 대하여 처리할 방법을 지시하며, 원고와 피고는 그 지시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려면 그 상회(재판국)에 상소를 할 수 있다.

제3절 무효 등 확인 소송

제120조 선거무효소송

노회에서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선거조례 및 시행세칙)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 재판국에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21조 당선무효소송

노회에서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선거조례 및 시행세칙)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되는 사안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당선일부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 재판국에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22조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의 판결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총회 재판국은 헌법 또는 규정(선거조례 및 시행세칙)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때에는 선거의 무효 또는 당선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제123조 소송의 처리

선거 무효 소송 및 당선 무효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총회 재판국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4조 증거조사

1. 소 제기자는 개표 완료 후에 선거 무효 소송 및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총회 재판국에 투표함, 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판국은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제4절 동등한 처리회 간의 소송

제125조 소송의 제기

처리회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유무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당해 처리회장은 차상급 처리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26조 소송의 처리

소장을 접수한 상회(재판국)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 소송의 이유가 정당하면 피

고 처리회의 결정 전부 혹은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피고 처리회에 대하여 처리할 방법을 지시하며, 원고와 피고는 그 지시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려면 그 상회(재판국)에 상소를 할 수 있다.

제127조 준용규정

제3장 징계재판에서의 소송에 관한 일반 규례는 행정재판에서의 소송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5장 하회가 처리한 사건을 상회가 취급하는 규례

제1절 통칙

제128조 상소

1. 하급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그 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상급 재판국에 요구하는 불복 신청을 상소라 한다.
2. 원고, 피고를 불문하고 상소한 자는 상소인, 상소 당한 자는 피상소인이라고 한다. 단, 징계재판의 경우 상소인은 기소위원장 혹은 피고인이다.
3. 상소가 되면 피상소자인 하회 회원은 항의, 의견서를 그 상회에 제출할 수 있다.
4. 상회에서 그 상소자에 대한 항의, 의견서를 낭독할 때 상소인과 피상소인은 그 사건을 심의 판결하는 일에 한하여 상회의 회원권이 중지된다.
5. 노회 재판국이나 총회 재판국이 판결한 것은 즉시 유효하고 본 처리회에 보고 한다. 단, 상소는 판결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6. 상소의 유효기간 산정

제5항에 규정한 상소기간 15일은 다음 근거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 (1) 처리회가 당사자에게 직접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로부터 기산한다.
 - (2) 처리회가 신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우체국 소인(일부인) 날로부터 기산한다.
7. 상소심(목사의 경우는 총회, 기타는 노회)에는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상고심(총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 조사를 생략한다.
 8. 노회 재판국의 결정을 상소할 경우 해당 노회의 재판국원은 총회 재판국원에서 배제된다.

제129조 일부상소

1.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제130조 상소의 취하

1. 기소위원장이나 피고인은 상소의 취하를 할 수 있다.
2. 상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상소의 취하는 상소 재판국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상소 재판국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 재판국에서 할 수 있다.
4. 상소 취하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국장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5. 상회가 재판할 때에 상소인이 2회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하회의 판결이 확정된다.

제131조 상소방법

1. 항소.
2. 상고.

3. 위탁 판결.
4. 항고 및 재항고

제2절 항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나 피고 혹은 변호인이 제2심 재판국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항소라 한다.

제132조 항소의 방식 및 제기 기간

1.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소의 제기기간은 항소인이 하회의 판결 후 고지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33조 소송 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원심 재판국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 재판국 서기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4조 소송 기록 접수와 통지

항소 재판국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5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제134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와 설명서를 항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소 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복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 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복사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36조 항소기각의 결정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와 설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7조 항소이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규정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 재판국의 구성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3. 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4.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을 때.
5.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6. 하회가 어느 한 편에 대하여 가혹한 심문을 했을 때.
7. 부당하고 허위 증거를 채용했을 때.
8. 합당하고 중요한 증거 채용을 거절했을 때.
9. 충분한 증거 조사 전에 급속히 판결했을 때.
10. 소송 취급상에 편견이 나타났을 때.
11. 판결 중에 착오나 불공평한 결정을 했을 때.
12. 책벌의 양정(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13. 제84조 2항에 근거한 결의권이 없는 자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제138조 항소 재판국의 심판

항소 재판국은 항소된 사건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접수되었을 때 그 재판 규례

대로 하되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항소 재판국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한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2. 제1심 재판국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 재판국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3. 항소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결의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4.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5.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만으로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6.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거나 원심 재판국으로 하여금 이를 변경, 재심 또는 취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9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140조 판결서의 기재방식

항소 재판국의 판결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제3절 상고

제141조 상고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나 피고 혹은 변호인이 제3심 재판국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제142조 상고의 일반 규례

상고에 관한 아래의 일반 규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장 제2절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상고의 방식 및 제기기간.
2.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3.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4.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5. 상고기각의 결정.
6. 상고이유.

제143조 상고 재판국의 심판

1. 상고 재판국은 상고이유서와 그 답변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한다.
2. 상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상고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4.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제144조 파기 환송, 이송

1. 상고 이유가 정당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재판국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재판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2. 관할인정이 잘못되어 파기하는 경우 관할 재판국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45조 파기자판

상고 재판국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 기록과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제146조 중국 판결과 집행

1. 집행은 확정된 중국 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2. 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4. 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제4절 위탁판결

제147조 위탁판결의 청원

1. 하회는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직속 상회에 위탁판결을 하여 줄 것을 서면(사건서류 첨부)으로 청원할 수 있다.
 - (1) 하회에 전례 없는 중대한 재판사건.
 - (2) 하회로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
 - (3) 사정상 하회가 취급하기 어려운 사건.
 - (4) 하회 판결이 중대한 공례 또는 판례가 될 사건.
 - (5) 하회 회원 간의 의견이 불일치한 사건.
 - (6) 상회에서 판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2. 위탁판결을 청원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하회가 사건을 판결하기 전에 그 상회의 지도만 구하는 경우.
 - (2) 하회가 사건의 심사와 판결 전부를 상회에 위탁하는 경우. 이 경우 상회는 하회의 모든 관계서류를 접수하고 기소 위원장(원고), 피고의 진술도 청취한다
3. 하회는 사건을 심리하지 아니하고는 바로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없다. 단, 하회에서 사건심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8조 위탁 판결의 재량

하회로부터 수탁한 위탁 판결 청원권에 대하여 상회는 그 사건에 대한 처결 방법을 지시만 하든지 혹은 지시없이 그 사건을 환송하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

제149조 위탁판결 청원의 처리

1. 위탁판결 청원은 차상급 처리회장에게 한다.
2. 위탁판결청원서를 송부받은 처리회장은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기소위원회에 위탁판결 사건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3. 처리회장으로부터 위탁판결 사건서류를 송부받은 기소위원회는 사건서류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총회가 파한 후 총회 재판국 위탁 판결 청원에서는 전항 2, 3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0조 위탁 판결의 직권 청원

1. 처리회의 분쟁으로 처리회의 회집이 불가할 때에는 처리회장이 직권으로 위탁 판결을 상회에 청원할 수 있다.
2. 당회가 없는 미조직 교회 또는 폐 당회 된 교회는 재판국 구성이 불가능하므로 당회장은 직권으로 위탁 재판을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

제5절 항고 및 재항고

제3장 징계재판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재심 청구

제151조 재심사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원심 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 된 때.
4.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 남용, 뇌물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소송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 남용, 뇌물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규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7. 유죄 판결한 사건에 대해서 상소기간 만료 후라도 피고의 무죄를 증명할 만한 새 증거가 나타났을 때.
8. 전항에서 말한 '증명'이라 함은 그 증거가 공공기관의 증명이나 국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152조 재심의 관할

재심은 원심 재판국이 관할하고 순차로 상소할 수 있다.

제153조 재심의 청구절차

1. 재심은 청구권자가 재심 청구의 취지 및 재심 청구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 청구서에 원심판결의 등본, 증거자료 및 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심 처리회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2. 재심 청구서를 접수한 처리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해당 재판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3. 재심의 청구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4조 재심청구의 기간

재심의 청구는 당사자가 확정판결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재판국에 의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예외로 한다.

제155조 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소위원장 및 고소인(고발인).
2.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 대리인.
3.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또는 형제자매.

제156조 재심청구에 대한 처리

1.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재심의 청구가 헌법 또는 규정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기각하여야 한다.
3.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5.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6. 각 치리회가 한 번 유죄 판결을 한 것은 재심이나 상소로서 무죄가 결정되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없다.
7. 상소하여 재판 중에 중요한 새 증거가 나타났을 경우
 - (1) 하회에 사건을 환송하여 재심하게 할 수 있다.
 - (2) 원고, 피고가 상회에서 판결해 주기를 원하면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한다.

제157조 재심의 심판

1. 재심 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국은 각 심급 재판절차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2. 재심 개시가 결정된 경우 재심 재판국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시벌을 정지할 수 있다.
3. 재심의 청구가 재심 관할 재판국에 접수되면 원심판결에 관여했던 재판국은 재심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 단 총회 재판국은 예외로 한다.
4. 전항의 경우 재심 재판국이 당회 재판국이면 당회장 외에는 다른 당회원으로 재판국을 구성하여야 하며 당회원의 수가 부족하여 재판국을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노회 재판국에 위탁 재판 청원을 하여야 한다.
5.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총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8조 준용규정

재심 청구 및 심판 절차는 본 헌법이 정한 소송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장 시벌, 해벌, 처분

제1절 시벌

제159조 시벌의 정신

징계재판에 따른 시벌은 다음과 같은 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1. 시벌하는 치리회는 범죄자를 괴롭게 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된다.
2.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시벌한다.
3. 치리회 회원은 자신들이 유혹하거나 동화되지 않도록 살피며 경계한다.

제160조 시벌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시벌할 수 없다. 단, 재판국 석상에서 범한 현장범죄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없이 재판국(치리회)은 즉시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3. 서기는 처리한 전말을 회의록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4.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 재판국에서, 제2심은 노회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5.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6개월 이내에 끝나쳐야 한다.
6.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총회가 정한 규칙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161조 본인의 자복

1. 범죄한 사실을 치리회에 자복할 때에 치리회는 그 내용을 청취 확인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2.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자복할 때 범죄사건이나 도리에 대한 오인이 아닌 줄로 확인되면 이를 임시로 허락하고 그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2조 이탈한 직원과 교인의 처리

1. 범죄한 일은 없어도 교회의 직원이나 교인이 임의로 관할을 배척하거나,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단에 가입하면, 치리회는 두 세 번 권면해 본 후 불응하면 그 이름을 교적에서 삭제한다.
2. 위의 직원이나 교인에 대한 소송사건이 있으면 재판할 수 있다.
3. 교회의 직원이나 교인이 총회가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단에 가입하거나 교리를 신봉하면 정황에 따라 정직, 면직, 또는 출교를 하여야 한다.

제163조 재판 계류와 교단 탈퇴

재판에 계류 중인 자(교회, 단체 포함)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항존 직원은 제164조 제1 항 제5호 면직 책별로 판결하며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닌 항존 직원은 권고 사직된 것으로 본다.

제164조 시벌의 종류와 내용

1. 시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견책 : 상당한 과실이 있어 엄히 책망하고, 회개하여 스스로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 (2) 근신 :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죄과를 반성(반성문 제출)하고,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게 한다.
 - (3) 시무 정지 :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모든 시무를 정지하되 강도권은 예외로 한다.

(4) 정직 : 맡은 직분을 정직시키되, 범죄의 경중, 또는 그 동기 및 영향 등을 참작하여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수찬정지를 겸하여 과할 수 있다.

(5) 면직 : 맡은 직분을 박탈하며 수찬정지를 겸하여 과할 수 있다.

(6) 수찬 정지 :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죄가 중대하여 교회와 주의 성화에 욕이 되게 한 자에게 과하는 시벌로서, 6개월 이상 수찬을 정지한다.

(7) 출교 : 불신자와 같이 인정하여 교인명부에서 제명하고 교회에 출석을 금지하는 것으로 끝 까지 회개하지 않는 중범죄자나 이단에 가입하여 돌아오지 아니한 자에게 과하는 시벌이다.

2. 시벌의 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례교인(입교인)이 범죄 하였을 때의 시벌은 ① 견책 ② 근신 ③ 수찬정지 ④ 출교 등이다.

(2) 직원(항존 및 임시직원)에게 과하는 시벌은 ① 견책 ② 근신 ③ 시무정지 ④ 정직 ⑤ 면직 ⑥ 수찬정지 ⑦ 출교 등이다. 단, 정직을 당한지 2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처리회의 결의로 면직할 수 있다.

(3) 행정재판에 따른 처분은 다음과 같다.

- 1) 처리회의 결의를 교정한다.
- 2) 결의를 무효 혹은 취소한다.
- 3) 회원권 및 상회의 총대권을 정지한다.

제165조 시벌 처리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처리회가 시벌을 집행한다.

제166조 시벌의 방법

시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동기, 성질, 정상을 참작하여 합당하게 시벌한다.
2. 개인에 국한된 범죄이면 중죄가 아닌 것은 견책으로 은밀히 시벌할 수 있고, 그 경우 치리회원 2, 3인을 대표로 파송하여 시벌할 수 있다.
3. 중대 범죄는 재판석에서 선고하고 당해 치리회장은 해당 교회(노회)에서 공포한다.
4. 중대한 죄가 아닐지라도 타인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죄는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유기 시벌을 하고 교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5. 시벌을 기피하고 타처로 간 자에 대하여는 지상에 공고하여 시벌한다.
6. 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치리 회장은 확정판결의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
7. 시벌의 집행기간은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8. 다음과 같은 경우에 목사직을 면직할 수 있다.
 - (1) 이단을 주장하는 경우.
 - (2)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경우.
 - (3) 교리상이나 도덕상으로 교인을 크게 실족하게 한 경우.
 - (4) 기타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훼손하게 한 중죄를 범한 경우.
9. 출교는 범죄자를 제명하고 교회에 출석을 못하도록 추방하는 가장 큰 시벌인데 합당한 절차를 따라 집행하고 교회 앞에 공포하여야 한다.
10. 목사, 장로의 면직 및 출교의 경우에는 총회 및 교계 언론을 통해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7조 가중시벌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 시벌 할 수 있다.

제168조 시벌의 선고

시벌은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지금 (OO)씨는 (OO)죄를 범하였으므로 당회(혹 노회, 총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형제가 완전히 회개하여 만족할 만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OO)년 (OO)월 (OO)일부터 (OO)년 (OO)월 (OO)일 까지 시무정지(정직, 수찬정지) 된 것을 선고하노라. 아멘.”

선고 후 합당한 권면을 하고 기록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권징으로 인해 교회에 복을 주시도록 기도한다.

제169조 면직선고

면직 선언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본 교회(노회)의 장로(집사는 교회, 목사는 노회), (OOO)씨는 (OOO)죄를 범하였으므로 본 당회(노회)는 (OOO)씨의 본 교회(노회)의 장로직(집사, 목사)을 파면하고 또 그 직분 행함을 금하노라. 아멘.”

면직이 수찬정지나 출교까지 겹쳤으면 회장은 계속하여 “본 당회(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OOO)씨가 진실한 회개의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의 성찬참여와 출석을 금하노라. 아멘.”으로 엄중히 선고한다.

선고 후, 전 조의 예대로 기도한다.

제170조 출교의 절차와 선고

출교의 절차와 선고는 다음과 같다.

1. 교회 앞에 범죄자를 심리 판결한 전말을 공식으로 발표한다.
2. 범죄자를 교회 안에 둘 수 없는 사유를 마태복음 18장 15~18절에 의해 설명한다.
3. 성도들로 하여금 출교 당한 자와 교제를 삼가도록 권면한다.

4. 범죄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지금 이 교회(노회)의 회원(○○○)씨는 (○○○)죄를 범한 고로 여러 번 권면하고 기도하였으나 듣지 않고,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직권으로 본 당회(노회)는 그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며 성도 중에 교제가 단절된 것을 선고하노라. 아멘.”

5. 출교선고 후 범죄자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기도한다.

제2절 해벌

제171조 해벌의 규례

해벌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1. 치리회는 수찬정지 이하의 벌을 받은 자들을 자주 돌아보고 그와 더불어 기도하며 권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
2. 치리회는 해벌을 할 만한 만족한 증거가 나타났을 때 결의에 의하여 해벌을 하되 절차를 따라 해벌한다.
3. 수찬 정지 또는 정직을 당한 자를 해벌할 때는 그 전말을 설명한 후 교회 앞에 해벌 선언을 한다.
4. 면직을 당한 자나 출교를 당한 자를 해벌 할 때에는 교회 앞에서 그 전말을 설명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자복하게 하고 해벌 선언을 한다.
5. 이명교인의 해벌
 - (1) 해벌은 시벌한 치리회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 (2) 치리회는 벌 아래 있는 자가 타 치리회 관할로 이명 하고자 할 때 회개한 정상을 참작하여 해벌한 후 이명서를 그가 원하는 치리회에 송달할 수도 있다.
 - (3) 본 치리회의 시벌, 기타 필요한 기록의 등본을 그 치리회에 송달하여 해벌을 위임할 수도 있다.

제172조 해벌 치리회

해벌은 최종 판결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의 승인(폐회 중에는 재판국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치리회가 시행한다.

제173조 해벌의 절차

해벌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시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벌 아래 있는 자가 진실히 회개한 증거가 확실하고 겸손히 치리회 앞에 자복했을 때 치리회 회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벌한다.
2. 정직 또는 수찬정지를 당한 자를 해벌했을 때 다음과 같이 교회(노회) 앞에 선고한다.

“지금까지 정직(수찬정지)를 당한 (OOO)씨는 이제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어 교회를 만족하게 한 고로 본 당회(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그대를 해벌하고 복직된 것(성찬에 참여하는 교인의 권리가 회복된 것)을 선고하노라 아멘.”

3. 면직을 당한 자의 해벌

(1) 교회(노회) 앞에 자복하게 한다.

(2) 교회(노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한다.

문 : 그대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거역한 죄와 교회를 해롭게 한 큰 죄를 기꺼이 자복하며, 면직한 것이 공평하게 행한 줄 압니까? 답 : 예

문 : 지금은 그대가 진실한 회개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의 용서를 구합니까? 답 : 예

문 :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손한 마음과 근신 중에 살기를 결심하며, 힘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빛나게 하며,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답 : 예

문답 후 회장은 적당한 권면을 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지금 (○○○)씨는 만족한 회개를 나타낸 고로 본 교회 당회(노회)는 전일
에 선언한 면직을 해별하며 복직된 것을 선고하노라 아멘."

해별 선고 후 회장은 감사기도를 한다.

4. 출교를 당한 자의 해별

- (1) 출교 받은 교인은 해별이 되어도 수찬 정지로 2년이 경과되고 다시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 정지가 해별된다.
- (2) 면직을 당한 자의 해별절차에 준하여 자복하게 하고 문답을 한다.
- (3) 성도와 교제하는 권한과 교회(노회)의 회원권이 회복된 것을 선고한다.
- (4) 회장이 감사기도를 한다.

5. 해별 후의 처리

- (1) 시벌 중인 자가 진실하게 회개한 증거가 뚜렷하면 치리회 석상에서 자복케 한 후 해별할 수 있다. 단, 시벌 치리회와 소속 치리회가 다른 경우 제172조를 준용한다.
- (2) 시벌이 집행되어 시벌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해별절차 없이 자동 해별된 것으로 본다.
- (3) 치리회(당회, 노회)는 면직된 자의 수찬을 허락한다.
- (4) 면직된 장로나 집사, 권사가 복직되려면 해별 후 3년이 경과되어 합법적으로 다시 피선된 후 취임식을 행하여야 시무할 수 있다.
 - (5) 정직만 당한 장로나 집사, 권사는 해별로서 직분까지 회복되어 시무할 수 있으나 정직에 수찬정지까지 당했으면 당회의 해별과 교인의 투표없이 시무할 수가 없다.
- (6) 목사의 경우
 - 1) 임시 강도권을 허락한다.
 - 2) 교회의 합법적인 청빙을 받아야 시무를 할 수 있다.
 - 3) 면직된 자가 복직되었을 때, 다시 안수는 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 헌법개정

1. 헌법 개정의 제안

헌법 개정은 총회산하 노회의 발의로 제안된다.

2. 헌법 개정위원회 설치

(1) 헌법개정이 제안되면 총회는 9인 이내의 헌법개정위원으로 구성된 헌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 검토한다.

(2) 전항의 헌법개정위원은 목사 7인, 장로 2인으로 하고 총회에서 다수결 선출하고, 개정위원은 한 노회에서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3. 헌법 개정의 절차와 수의 방법

(1) 헌법개정위원회는 헌법개정이 제안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성안하여야 하고, 총회시 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총회에서는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3) 헌법수의 : 총회는 전항에 의하여 결의된 성안을 각 노회에 보내어 수의하게 한다.

4. 헌법 개정의 기준

(1) 교리표준 : 신앙고백,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여 전 노회 중 3분의 2와 노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의 가표를 얻고, 그 다음 총회가 채택함으로 개정된다.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총회 서기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2) 관리표준 : 교회 예배, 교회 정치, 교회 권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여 전 노회 중 과반수와 노회에서 투표수 과반수의 가표를 얻은 후에 개정할 것이며, 노회 서기는 투표

의 가부수를 총회 서기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총회장은 그 결과를 공포 실시한다.

제2조 시행

본 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총회 결의의 효력

본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헌법에 준하는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위배하는 개인이나 치리회는 징계 및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 헌법 적용의 우선 순위

본 헌법은 그 적용에 있어서 본 교단 산하 모든 기관과 치리회의 내규 및 운영세칙에 우선하며, 본 헌법에 위배된 내용은 그 법적 효력이 상실된다.

제5조 공문서 서식

본 헌법의 정치, 권징 서식은 총회 표준문서를 그 표준으로 삼는다.

